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	기			금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제1장 개요

I. 총괄	1
II.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
1. 일반회계	2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
III. 기금 결산	8
1. 보훈기금	8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
IV. 재무제표	10
1. 재정상태표	10
2. 재정운영표	12
3. 순자산변동표	14
V. 성과보고서	16
1. 성과체계	16
2.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7

제2장 검토의견

I . 총괄	21
1. 부정확한 추계로 인한 연례적인 대규모 이용액 발생	21
2. 성과보고서	26
(1) 성과달성률 저조	28
(2) 성과계획 분야의 문제점	32
3. 법령상 의무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 미설치	34
II . 일반회계	38
[세입]	38
1. 과태료: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등	38
(1)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39
(2) 보훈특별고용 과태료 부과 검토 필요	41
2.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등	46
(1)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46
(2)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최소화 노력 필요	51
[세출]	56
1. 보상금: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집행잔액 규모 및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	56
2. 생활조정수당: 지급실적과 대상자 특성을 추계에 반영할 필요	68
3. 등록관리: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예산편성에 정확히 반영할 필요 등	75
(1)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예산편성에 정확히 반영할 필요	76

(2) 이행가능성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79
4. 고엽제환자검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검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83
5.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액된 보조사업의 증액 지양 필요	89
6. 교통시설이용지원: 시내버스 이용지원 미지급금 누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등	93
(1) 시내버스 이용지원 미지급금 누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94
(2) 연말 계약체결로 인한 일반연구비 이월 집행 지양 필요	99
7. 보철구 지급: 보철용 차량개조지원 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01
8. 제대군인 의료지원: 연례적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106
9.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보조금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국비 부담분 우선 집행	112
10.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연례적 이월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	117
(1) 연례적 이월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118
(2) 성과지표 추가·변경 필요	121
11. 보훈교육연구원: 보훈교육연구원과 국가보훈부의 일부 사업 유사 ...	123
12.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관리 철저 필요	129
13. 현충시설건립: 사업관리 철저 필요	133
14. 보훈기념행사: 연례적인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내역변경 지양 필요 등	140
(1) 연례적인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내역변경 지양 필요 ...	141

(2) 기념식별 구체적인 계획 또는 매뉴얼 수립 필요	145
15. 국립신암선열공원 :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 필요절차를 예산 편성 전 면밀히 검토할 필요	149
16. 국립묘지조성: 안장 여력의 적기 확보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155
17. 국립제주호국원: 안·이장 예측치를 정확히 하여 과도한 재료비 편성을 지양할 필요	162
18.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제대군인 대학교 수업료 지원비율상향 또는 지원대상 확대 방안 검토 필요	166
19.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추계 오류 및 형식적인 예산편성 지양 필요	169
20.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사업: 비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 지양	173
21.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177
22.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계기):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사업 계획 철저 필요	179
23. 보훈정책개발: 연례적인 이월이 반복 중인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185
(1) 연례적인 이월이 반복 중인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186
(2)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89

Ⅲ. 보훈기금 191

1.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후순위 투찰업체와의 계약 체결 부적정	191
--	-----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97

제1장 개요

I. 총괄

- 국가보훈부의 재정은 일반회계, 2개의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2개의 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의 예산현액(총계기준)은 총 7조 578억원으로 일반회계 6조 2,931억원, 특별회계 156억원, 기금 7,491억원이며,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음.

< 국가보훈부 재정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회계(A)	5,502,267	5,669,751	5,741,416	6,067,569	6,293,084
▪ 일반지출(a)	5,425,578	5,588,925	5,652,568	5,974,918	6,200,433
▪ 내부거래지출	76,689	80,826	88,848	92,651	92,65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B)	18,789	17,860	16,990	15,531	13,259
▪ 일반지출(b)	18,789	17,860	16,990	15,531	13,2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C)	2,083	2,133	2,240	2,270	2,315
▪ 일반지출(c)	2,083	2,133	2,240	2,270	2,315
보훈기금(D)	665,220	835,966	682,307	651,547	600,414
▪ 일반지출(d)	143,648	147,979	138,126	140,595	134,963
▪ 내부거래지출	170,781	180,949	180,805	150,609	120,577
▪ 여유자금운용	350,791	507,038	363,376	360,343	344,87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E)	137,000	161,346	137,808	138,762	148,730
▪ 일반지출(e)	89,435	95,063	98,473	102,707	104,002
▪ 여유자금운용	47,565	66,283	39,335	36,055	44,728
총계(A+B+C+D+E)	6,325,359	6,687,056	6,580,761	6,875,679	7,057,802
전년대비 증감률(%)	△0.1	5.7	△1.6	4.5	2.6
총지출(a+b+c+d+e)	5,679,533	5,851,960	5,908,397	6,236,021	6,454,972

II.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억 5,100만원이며, 97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0억 4,0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4,1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35억 8,9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24년 일반회계 세입징수 현황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B/A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재산수입	670	1,245	1,217	97.8	-	28
▪ 관유물대여료	159	191	165	86.4	-	26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11	1,054	1,052	99.8	-	2
경상이전수입	8,791	8,246	4,544	55.1	141	3,561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88	14	7	50.0	-	7
▪ 변상금및위약금	51	-	-	-	-	-
▪ 기타 경상이전수입	8,652	8,233	4,537	55.1	141	3,554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55	279	279	100.0	-	-
▪ 면허료및수수료	3	2	2	100.0	-	-
▪ 잡수입	352	277	277	100.0	-	-
관유물매각대	35	-	-	-	-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35	-	-	-	-	-
합 계	9,851	9,770	6,040	61.8	141	3,589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6조 2,562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215억원과 예비비 56억원, 이체 98억원을 포함한 6조 2,931억원임.
- 이 중 세출예산현액 대비 99.3%인 6조 2,481억원이 지출되고, 107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43억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지출액 중 78.6%인 4조 9,138억원이 보훈급여금 등 ‘보훈심사 및 보상’사업으로 지출되었으며, 12.4%인 7,730억원이 ‘보훈의료복지’사업으로, 나머지 9.0%인 5,614억원이 국립묘지·보훈행정 등의 사업비로 집행되었음.

< 2024년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프로 그램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비 비	예 현 산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이체	이용	전용					
합 계	6,256,190	21,516	9,782	±99,004	±3,301	5,596	6,293,084	6,248,134	10,656	34,294
보훈심사 및 보상	5,025,545	-	-	△96,505	±233	-	4,929,040	4,913,758	18	15,265
보훈단체 지 원	38,870	-	-	-	-	-	38,870	38,321	-	549
보훈의료 복 지	676,108	-	-	92,131	-	5,596	773,835	772,971	533	331
생활안정 지 원	29,002	56	-	-	±323	-	29,058	27,560	-	1,498
보훈문화	98,563	2,437	-	△611	±166	-	100,388	92,190	2,331	5,868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106,389	17,777	6,766	△514	±1,149	-	130,418	116,581	6,972	6,865
제대군인 지 원	59,188	1,077	-	2,909	±882	-	63,174	59,756	386	3,032
보훈행정	129,874	169	3,017	2,590	±549	-	135,649	134,346	416	887
회계기금 간 거래	92,651	-	-	-	-	-	92,651	92,651	-	-

< 2024년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비 비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용	이용	이체					
합 계	6,146,067	21,505	2,759 △3,230	96,414 △99,004	-	5,596	6,176,871	6,132,593	10,656	33,734
보훈보상금	3,468,124	-	-	△71,183	-	-	3,396,941	3,396,879	-	62
수당	1,536,117	-	△226	△25,231	-	-	1,510,660	1,496,660	-	14,000
수시보상금	9,982	-	226	-	-	-	10,208	10,195	-	13
보훈심사	1,620	-	7	△87	-	-	1,540	1,434	18	89
등록심사	9,702	-	△7	△4	-	-	9,691	8,589	-	1,102
보훈단체지원	38,870	-	-	-	-	-	38,870	38,321	-	549
교통시설 이용지원	11,329	-	-	-	-	-	11,329	10,730	533	66
의료지원	656,737	-	-	92,131	-	5,596	754,464	754,464	-	111
의료환경개선	8,042	-	-	-	-	-	8,042	7,889	-	153
교육지원	26,237	-	△300	-	-	-	25,937	24,461	-	1,476
취업지원	2,765	56	323 △23	-	-	-	3,121	3,099	-	22
독립기념관	28,176	-	-	-	-	-	28,176	28,176	-	-
보훈문화진흥	25,261	-	△100	-	-	-	25,161	23,974	419	768
현충시설	37,307	2,437	20 △20	△611	-	-	39,132	32,153	1,912	5,067
기념사업	7,819	-	146 △46	-	-	-	7,919	7,887	-	32
공훈발굴및 국가유공자 등예우	11,967	-	595 △601	△95	-	-	11,866	10,458	-	1,408
국립묘지 조성및관리	94,422	17,777	554 △548	△419	6,766	-	118,552	106,123	6,972	5,457
제대군인 생활안정	25,748	350	702 △39	4,283 △418	-	-	30,626	30,195	88	343
참전제대군인 명예선양	33,440	727	180 △843	△956	-	-	32,548	29,561	298	2,688
청관사임차 및시설개선	5,504	-	△68	-	-	-	5,436	5,390	-	46
일반행정	5,412	117	2 △323	-	-	-	5,207	4,650	416	141
보훈서비스 지원	4,663	-	4 △86	-	-	-	4,581	4,461	-	121
정보화	4,172	41	-	-	-	-	4,213	4,193	-	20
회계기금간 전출	92,651	-	-	-	-	-	92,651	92,651	-	-

< 2024년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사 업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비비	예산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용등	이 용	이 체					
합 계		110,123	10	1,360 △1,105	100	3,016	0	116,211	115,651	0	560
인 건 비	소 계	98,008	-	245 △60	2,486	1,886	-	102,565	102,531	-	34
	본 부	36,190	-	245	1,678	-	-	37,986	37,986	-	-
	소속기관	61,818	-	△60	808	1,886	-	64,579	64,546	-	34
기 본 경 비	소 계	12,115	10	298 △12	104	1,130	-	13,646	13,120	-	526
	본부총액			1		883	-	3,352	3,188	-	164
	인건비성경비	2,480	-	△12	-	-	-	3,352	3,188	-	164
	본부운영	3,844	10	148	-	-	-	4,002	3,938	-	64
	지방청총액										
	인건비성경비	842	-	71	-	-	-	913	878	-	36
	국립묘지운영	1,849	-	12	-	247	-	2,108	1,941	-	167
	서울지방청운영	1,225	-	16	63	-	-	1,305	1,278	-	27
	부산지방청운영	532	-	8	7	-	-	547	536	-	11
	대전지방청운영	454	-	17	29	-	-	500	476	-	24
	대구지방청운영	383	-	18	-	-	-	401	385	-	16
	광주지방청운영	506	-	7	5	-	-	518	500	-	17

3) 예비비 지출

-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비비는 55억 9,6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훈병원의 의료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전공의 대체인력 채용비, 전문의 당직비 등 보훈병원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임.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일반 예비비	보훈병원 진료	5,596	5,596	-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LPG 세금인상분 보조금 부담사용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금으로,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00만원을 수납하고, 3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24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 >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B/A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67	18	15	83.3	-	3
기타재산수입	39	10	7	70.0	-	3
기타경상이전수입	28	8	8	100.0	-	-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132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68.5%인 90억 8,300만원이 집행되고 41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내역 >

(단위: 백만원)

사 업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용	이 용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13,259	-	-	-	13,259	9,083	-	4,176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기관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1억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2024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 >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B/A
합 계	109	101	101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	109	101	101	100.0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비 23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23억 1,5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제주보훈업무지원	2,315	2,315	2,315	-	-

Ⅲ. 기금 결산

1. 보훈기금

- 2024회계연도 보훈기금의 조달 및 운용 계획 규모는 6,004억 1,400만원이었으나, 수입과 지출 실적은 계획대비 54.2%인 3,256억 2,600만원으로, 그 주요 원인은 골프장 매각 미실현에 따라 매각대금이 미회수 되었기 때문임.

< 2024년 보훈기금 수입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A)	실적(B)	B/A	구 분	계획(A)	실적(B)	B/A
합 계	600,414	325,626	54.2	합 계	600,414	325,626	54.2
자 체 수 입	193,414	69,886	36.1	사 업 비	134,124	128,728	96.0
정부내부수입	177,680	177,563	99.9	기금운영비	839	767	91.4
여유자금회수	229,320	78,177	34.1	정부내부지출	120,577	120,575	100.0
				여유자금운용	344,874	75,556	21.9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2024회계연도 동 기금의 조달 및 운용 계획 규모는 1,487억 3,000만원이었으나, 수입과 지출 실적은 계획대비 99.1%인 1,474억 3,500만원(순계 기준)으로, 그 주요 원인은 토지매각대 등 수입항목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낮았기 때문임.

< 2024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A)	실적(B)	B/A	구 분	계획(A)	실적(B)	B/A
합 계	148,730	200,682 (147,435)	134.9 (99.1)	합 계	148,730	200,682 (147,435)	134.9 (99.1)
자 체 수 입	8,414	7,428	88.3	사 업 비	103,908	103,629	99.7
정부내부수입	92,651	92,651	100.0	기금운영비	94	81	86.2
여유자금회수	47,665	100,603 (47,356)	211.1 (99.4)	여유자금운용	44,728	96,972 (43,725)	216.8 (97.8)

IV.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¹⁾

-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의 자산은 3조 1,009억원으로, 전년 대비 8,601억원(38.4%)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내단기예탁금 회수 등으로 인하여 유동자산이 296억원(8.2%) 감소하였으나,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국방부로부터 국립서울현충원 이관(‘24.7.24) 및 신규 취득 등을 통해 일반유형자산이 8,989억원(50.0%)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의 부채는 576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원(1.4%)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근로자 등의 급여 인상으로 퇴직금추계액이 반영되어 장기충당부채가 5억원(18.4%)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8,593억원(39.3%) 증가한 3조 433억원임.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산 계	3,100,919	2,240,814	860,105	38.4
Ⅰ.유동자산	332,871	362,447	△29,576	△8.2
Ⅱ.투자자산	50,556	57,324	△6,768	△11.8
Ⅲ.일반유형자산	2,697,864	1,798,956	898,908	50.0
Ⅳ.무형자산	13,705	14,420	△715	△5.0
Ⅴ.기타비유동자산	5,923	7,667	△1,744	△22.7
부채 계	57,583	56,789	794	1.4
Ⅰ.유동부채	3,103	2,779	324	11.7
Ⅱ.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장기충당부채	3,019	2,550	469	18.4
Ⅳ.기타비유동부채	51,461	51,461	0	0
순자산 계	3,043,336	2,184,025	859,311	39.3
Ⅰ.기본순자산	1,279,180	848,492	430,688	50.8
Ⅱ.적립금 및 잉여금	849,853	663,968	185,885	28.0
Ⅲ.순자산조정	914,303	671,566	242,737	36.1

2. 재정운영표²⁾

-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 6조 2,678억원이 발생하였음.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6조 1,950억원, 관리운영비 1,529억원, 비배분비용 36억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54억원, 비배분수익 198억원, 비교환수익 등 285억원으로 구성됨.
 -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수익 등을 가감하여 산출되며 전년 대비 2,549억원 증가한 6조 2,963억원이며, 이는 주로 국가보훈부 사업예산 증가 등에 기인함.
 - 프로그램순원가는 보훈부 사업예산 등인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차감한 6조 1,596억원임.
- 총 1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보훈심사 및 보상프로그램 4조 9,137억원과 보훈의료복지 8,419억원 등임.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에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6,159,574	5,925,223	234,351	4.0
가. 프로그램 총원가	6,194,959	5,959,273	235,686	4.0
나. 프로그램 수익	35,385	34,050	1,335	3.9
II. 관리운영비	152,909	145,901	7,008	4.8
III. 비배분비용	3,593	1,901	1,692	89.0
IV. 비배분수익	19,811	31,638	△11,827	△37.4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6,296,265	6,041,386	254,879	4.2
VI. 비교환수익 등	28,494	27,881	613	2.2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267,771	6,013,493	254,278	4.2

3. 순자산변동표³⁾

- 2024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1,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 증가하였음.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6조 2,678억원,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조 2,713억원, 조정항목 8,558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제재금수익 및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6조 2,779억원과 국고이전지출 및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66억원으로 구성됨.

-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23억원, 자산재평가이익 △46억원,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국방부로부터 국립서울현충원 이관('24.7.24)에 따른 순자산증감 8,581억원 등으로 구성됨.

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 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순자산변동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기초순자산	2,184,025	2,182,090	1,935	0.1
II. 재정운영결과	6,267,771	6,013,505	254,266	4.2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6,271,299	6,029,636	241,663	4.0
IV. 조정항목	855,783	△14,195	841,588	5928.8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3,043,336	2,184,025	859,311	39.3

V. 성과보고서

1. 성과체계

- 국가보훈부 임무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이고, 비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5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프로그램 목표, 10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목표 및 성과지표 현황 >

구 분	전 략 목 표	프 로 그 램 목 표	성 과 지 표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5	9	10	9	1	-
비율(%)	-	-	100	90	10	-

2.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2024년 성과 달성 총괄현황 >

(단위 : 개, %)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도 평균
5	9	10	-	7	3	97.4%
		100.0%	-	70.0%	30.0%	

- 프로그램목표 9개에 대하여 총 10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 중 7개는 달성, 3개는 미달성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
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보훈문화)(V-1)”의 ‘보훈문화의식 개선
도’ 등 7개 지표를 달성하고,
-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기금증식)(Ⅱ-2)” 중 ‘자기자본 이익률’, ‘88골프장 내장
객수’ 등 3개 지표를 미달성함.

<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 >

구 분	'23년 달성	'24년 달성
전략목표Ⅰ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Ⅰ-1)		
■ 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 (단위:%)	신규	○
□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Ⅰ-2)		
■ 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단위:%)	신규	○
전략목표Ⅱ :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Ⅱ-1)		
■ 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 (단위:점)	X	X
□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Ⅱ-2)		
■ 자기자본 이익률 (단위:%)	X	X
■ 88골프장 내장객수 (단위:명)	X	X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Ⅱ-3)		
■ 생활안정지원 만족도 (단위:점)	신규	○
전략목표Ⅲ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Ⅲ-1)		
■ 국립묘지 방문자 수 (단위:천명)	○	○
전략목표Ⅳ :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Ⅳ-1)		
■ 제대군인 취·창업률 (단위:%)	○	○
전략목표Ⅴ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Ⅴ-1)		
■ 보훈문화의식 개선도 (단위:점)	신규	○
□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체운동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Ⅴ-2)		
■ 보훈단체선양활동 언론보도실적 (단위:회)	○	○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달성 세부 현황 >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2년	'23년	'24년
전략목표Ⅰ：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보훈심사및 보상	①보훈급여금의 적정 지급률 (%)	투입	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 = [1-(과오금급 발생액 / 보훈급여금 집행액)]*100	목표	신규	신규	99.95
				실적	99.93	99.95	99.96
				달성률	-	-	100.0%
프로그램목표：Ⅰ-2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							
보훈행정	①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	산출	Σ기한준수 처리건수 / Σ완료된 건수	목표	신규	신규	86
				실적	신규	84.95	89.3
				달성률	-	-	103.8%
전략목표Ⅱ：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보훈의료복지	①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 (점)	결과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 + 보훈요양원 서비스 만족도) 가중치 평균값	목표	신규	89.04	89.82
				실적	신규	89.62	88.40
				달성률	-	100.7%	98.4%
프로그램목표：Ⅱ-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기금증식	①자기자본 이익률 (%)	결과	(당기순이익/자기 자본)x100	목표	64.9	70.6	72.0
				실적	71.8	60.1	60.8
				달성률	110.6%	85.1%	84.4%
	②88골프장 내장객수 (명)	결과	당해연도 내장객수	목표	178,333	182,058	183,879
				실적	187,005	179,976	167,923
				달성률	104.9%	98.9%	91.3%
프로그램목표：Ⅱ-3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생활안정지원	①생활안정지원 만족도 (점)	결과	외부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취업· 교육·대부 지원자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목표	신규	신규	85.5
				실적	84.5	85.3	85.9
				달성률	-	-	100.5%
전략목표Ⅲ：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2년	'23년	'24년
프로그램목표 : III-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①국립묘지 방문자 수 (천명)	산출	전체 국립묘지 방문인원 합산	목표	신규	8,421	8,802
				실적	8,338	8,715	9,198
				달성률	-	103.5%	104.5%
전략목표Ⅳ :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 IV-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제대군인지원	①제대군인 취·창업률 (%)	결과	(제군센터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은 취·창업 지원제대군인수 ÷ 제대군인 센터 회원 수) x 100	목표	66.1	66.9	67.0
				실적	66.3	66.9	67.4
				달성률	100.3%	100.0%	100.6%
전략목표Ⅴ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 : V-1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							
보훈문화	①보훈문화의식 개선도 (점)	결과	100점 환산점수 $= \sum_{i=1}^N \frac{Ai}{N}$	목표	신규	68.5	70.5
				실적	신규	68.2	70.7
				달성률	-	99.6%	100.3%
프로그램목표 : V-2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체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							
보훈단체지원	①보훈단체선양활 동 언론보도실적 (회)	산출	보훈단체 주관 보훈선양활동 언론보도 건수 합산	목표	282	470	560
				실적	431	552	562
				달성률	152.8%	117.4%	100.4%

제2장 검토의견

Ⅰ. 총괄

1. 부정확한 추계로 인한 연례적인 대규모 이용액 발생

□ 2024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6조 2,561억 9,000만원으로, 이 중 990억 400만원(1.6%)을 이용⁴⁾하였고, 33억 100만원을 전용⁵⁾하였음.

○ 이용액 990억 400만원은 전년 529억 1,500만원 대비 46억 8,900만원이 증가(87.1%)하였는데, 이는 주로 보훈대상자 진료비 및 제대군인전직지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으며, 과다추계된 보상금에서 이용 감 하였음.

< 2024년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프로 그램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비 비	예 산 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이체	이용	전용					
합 계	6,256,190	21,516	9,782	±99,004	±3,301	5,596	6,293,084	6,248,134	10,656	34,294
보훈심사 및 보상	5,025,545	-	-	△96,505	±233	-	4,929,040	4,913,758	18	15,265
보훈단체 지 원	38,870	-	-	-	-	-	38,870	38,321	-	549
보훈의료 복 지	676,108	-	-	92,131	-	5,596	773,835	772,971	533	331
생활안정 지 원	29,002	56	-	-	±323	-	29,058	27,560	-	1,498
보훈문화	98,563	2,437	-	△611	±166	-	100,388	92,190	2,331	5,868

4) 입법과목인 장·관·항 간의 상호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

5)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세항, 목간의 상호 융통)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

프로그램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비 비	예 현 산 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이체	이용	전용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106,389	17,777	6,766	△514	±1,149	-	130,418	116,581	6,972	6,865
제대군인 지원	59,188	1,077	-	2,909	±882	-	63,174	59,756	386	3,032
보훈행정	129,874	169	3,017	2,590	±549	-	135,649	134,346	416	887
회계기금 간 거래	92,651	-	-	-	-	-	92,651	92,651	-	-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의 이용액 약 990억원(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1.6%)은 2024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이용액 비율이 0.2%인 것과 비교하면 이용액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가보훈부는 매년 연례적으로 수백억원 대의 금액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각 세부사업의 추계가 부정확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주요 프로그램별 이용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35,074	±26,318	±1,133	±52,915	±99,004
보훈심사 및 보상	△29,497	△26,318	△1,133	△52,915	△96,505
보훈단체지원	△2,404	-	-	-	-
보훈의료복지	34,270 △400	26,318	-	49,815	92,131
생활안정지원	29 △160	-	-	-	-
보훈문화	△1,662	-	-	-	△611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227	-	218	-	△514
제대군인지원	△724	-	915	3,000	2,909
보훈행정	775	-	-	100	2,590
회계기금간 거래	-	-	-	-	-

자료: 국가보훈부

- 첫째, 국가보훈부는 연례적으로 ‘보훈심사 및 보상 프로그램’ 내의 ‘보상금’을 과다추계하여 타 사업의 부족액을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⁶⁾
- 2024년 보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월평균 189,065명으로 편성인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상금’ 사업 예산에서는 712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국가보훈부는 이 중 711억 8,300만원을 ‘보훈병원 진료’(469억원), ‘위탁병원 진료’(200억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42억 8,300만원) 사업에 각 이용하였음.

< 최근 7개년 ‘보상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18	'19	'20	'21	'22	'23	'24
예산액(A)	2,743,789	2,813,124	2,944,364	3,059,336	3,197,518	3,325,248	3,468,124
집행액(B)	2,695,588	2,794,347	2,941,338	3,034,761	3,127,504	3,258,090	3,396,849
집행잔액(A-B)	48,201	18,777	3,026	24,575	70,014	67,158	71,275
이·전용	8,150	1,202	3,020	24,565	35,153	64,247	71,183
불용	40,051	17,575	6	10	35,311	2,911	62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보훈의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사업의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오고 있음.
- ‘교통시설이용지원 세부사업’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지원금이 과소 추계되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보전 금액이 계속 누적되면서 다음연

6) P.56 참고

도 예산 집행 및 사업 수행에 지장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⁷⁾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지급이 미루어진 미지급 이월액 99억
2,500만원은 전년도의 이월금액 40억 1,7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제대군인 의료지원 세부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23억
6,5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이·전용을 통한 충당이 이루어졌음.⁸⁾⁹⁾

<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20	2,365	2,365	910	3,275	3,275	138.5	100.0
2021	2,365	2,365	1,284	3,649	3,649	154.3	100.0
2022	2,365	2,365	1,408	3,773	3,773	159.5	100.0
2023	2,365	2,365	2,284	4,649	4,649	196.6	100.0
2024	2,365	2,365	—	2,365	2,365	100.0	100.0

자료: 국가보훈부

- 셋째,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매
년 과소 추계로 인해 과소 편성됨에 따라 매년 이·전용을 통한 충
당이 이루어지고 있음.¹⁰⁾

7) P.93 참고

8) 2024년에는 이·전용 등을 통한 재원 충당 없이 당초 예산액인 23억 6,500만원만 집행하였는데, 이
는 진료비 등 지원금액 발생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 지원금액은 예산
액의 2배가 넘는 51억 5,200만원이었으나 국가보훈부가 별도 예산 조치 없이 예산금액만큼만 집행
하였기 때문임

9) P.106 참고

10) P.169 참고

- 이·전용 금액은 2022년 9억 1,500만원, 2023년 30억원, 2024년 49억 4,6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22	6,172	6,172	915	7,087	7,087	114.8	100.0
2023	6,172	6,172	3,000	9,172	9,135	148.0	99.6
2024	7,005	7,005	4,946	11,951	11,923	170.2	99.8

자료: 국가보훈부

- ☐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각 사업별 추계를 함에 있어, 산정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성인원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추계 되지 않도록 하고, 편성 단계 이후에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안 확정 전 집행 불능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등을 통하여 집행 잔액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주의를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성과보고서

1) 사업 개요

□ 2007년 1월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인 성과계획서와 계획 대비 실적을 측정하여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각 중앙관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인건비·기본경비가 반영된 비재정 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 예산이 반영된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부터 재정 사업의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사업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실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인 ‘단위사업’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인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모든 중앙관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정량·결과 지표로 설정하여야 함.

2) 국가보훈부 성과관리체계

- 국가보훈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등에 따라 작성한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성과계획서’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를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5개)-프로그램 목표(9개)-성과지표(1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 성과관리체계도 >

임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	
비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 표	전략목표 I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프로그램목표 2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
	전략목표 II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 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3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전략목표 III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IV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전략목표 V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민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
		프로그램목표 2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체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

자료: 국가보훈부

3) 검토의견

(1) 성과달성률 저조

- 국가보훈부가 위 성과계획서에 따른 2024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0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7개(70.0%)임.
- 60개 중앙관서가 재정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총 507개 중 415개(81.9%)가 달성되고 92개(18.1%)가 미달성되었음.¹¹⁾
- 전략목표Ⅱ(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의 경우 성과지표 4개 중 1개(25.0%)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점)’, 국가유공자 등 대상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88골프장의 ‘자기자본 이익률(%)’과 ‘내장객 수(명)’의 성과지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함.

11) 전체 부처평균은 81.9%임

< 전략목표 달성 현황 >

전 략 목 표	사업규모 (억원)	성과지표 목표달성 실적	
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49,266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0%
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9,296	지표 수	4
		달성/미달성	1/3
		달성률	25.0%
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 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1,110	지표 수	1
		달성/미달성	1/0
		달성률	100.0%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685	지표 수	1
		달성/미달성	1/0
		달성률	100.0%
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2,341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0%
총 계	62,698	지표 수	10
		달성/미달성	7/3
		달성률	70.0%

자료: 국가보훈부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달성률 또한 75.35%로, 같은 기간 전체
부처평균인 76.35%보다 낮은 바,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
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프로그램 목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성과 지표 (A)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 (B/A)	전체부처 평균
2024	5	8	10	7	3	75	81.9
2023	5	9	20	15	5	75	76.9
2022	5	9	20	18	2	90	77.4
2021	5	9	12	10	2	83.3	76.6
2020	5	9	12	9	3	75	68.9
2019	5	9	13	7	6	53.8	76.4
평균	5	9	14.50	11.00	3.50	75.35	76.35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실국별로 개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살펴보면, 보상정책국(90.43%), 제대군인국(99.90%)은 100%에 미달함.

＜ 성과지표별·실국별 목표 달성 현황 ＞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보상 정책국	보훈급여금의 적정 지급률					100.0	90.4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소요기간 단축(일)	106.7	102.0				
	신체검사 만족도(점)			100.1	100.2		
	등록관련 행정소송 패소율 (%)			100.0	84.3		
보훈단체 협력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국민 호응도(점)	100.5	102.1				117.95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보훈단체선양활동 언론보도실적(회)			152.8	117.4	100.4	
	지방보훈회관 이용자 만족도(점)			100.1	100.2		
	보훈단체선양활동 참가자수(명)			100.2	170.8		
복지 증진국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점)					98.4	101.84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점)	101.9	101.2				
	보훈의료서비스 수혜율(%)	98.4	100.8	100.0	101.5		
	보훈복지서비스 만족도 (점)			100.2	99.9		
	교육지원 만족도(점)						
	대부지원 만족도(점)	105.6	106.3	103.1	101.6		
	취업지원 만족도(점)	103.4	101.1				
	국가유공자 취업목표 달성율(%)			90.0			
	신규취업자 고용유지율(%)				113.0		
	88CC고객만족도(점)	97.5	98.3				
	88골프장 내장객수(명)			104.9	98.9	91.3	
	자기자본 이익률(%)			110.6	85.1	84.4	
	이동보훈팀 지원 실적(건)			102.5	141.5		
보훈문화 정책관	보훈문화의식 개선도 (점)					100.3	101.7
	보훈선양 정책 공감도(점)	100.0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인원(천명)			100.6	180.7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자 추천도(점)			101.0	100.0		
	보훈문화활동 참여의향도(점)			107.4	100.0		
보훈예우 정책관	독립유공자 포상인원(명)	117.0	109.3	99.7			104.63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평가(점)			102.5	101.2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				103.5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제대 군민국	행사 참여자 한국인식개선도(점)						99.90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및 고용 만족도(점)						
	정부 주관 참전기념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100.0	101.8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만족도(점)	96.5	100.0				
	제대군인 취·창업률 (%)			100.3	100.0	100.6	
	참전군인에 대한 존경도(점)			100.1	99.8		
정책 기획관	정보화사용자 만족도(점)	101.3	107.4				101.95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개선요청 반영률 (%)			103.0	100.8		
	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					103.8	

자료: 국가보훈부

(2) 성과계획 분야의 문제점

□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 단위산업들의 결과를 대표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국가보훈부는 프로그램 목표 Ⅲ-1을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로 설정하고 단위사업으로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세부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등 발굴 포상’, ‘국립서울현충원’ 등을 운영하고 있음.

(전략목표) 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 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
(측정산식) 전체 국립묘지 방문인원 합산

□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로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만을 설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는 프로그램 목표를 포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게 되었음.

○ ‘독립유공자 등 발굴 포상’ 세부사업은 2022년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인원(단위 : %)’을 성과지표로 설정·운용하고 있었으나 2023년부터 삭제하였고,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세부사업 등은 성과지표를 설정·운용하지 않고 있음.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위와 같이 성과지표로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 목표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거나 세부사업별 자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법령상 의무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 미설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가보훈부는 2024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총 31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총 736억 2,300만원임. 이는 전년 대비 계약 건수로 8건, 계약금액으로 239억 7,700만원 증가한 규모임.

< 국가보훈부 계약 체결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회계·기금명	2023년		2024년	
	계약건수	총 계약금액	계약건수	총 계약금액
일반회계	283	47,720	257	70,490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보훈기금	22	1,142	56	2,377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4	784	4	756
합 계	309	49,646	317	73,623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¹²⁾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은 종전에는 재량사항이었으나 2023년 11월 16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는데, 정부는 당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계약 관련 권한 남용 등에 취약하므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힘.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 >

종전 규정	현행 규정 (2023. 11. 16. 개정, 2024. 5. 17. 시행)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1. ~ 3. (종전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종전과 같음)

□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규정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음에도 개정 후 시행유예 기간(6개월) 내에 동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5년 8월까지도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유예기간 내 설치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현재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¹³⁾를 받고 있다고 밝힘.¹⁴⁾

□ 이와 같이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예산 집행 절차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인바, 국가보훈부는 법령상 의무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 미설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13) 훈령 제정에 통상 45일 정도 소요되는데,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행정규칙 입안 → ② 제·개정안 예비 검토 ③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 ④ 규제영향분석서 작성(③에서 "규제"로 통보 받은 경우만 해당) → ⑤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심사 대상 여부 안건 상정 → ⑥ 행정예고(20일 이상) 및 의견조회(10일 이상) → ⑦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행정예고 종료 후) → ⑧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⑨ 제·개정안 심사의뢰 및 심사결과 통보 → ⑩ 발령

※ ③ 에서 비규제인 경우(④, ⑦~⑧ 생략)

14) 답변 제출일자: 2025년 8월 4일

II. 일반회계

[세입]

1. 과태료¹⁵⁾: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태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4년 세입예산액은 8,800만원으로 이 중 4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수납률 0.5%)하고, 나머지 8,752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 2024년도 과태료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과태료	88	88	-	88	-	-	-	-	88

주 :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함에 따라 수납액이 ‘-’로 표기

자료: 국가보훈부

15) 세부사업: 과태료(56-563)

2) 검토의견

(1)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본 사업은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데, 2021~2024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20% 미만 수준에 그쳤으며, 수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해도 존재함. 2024년 수납률 또한 전년(예산현액 기준 20.9%) 대비 악화된 0.5% 수준에 그침.

○ 과태료의 최근 10년간 예산액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6,700만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22년 7,400만원으로, 2023년에는 8,800만원으로 각각 증가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과태료 수납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과태료 예산 (A)	과태료 전체 수납액(B)	수납률 (B/A)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	그 외 과태료
2015년	24	33	137.5	33	0
2016년	24	113	470.8	113	0
2017년	25	59	236.0	59	0
2018년	49	30	61.2	30	0
2019년	67	95	141.8	95	0
2020년	67	3	4.5	3	0
2021년	67	-	-	0	0
2022년	74	14	18.9	10	4
2023년	88	18	20.5	0	18
2024년	88	-	-	0	0
2025년 7월	88	31	35.2	10	21

자료: 국가보훈부

□ 그간 과태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의 경우 2019년까지는 매년 6,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사실상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2020년 이후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과태료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과태료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B)	불납 결손액 (D)	불납 결손율 (D/B)	미수납액 (E)
2024	수납내역 없음	-	-	-	-	-	-
2023	보훈단체 수익사업 위반 과태료	18	18	100.0	0	0	0
2022	보훈특별고용불이행 과태료	10	10	100.0	0	0	0
	보훈단체 수익사업 위반 과태료	4	4	100.0	0	0	0
2021	수납내역 없음						
2020	차별대우 미시정업체 과태료	3	3	100.0	0	0	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수납액의 규모나 수납률에 관계없이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면 실제 세입 규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왜곡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전년 수준 금액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2) 보훈특별고용 과태료 부과 검토 필요

□ 보훈특별고용은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해 적합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해 고용을 이행하게 하는 제도임.¹⁶⁾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취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취업지원 실시기관¹⁷⁾ 중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고용하도록 되어 있음.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① 제3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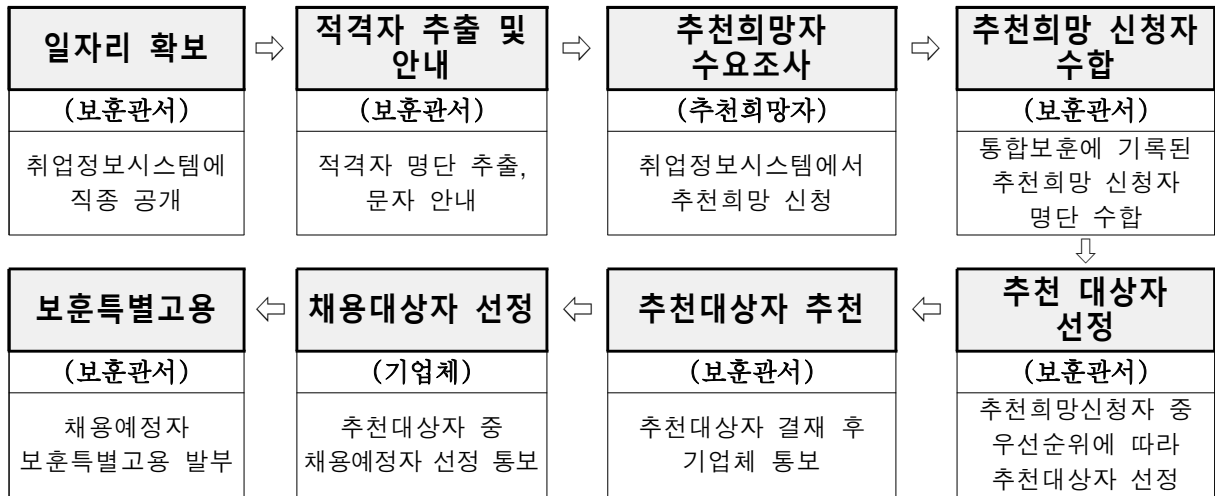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 보훈특별고용 업무 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

구 분	독립 유공자	국 가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제 대 군 인*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	×
자녀	○	전몰·순직 군경자녀	×	×	사망·행불자 자녀	사망·행불자 자녀	×
		상이 6급 이상 자녀		장애 중등도 이상의 자녀	장애 11등급 이상의 자녀	상이 6급 이상의 자녀	
손자녀	○	×	×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만 해당, 보훈특별고용·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적용되나, 가점은 미적용

자료: 국가보훈부

-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채용실태 등의 확인·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요청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⁸⁾ 또한, 기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게 보훈특별고용을 명한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⁹⁾

□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최근 5개년 의무고용 이행현황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이행률은 60% 초반에 그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민간기업 및 사립학교 또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의무고용 이행 현황 >

(단위: %)

연 도	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립학교
2019	43.4	61.6	82.7	30.6	38.9
2020	42.0	63.9	81.4	29.8	36.8
2021	41.4	64.9	80.2	29.2	36.2
2022	36.6	63.7	77.5	24.6	33.2
2023	36.2	62.5	77.3	24.0	31.8
2024	35.1	59.8	76.7	22.9	30.9

자료: 국가보훈부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기관별 의무고용 이행 현황 >

(’25.6.30. 기준, 단위:명, %)

구 분	합 계	국가기관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립학교
기관·업체 수	16,090	585	2,369	11,869	1,267
의무고용 산출인원	222,554	8,773	43,725	164,818	5,238
실제 고용인원	78,011	5,404	33,621	37,368	1,618
의무고용 이행률	35.1%	61.6%	76.9%	22.7%	30.9%

* 중앙행정기관의 우정직렬 비율이 높아, 우정직렬(집배, 계리직 등) 제외 시 국가기관 전체는 89% 수준, 중앙행정기관은 116% 수준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채용환경 악화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기업체 등과 사전 채용 협의를 충분히 거쳐 보훈특별고용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부터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최근 10년간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 부과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B)	불납 결손액 (D)	불납 결손율 (D/B)	미수납액 (E)
2024	-	-	-	-	-	-
2023	-	-	-	-	-	-
2022	10	10	100.0	-	-	-
2021	-	-	-	-	-	-
2020	-	-	-	-	-	-
2019	95	95	100.0	-	-	-
2018	40	30	75.0	-	-	10
2017	70	55	78.6	-	-	15
2016	115	110	95.7	-	-	5
2015	95	25	26.3	-	-	70

자료: 국가보훈부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미수납 징수 건 포함

□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미 종식되었고, 취업지원 대상 중 고령자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보훈대상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과 협조는 줄어들고 있으며, 채용시험 가점으로 취업한 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 ‘보훈특별고용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취업실적 상향을 위해 관련 정보를 변경해 처리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됐고 업무를 처리하는 규정과 시스템도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음.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보훈특별고용의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행 법령의 규범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기타경상이전수입²⁰⁾: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국고 보조금 정산 반환금,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과 연납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4년에는 예산액 86억 5,200만원 중 82억 3,3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45억 3,700만원을 수납(수납률 55.1%)하였음.

<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타경상이전수입	8,652	8,652	-	8,652	8,233	4,537	3,554	141	8,652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일반회계세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해마다 수납액이 예산액의 절반 수준임에도 2024년까지 꾸준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에도 수납률이 55.1%에 그침.

20)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본 사업은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데, 2021~2024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70% 미만 수준에 그쳤으며, 불납 결손액도 꾸준히 발생하였음. 2024년 수납률은 전년(예산액 기준 33.6%, 징수결정액 기준 39.6%)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60% 미만 수준에 그쳤음.

< 최근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및 예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A)	7,319	7,622	7,851	8,155	8,400	8,652
징수결정액(B)	6,046	7,859	9,760	11,065	7,131	8,233
수납액(C)	2,509	4,231	3,454	5,430	2,111	4,537
수납률(C/A)	34.3	55.5	44.0	66.6	25.1	52.4
수납률(C/B)	41.5	53.8	35.4	49.1	29.6	55.1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B)	불납 결손액 (D)	불납 결손율 (D/B)	미수납 액 (E)
2024	보훈급여금 과오불	4,100	949	23.1	141	3.4	3,009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2,963	2,910	98.2	0	-	53
	교육비지원과오불	76	73	95.7	0	-	3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542	206	37.9	0	-	336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551	399	72.4	0	-	152
	계	8,233	4,537	55.1	141	1.7	3,554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B)	불납 결손액 (D)	불납 결손율 (D/B)	미수납 액 (E)
2023	보훈급여금 과오불	4,700	1,167	24.8	207	4.4	3,326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925	875	94.6	0	-	50
	교육비지원과오불	133	127	95.5	0	-	6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729	206	28.3	0	-	523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644	446	69.3	0	-	198
	계	7,131	2,821	39.6	207	2.9	4,102
2022	보훈급여금 과오불	5,854	1,381	23.6	139	2.4	4,334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3,493	3,443	98.6	0	-	50
	교육비지원과오불	100	94	94.0	0	-	6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915	214	23.4	0	-	701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702	297	42.3	17	2.4	388
	계	11,065	5,430	49.1	156	1.4	5,479
2021	보훈급여금 과오불	5,879	1,187	20.2	189	3.2	4,503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2,106	1,661	78.9	0	-	445
	교육비지원과오불	153	134	87.6	0	-	19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1,083	206	19.0	0	-	877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539	267	49.5	4	4	268
	계	9,760	3,454	35.4	194	2.0	6,112
2020	보훈급여금 과오불	3,048	626	20.5	30	1.0	2,393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3,415	3,284	96.2	0	-	131
	교육비지원과오불	112	106	94.6	0	-	7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1,031	0	-	0	-	1,031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253	217	85.8	0	-	36
	계	7,859	4,232	53.9	30	0.4	3,598

자료: 국가보훈부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급여금 과오금
은 수납률이 23.1%에 그치고 미수납액은 30억 900만원에 달하며, 수
납률이 두 번째로 저조한 광복회관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납률 38.0%,
미수납액은 3억 3,600만원에 달함.

< 연도별 보훈급여금 과오금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수 결정액 (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18년	3,893	729	760	2,772	361	19.5
2019년	3,506	874	1,031	2,249	226	29.4
2020년	3,048	632	625	2,393	30	20.5
2021년	5,879	3,514	1,187	4,503	189	20.2
2022년	5,854	2,423	1,381	4,334	139	23.6
2023년	4,700	1,520	1,167	3,326	207	24.8
2024년	4,100	1,021	949	3,009	141	23.1

자료: 국가보훈부

< 연도별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과오금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수 결정액(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18년	958	500	-	958	-	-
2019년	1,011	54	38	973	-	3.8
2020년	1,031	58	-	1,031	-	-
2021년	1,083	52	206	877	-	19.0
2022년	915	384	214	701	-	23.4
2023년	723	22	206	517	-	28.4
2024년	543	26	206	336	-	37.9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수납액의 규모나 수납률에 관계없이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면 실제 세입 규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왜곡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임의채납액의 채납기간별 현황을 보면 국가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한 장기채납액이 상당한 비중(30.3%)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기채납된 채권은 불납결손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세입누락으로 인한 국고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²¹⁾

< 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임의채납액 채납기간별 현황 >

(단위: 백만원, %)

채납기간	5년 이상	4~5년	3~4년	2~3년	1~2년	1년 미만	계
금액	268	27	46	73	125	306	845
비중	31.7	3.2	5.4	8.6	14.8	36.2	100.0

자료: 국가보훈부

- 국회에서 최근 매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편성근거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으나,²²⁾ 국가보훈부는 매년 ‘전년 대비 3% 증액’을 편성근거로 제출하고 있음.

- 수납액이 가장 많은 2022년에도 금액은 54억 3,000만원에 불과함에도, 예산액은 2019년 73억 1,9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86억 5,200만원에 이름.

21)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22) 2022~2024년 정부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 예결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

< 최근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및 예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A)	7,319	7,622	7,851	8,155	8,400	8,652
징수결정액(B)	6,046	7,859	9,760	11,065	7,131	8,233
수납액(C)	2,509	4,231	3,454	5,430	2,111	4,537
수납률(C/A)	34.3	55.5	44.0	66.6	25.1	52.4
수납률(C/B)	41.5	53.8	35.4	49.1	29.6	55.1

자료: 국가보훈부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임의채납 감소를 통한 수납실적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채납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최소화 노력 필요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항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환수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²³⁾ 환수사유는 ① 범죄, 사망,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음에도 신상변동신고를 지연·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²⁴⁾ ② 지급제도 변경, 담당자 변경 및 실수로 인하여 행정 착오가 발생한 경우, ③ 소관기관에서 군 기록 정정, 범죄경력 통보 등을 누락하여 과오급금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분류됨.²⁵⁾

□ 2024년도 보훈급여금 과오불로 인한 징수결정액 41억원은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발생액은 10억 2,100만원임.

< 연도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수 결정액 (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20년	3,048	632	625	2,393	30	20.5
2021년	5,879	3,514	1,187	4,503	189	20.2
2022년	5,854	2,423	1,381	4,334	139	23.6
2023년	4,700	1,520	1,167	3,326	207	24.8
2024년	4,100	1,021	949	3,009	141	23.1

자료: 국가보훈부

○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 규모가 가장 큰 부정수급으로 인한 과오급금의 징수결정액은 26억 7,000만원으로, 이 중 5억 7,900만원 (21.7%)이 수납되었고 74.9%인 20억 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4) 신상변동 사항 신고 지연 및 누락의 경우 4개월 이상에 한함

25) 소관기관에서 군 기록, 범죄경력 통보 누락 등, 상이등급 (직권)재판정에 따른 등급 변동, 3개월 이내 신상변동 사항 등 신고 지연 · 누락

○ 또한, 직원의 실수나 업무 소홀 등 행정 착오 유형의 징수결정액 6억 6,700만원 중 24.4%인 1억 6,300만원이 수납되었음.

- ‘행정착오’의 경우 2024년에도 29건(1억 100만원)이나 발생하였음.
- 이와는 별도로, 보훈급여금은 아니나 ‘의료지원비 과오급금’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나 담당자의 착오로 징계부과금으로 징수결정된 바 있는 ‘징계부과금’의 미수납액 6,874,100원도 존재함.²⁶⁾

< 2024년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원인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수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부정 수급	218	2,670	579	90	2,001
행정 착오	69	667	163	50	454
군기록 정정·기타	143	763	207	1	554
계	430	4,100	949	141	3,009

자료: 국가보훈부

< 2020~2024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유형별 건수 및 금액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합계		부정수급		행정착오		군기록 정정·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142	632	55	364	27	164	60	104
2021	254	3,514	87	1,664	41	411	126	1,439
2022	164	2,423	53	688	22	337	89	1,398
2023	312	1,520	225	1,010	36	322	51	188
2024	218	1,021	96	670	29	101	93	250

자료: 국가보훈부

26) 국가보훈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수납 중인 고지건은 수입과목 정정처리가 되지 않아, 수납 완료 후 과목정정 처리 예정이라고 밝힘.

□ 보훈급여금 과오납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① ‘부정 수급’은 납부의무자가 고령·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대부분 고액²⁷⁾인 과오납금을 소액 분할납부하며,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 확인되어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② ‘행정착오’의 경우 제도가 수시로 바뀔에 따라 담당자의 착오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③ ‘군기록 정정·기타 소관기관이 통보를 누락한 경우’는 범죄 등과 같은 신상변동사유 발생의 확인을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하게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함.

□ 그러나 ‘행정착오’의 경우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체계의 철저한 확립 및 지휘·감독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과목을 착각해서 발생한 징계부과금 미수납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보훈부의 자체 교육 및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군기록 정정·기타 소관기관이 통보를 누락한 경우’의 경우에도 정부통합복지망인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등 기관간 정보의 공동 활용 또는 실시간 통지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신상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7) 2024년 기준 정수결정 건수(429건) 대비 평균 발생액 약 955만원

□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보훈급여금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국가유공자 등의 사기와 명예를 저하시키고 보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므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관련 법률²⁸⁾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²⁹⁾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수인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행정 미숙으로 인한 착오 건수를 줄이도록 하고, 기관 간 정보의 적극적인 공동 활용 또는 실시간 통지 등의 방안 강구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보훈급여금 과오급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과오급금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9)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사례

연번	부정수금액	발생경위
1	5,800만원	·유공자의 조카이나, 허위부정 등록 ·2018.11. 경찰서 고발 후 2018.12. 혐의없음 통보
2	7,900만원	·개가 및 이중호적 취득한 유공자의 배우자가 부정수급 ·2018.8. 경찰 수사 의뢰 후 검찰 송치, 2019.7. 징역 1년 6개월 선고
3	8,300만원	·유공자의 배우자 2005.1월 사망 후 자녀가 보상금 부정수급(사망 미신고) ·2018.11. 경찰서 고발 조치 후 2019.9. 징역 1년 선고

자료: 국가보훈부

[세출]

1. 보상금³⁰⁾: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집행잔액 규모 및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상금’은 국가를 위한 신체적·사회적 희생과 공헌이 있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조 3,969억 4,100만원 중 3조 3,968억 7,900만원(99.9%)이 집행되고,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보상금’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상금	3,468,124	3,468,124	-	△71,183	3,396,941	3,396,879	-	62	3,562,819

자료: 국가보훈부

□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본인 또는 재해부상군경 등의 유족으

30) 세부사업: 보상금(1132-300)

로, 보상금은 월 단위(매월 15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대상·훈격·상이등급 등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고 있음.

<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

구분	법률	대상자	지급액 (천원)	비고
독립 유공자	독립 유공자 법	- 애국지사	1,425~3,026	· 훈격별 차등
독립 유공자 유족		-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유족	889~3,185	· 훈격별 차등 · 배우자와 그 외 유족 차등
상이 군경 등	국가 유공 자법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 상자, 특별공로상이자*	608~3,681	· 대상별 차등 ·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전상군경, 공상 군경 등으로 보고 보상하는 인원 포함		
		- 재일학도의용군인	1,612	
유족	국가 유공 자법	- 재해부상군경	426~2,577	· 대상별 차등 ·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 · 배우자, 부모, 자녀 간 차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	585~1,681	
		-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1,906~2,249	
		- 4·19혁명사망자 유족,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585~1,681	
	보훈 보상 대상 자법	- 재해부상군경 유족, 재해사망군경 유족	410~1,367	

출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대상 법률 및 시행령

2) 검토의견

□ 보상금 예산은 각 유형별 지급대상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할 보상금 지급액에 당해연도에 예상되는 지급인원을 추계하여 편성되는데, 당해연도 보상금 지급액은, 전년도 지급액에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증가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보상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지급인원은, 예산 편성 당시 결산 인원에 최근 n개년 지급인원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법·제도 등의 변화로 인하여 증감하게 되는 예상인원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추계함.

○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 보상금의 지급인원을, 22년 결산 인원에 3개년('20~'22)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고, 2024년부터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어 신규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4개 질병 대상자 2,093명을 가산하여 총 191,448명으로 추계하였고,³¹⁾ 이를 기준으로 3조 1,53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³²⁾

< ‘보상금’ 사업 예산 편성 기준 >

예산 편성 기준	=	각 대상 유형별 보상금 지급액	×	각 대상 유형별 예산 지급인원
2024년도 예산 편성	=	2024년도 지급액 (23년 대비 5% 인상)	×	[22년 결산 인원 × 3개년('20~'22) 평균증감률 ³¹⁾ + 전환 인원(2,093명)]

31) 2024년 법률 개정(2024. 2. 13.)으로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수당을 받는 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함.

32) 세부사업인 ‘보상금’은 보상금과 부가수당으로 구성되는데, 부가수당을 제외하고 보상금만을 계산한 금액임.

□ 그런데, 2024년 보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월평균 189,065명으로, 편성인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상금’ 사업 예산에서는 712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국가보훈부는 이 중 711억 8,300만원을 ‘보훈병원 진료’(469억원), ‘위탁병원 진료’(200억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42억 8,300만원) 사업에 각각 이용하였음.

○ 이처럼, ‘보상금’ 사업에서 대규모 집행잔액 및 이·전용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이고, ‘보상금’ 예산은 당해연도 월별 보상금 지급액과 추계한 예상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편성되는데, 월별 보상금 지급액은 사전에 정해지는 인상률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결국 예산의 과다 편성은 예상 지급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되었기 때문임.

< 보상금 편성 및 집행 실적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예 산		집 행		비 고	
	편성인원 (A)	편성금액 (B)	지급인원 (C)	지급금액 (D)	인원 차 (A-C)	금액 차 (D-B)
값	191,448	3,468,124	189,065	3,396,879	2,383	71,245

자료: 국가보훈부

□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대규모 이·전용의 반복은 적절한 재정 운용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의 지급인원 추계는 그 합리성을 제고함

으로써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에 이·전용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는 그동안 국회의 지적이 다수 있었으므로,³³⁾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인원을 추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
- 그럼에도, 동 사업의 2024년도 집행잔액 및 이·전용 규모는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하였고, 이는 동 사업의 집행잔액 중 최대 규모임.

< 최근 7개년 ‘보상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18	'19	'20	'21	'22	'23	'24
예산액(A)	2,743,789	2,813,124	2,944,364	3,059,336	3,197,518	3,325,248	3,468,124
집행액(B)	2,695,588	2,794,347	2,941,338	3,034,761	3,127,504	3,258,090	3,396,849
집행잔액(A-B)	48,201	18,777	3,026	24,575	70,014	67,158	71,275
이·전용	8,150	1,202	3,020	24,565	35,153	64,247	71,183
불용	40,051	17,575	6	10	35,311	2,911	62

자료: 국가보훈부

□ 물론, 보상금 지급대상 인원 증감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고, 지급 대상 인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사전에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2024년도 보상금 지급인원 추계는, 편성 단계에서 예방할 수

33) 2020년 국회정무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22년 국회정무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보고서 등.

있었던 오류를 제거하거나 예산 심의 단계에서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과다 추계 요인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추계 정확성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지급인원 추계에
관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보상금’ 지급인원 추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이를 고려하여 지급인원 추
계를 보다 면밀하고 주의 깊게 수행할 필요가 있겠음.

□ 첫째, 예산안 편성 당시 지급인원을 추계함에 있어, 산정방식 설명과
달리, 더 많은 인원이 추계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당초부터 지급
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될 요소가 있었음.

○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2024년도 지급인원 산정방식은 대상별 특
성(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을 구분하여 최근 3년(’20~’22) 평균증
감률 또는 5년(’18~’22) 평균증감률 중 보다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3년 증감률을 적용하여 지급인원을 추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³⁴⁾

- 보다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인원의 특성상 기존 등록인원은 고령 인구 비
중이 높고, 신규 등록 가능 인원은 등록 요건이 특정 역사적 사건
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 시점에서 다수가 되기 어려워,

34) 2024년 국가보훈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p.61.

별도의 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보상금 지급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고,

- 각 대상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각 대상 유형별 특성 및 특정 대상에 대한 제도 변화 등에 따른 증감 차이에 따라 대상 유형별로 증감 추세가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 유형에 따라 다른 증감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국가보훈부는 매년 이러한 방식으로 보상금 지급인원을 추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보상금 편성인원 및 지급인원 증감('19~'24) >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편성인원	191,888	192,363	191,866	192,964	190,606	191,448
전년대비 증감	1,008	475	△497	1,098 ¹⁾	△2,358	842
지급인원	190,885	191,518	190,226	189,894	189,186	189,065
전년대비 증감 ²⁾	357	633	△1292	△332	△708	△121
인원차 (편성-지급)	1,003	845	1,640	3,070	1,420	3,042
비 고	고엽제후유증 전환인원 가산 +838	고엽제후유증 전환인원 가산 +1832				고엽제후유증 전환인원 가산 +2073

- 1) 3개년 또는 5개년 증감률을 적용하여, 19년과 20년의 제도 변화로 인한 일시적 증가분이 추세 증가로 반영되어 추계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하여, 해당 연도 집행잔액은 2024년도 제외 최대 규모임.
- 2) 법·제도 변화로 인한 보상금 지급 대상자 자체의 증가 요인이 있는 해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지급인원이 증가한 해(19년, 20년)에도 가산된 전환인원을 제외하면 지급인원은 감소하였음.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3개년 보상금 지급 인원 추계 방식 설명 >

연도	기준값	산정방식
2022	20년 지급인원	3년(18~20년) 또는 5년(16~20년) 증감률 적용 * 보다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증감률 적용
2023	21년 지급인원	3년(19~21년) 또는 5년(17~21년) 증감률 적용 * 보다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증감률 적용
2024	22년 지급인원	3년(20~22년) 또는 5년(18~22년) 증감률 적용 * 보다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증감률 적용

출처: 각 해당연도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 및 결산 사업설명자료

- 그런데, 2024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 보상금 지급인원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3년 평균증감률과 5년 평균증감률 중 더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3년 평균증감률을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편성인원을 산출하였는데,
- 이는 각 대상 유형을 구분하여 대상 유형별로 3년 또는 5년 평균증감률 중 더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평균증감률을 대상 유형별로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는 인원에 비하여 더 많은 인원이 추계되는 방식이어서,
- 결국, 당초 설명하고 있는 방식과 달리, 각 대상 유형별로 다른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추계 자체에 과다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3년 또는 5년 평균증감률 동일 적용 시 지급인원 추계 >

(단위: 명)

구분	월 평균 지급인원 추계			비고 (실제 지급인원)
	편성인원 (3년 평균증감률 동일 적용)	추계인원 (5년 평균증감률 동일 적용)	추계인원 (산정방식 적용*)	
계	191,448	193,584	190,625	189,065
독립유공자	5	7	5	6
독립유공자 유족	6,895	7,074	6,888	6,569
상이군경 등	114,590	116,274	114,418	114,985
유족	69,958	70,229	69,314	67,505
실제 지급인원과 차이	2,383	4,519	1,560	-

* 더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평균증감률을 대상 유형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자료: 국가보훈부

- 만약, 당초 산정방식 설명과 같이 각 대상 유형별로 다른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적어도 약 165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편성인원’과 ‘산정방식 적용 인원’ 편성금액 비교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추계		비고 (금액 차이)
	편성인원 기준 (3년 평균증감률 적용)	산정방식 적용 인원 기준	
계	3,153,479,412	3,137,015,004	16,464,408
독립유공자	152,052	152,052	0
독립유공자 유족	130,189,236	129,984,660	204,576
상이군경 등	1,813,842,900	1,810,629,192	3,213,708
유족	1,209,295,224	1,196,249,100	13,046,124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2024년 보상금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함)이 개정될 경우, 신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부분이 편성되었는데, 해당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2024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시점에 이미 최소 2개월분의 보상금 지급액은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과다 편성된 부분이 존재하게 되었음.

○ 정부는 2023. 6. 29.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 중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는데,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이 증가할 것이므로,³⁵⁾ 이에 대한 예상인원 2,073명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액 12개월분을 2024년 예산에 편성하였음.

○ 그런데, 동 법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기인 2023년 11월까지 개정되지 못하였고, 위 개정안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으므로, 예산안 심사 단계시점에서 이미 적어도 2개월분의 보상금은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확정됨.³⁶⁾

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납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함.

36) 2023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 공포까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법 시행시기는 2024년 3월이 되므로, 이 경우 같은 해 1~2월분의 보상금의 집행은 불가능함.

< 고엽제법 개정 경과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

구분	23.6.29.	23.9.1.	23.11.20	23.11.24	23.11.30	23.12.21.	24.1.25.	24.2.13.	24.5.14.
법 개정 경과	개정안 제안 (정부)				상임위 의결		본회의 의결	개정법 공포	법 시행
2024 예산안 심사 일정		예산안 국회 제출	정무위 소위 의결일	예결위 최종 소위일		예산안 의결			

- 따라서, 예산안 심사 단계 시점에서 이미 집행 불가능이 확정된 부분의 보상금을 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실제 집행이 불가능했던 약 118억원 중 적어도 약 5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고엽제후유증 전환 대상인원 및 예산 편성액 >

(단위: 천원)

구분	대상인원	월 지급액	조정 가능액 (2개월분)	실제 집행 불가능액(4개월분)
계	2,073		5,890,654	11,781,308
상이 2급	8	2,955	47,280	94,560
상이 3급	128	2,762	707,072	1,414,144
상이 4급	7	2,317	32,438	64,876
상이 5급	278	1,919	1,066,964	2,133,928
상이 6급1항	370	1,751	1,295,740	2,591,480
상이 6급2항	158	1,612	509,392	1,018,784
상이 6급3항	112	1,083	242,592	485,184
상이 7급	128	608	155,648	311,296
1-5급배우자, 6급 상이사망 배우자	349	1,681	1,173,338	2,346,676
6급 비상이사망, 7급상이사망배우자	535	617	660,190	1,320,380

자료: 국가보훈부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보상금 지급인원을 추계함에 있어,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성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되지 않도록 하고,

편성 단계 이후에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안 확정 전 집행 불능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등을 통하여 집행잔액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주의를 지속적으로 기울임으로써,

집행잔액 규모를 최소화하여 연례적인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생활조정수당³⁷⁾: 지급실적과 대상자 특성을 추계에 반영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인 보훈대상자로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19억 5,800만원으로 이 중 82억 6,000만원(69.1%)이 집행되고, 36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생활조정수당’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생활조정수당	89,526	89,526	-	-	89,526	82,171	-	7,355	84,574
생계지원금	11,958	11,958	-	-	11,958	8,260	-	3,698	4,242

자료: 국가보훈부

□ ‘생계지원금’은 2022년 시작된 사업으로, 지급 대상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37) 세부사업: 생활조정수당(1133-302)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중 80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임.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

구분	대상	요건		
		연령	생활수준	상이 정도 요부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0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경도장애 이상 (고도, 중등도, 경도)
참전 유공자법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장해등급(1~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만 해당
특수임무 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상이등급(1~7급) ※특수임무부상자만 해당

□ 한편, 생계지원금은 지급 요건으로 ‘수급권자에게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부터 위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고, 2025년 법 개정을 통하여 폐지하였음.

< ‘부양의무자 기준’ 요건 완화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내용	중상이자 기준 미적용	65세 이상 노인 기준 미적용	기준 전면 폐지

2) 검토의견

□ ‘생계지원금’ 사업의 2024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6,863명, 지급금액은 82억 6,0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약 69%를 집행하였고, 36억 9,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2022년 시작된 사업으로, 해마다 지급 예상인원을 과다하게 추계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2024년도에는 2022년과 2023년도 편성인원의 과다 추계 요인을 조정하지 않고, 2024년도 편성인원에 기존 과다 추계 요인을 그대로 반영하여 편성인원을 추계하였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생계지원금’ 집행 실적(’22~’24) >

(단위: 백만원, 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편성인원	지급인원	인원차 (편성-지급)
2022년	6,874	3,851	3,023	5,728	3,490	2,238
2023년	8,124	4,204	3,920	6,770	3,505	3,265
2024년	11,958	8,260	3,698	9,965	6,863	3,102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도 생계지원금 지급 예상인원 추계를 살펴보면, 국가보훈부는 2023년도 편성인원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인원(3,195명)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결국 ‘2022년도 편성인원’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중상이자, 65세 이상 노인)로 인한 인원을 추

가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음.

< ‘생계지원금’ 편성인원 추계(’22~’24) >

구분	추계 방식				편성인원
2022년도	사업 시작연도				5,728명
2023년도	2022년도 편성인원		+	제도 변화 (중상이자 기준 미적용)	6,770명 (5,728명+1,042명)
2024년도	2023년도 편성인원		+	제도 변화 (65세 이상 기준 미적용)	9,965명 (6,770명+3,195명)
	2022년도 편성인원	+	제도 변화 (중상이자 기준 미적용)	+	제도 변화 (65세 이상 기준 미적용)

□ 첫째, 2022년도 편성인원은 사업 시작연도이기 때문에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2024년도 편성인원을 추계할 당시에는 이미 2022년도 결산인원이 있었던 만큼, 2022년도 편성인원이 과다 추계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2022년도 편성인원 값을 2024년도 편성에 그대로 사용하였음.

○ 2024년 추계 당시는 2022년 실제 지급인원이 3,490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시점이었으므로, 2022년 편성인원(5,728명)이 아닌 2022년 지급인원(3,490명)을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2022년 편성인원과 지급인원의 차이인 2,238명은 2024년 추계에 반영하지 않았어야 하였음.

□ 둘째, 2023년도 편성인원은 중상이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이에 따른 예상 증가 인원 1,042명을 가산한 것인데, 이는 제도의 대상자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2023년도 지급인원이 2022년 대비 15명 증가하는데 그쳤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해당 인원을 그대로 2024년 편성인원에도 반영하였음.³⁸⁾

○ 위 제도 변화로 인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요건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대상은 중상이자인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이어야 함.³⁹⁾

○ 국가보훈부는, 수급권자가 중상이자에 해당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인원을 1,042명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를 추계함에 있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보다 중상이자 비중이 훨씬 높은 생활조정수당 전체

38) 실제로, 2023년도 지급인원은 2022년도 대비 15명 증가하였고, 이는 해당 제도 변화가 동 사업의 지급 대상인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반증함.

39) 舊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국가보훈처고시 제2022-14호) 제3조(부양능력 등) ③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순위자(수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조의3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급인원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을 적용하였음.⁴⁰⁾

- 그런데, 앞선 사업 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계지원금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대다수가 비상이 보훈대상자이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않는 보훈대상자들과고, 중상이자에 해당될 수 있는 수준의 상이등급(3급 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전상군경 · 공상군경 등으로 중복등록되어 생계지원금보다 지급액이 큰 생활조정수당 등의 보상대상자가 되므로, 실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자에는 중상이자에 해당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적용받을 인원이 극소수라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음.
- 즉, 2023년도 중상이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요건 미적용이라는 제도 변화는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엔 변동은 주지 어렵다는 생계지원금 대상 인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던 요소임에도, 2023년 편성인원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인원 추계에도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하였음.

40)

< 중상이자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에 따른 지급인원 추계 >

부양의무자 폐지 시 신규 지급 인원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인원(9,965명)
- '22년 예산인원(5,728명) = 4,237명

중상이지 요건 완화 시 지급 인원 = 부양의무자 폐지 시 신규 지급 인원(4,237명) × 생활조정수당 지급 인원 중 중증장애인 비율(24.6%) = 1,042명

□ 2024년도 생계지원금 편성인원 과다 추계의 원인은, 불가피한 사정변
경이나 예측하기 어려웠던 요소가 아닌, 추계 당시 부주의하였던 측면
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편성인원 추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등록관리⁴¹⁾: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예산편성에 정확히 반영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내역사업인 ‘신체검사’는 전·공상군경 등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사람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상이(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7억 4,100만원으로 이 중 17억 4,000만원(99.9%)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증서관리’는 보훈대상자에게 대통령명의 증서 및 IC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28억 7,600만원으로 이 중 27억 2,400만원(94.7%)이 집행되고, 1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등록관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등록관리	6,732	6,732	-	△11	6,721	6,309	-	412	3,336
신체검사	1,697	1,697	-	44	1,741	1,740	-	1	1,697
증서관리	2,920	2,920		△44	2,876	2,724		152	1,145

자료: 국가보훈부

41) 세부사업: 등록관리(1143-328)

2) 검토의견

(1) 법 개정애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예산편성에 정확히 반영할 필요

□ 내역사업인 ‘신체검사’의 내내역사업인 ‘신체검사 우편요금’은 종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이었던 4개 질병⁴²⁾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애 따라, 종전 4개 질병애 해당하였던 대상자들에게 신체검사 신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사업임.

□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 시 안내문 발송이 필요한 신체검사 수검 예상인원을 47,189명으로 계산하여 우편 요금 1억 1,8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음.⁴³⁾

< 예산 편성 당시 신체검사 수검 예상인원 >

(단위 : 명)

전환질병		추출질병		
연번	질병명	연번	질병명	예상인원
1	다발성경화증	①	다발성경화증	34
2	갑상샘기능저하증	②	갑상선기능저하증	1,420
		③	갑상샘기능저하증	20
3	방광암	④	방광암	2,149
		⑤	악성종양	35,329
4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⑥	중추신경장애*	7,932
		⑦	중추신경병변	305
		⑧	파킨슨 등	
계				47,189

자료: 국가보훈부

42)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중추신경장애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악성종양 중 방광암

43) 우편요금 : 47,189명 × 2,500원(등기우편요금) × 1회 = 118백만원

□ 그런데, 동 내내역사업의 2024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 1억 1,800만원 중 2,600만원(22%)만이 집행되었고, 편성금액 중 대부분인 9,100만원(77%)은 동일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되었음.

< ‘신체검사 우편요금’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이·전용등 내역)
신체검사 우편요금	118	△91	27	26	1	· 동일 내역사업 일반수용비 세목조정(91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이유는 실제 안내문 발송 대상 인원이 편성 인원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예산편성 시에는 대상 질병과 관련된 질병에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인 '23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 질병 대상자를 선별하고, 안내문 발송 대상 범위를 최소화한 결과 대상 인원이 10,527명으로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임.

< 유형별 안내문 발송 인원 >

(단위 : 명)

전환질병		추출질병		
연 번	질 병 명	연 번	질 병 명	발 송 인 원
1	다발성경화증	①	다발성경화증	25
2	갑상샘기능저하증	②	갑상선기능저하증	540
		③	갑상샘기능저하증	947
3	방광암	④	방광암	2,671
		⑤	악성종양	-
4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⑥	중추신경장애*	6,247
		⑦	중추신경병변	13
		⑧	파킨슨 등	84
계				10,527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이러한 안내문 발송 예상인원 추계는 예산편성 당시에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인원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동 사업의 전제가 되는 법률 개정안은 정부 제출안으로, 법안 제출 당시에 이미 비용추계를 하였으므로, 안내문 발송 예상인원도 당시에 함께 검토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이후에 대상 인원을 재산정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임.

□ 한편,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법 개정에 따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전환하여야 할 인원 에 대한 고엽제검진 및 신체검사 의사 수당을 추가 재정요인으로 추계하고 있는데도,

신체검사 의사 수당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고,⁴⁴⁾ 안내문 발송 우편 요금은 과다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편성부터 비용추계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⁴⁵⁾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편성 기준이 되는 예상인원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 에 따라 비용추계서에 포함된 추가 재정 소요가 예산편성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4) ‘신체검사 의사 수당’ 예산액 : (23) 336백만원, (24) 336백만원

45)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당초 고엽제후유증 전환에 따른 의사수당, 정밀검사수수료, 우편료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우편료만 반영되었다는 의견임.

(2) 이행가능성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내역사업인 ‘증서관리’의 내내역사업인 ‘IC국가보훈등록증 제작’ 등은 신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및 기존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등을 하는 사업임.

○ 국가보훈등록증은 당사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아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국가보훈신분증으로, 기존 보훈대상자별로 발급하고 있던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⁴⁶⁾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병행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거래·인감신고 등에 있어 신원을 증명하는 공인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편의 기능을 개선한 것임.

< 국가보훈등록증 개요 >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도입과 함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

46) 독립유공자증·유족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지원대상자, 국내고엽제, 고엽제2세) 5·18민주유공자증·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유족증, 제대군인증(장기·중기)

개년에 걸쳐 기존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 발급자 약 66만 명의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을 계획하였음.

<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계획 >

구분	발급시기		대상	계획
시범발급		6.~7.	신규등록자	2,000명
정식발급	2023년	8.~9.	1935년 이전 출생자	7,000명
		10.~12.	1936년~1945년생	110,000명
	2024년	1.~3.	1946년~1949년생	127,000명
		4.~6.	1950년~1955년생	124,000명
		7.~9.	1956년~1965년생	114,000명
		10.~12.	1966년 이후 출생자	118,000명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따라, 2023년도와 2024년도 ‘증서관리’ 내역사업의 예산에는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을 위한 제작 매수 및 인건비 소요가 반영되었음.

< 내역사업 중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을 위한 추가 예산 소요 >

(단위: 백만원)

구분	'23	'24	'25	비 고
국가보훈등록증 제작	1,500	2,092	352	· 교체발급 제작 매수 반영 · 23년 30만매, 24년 36만매 / 25년 6만매
교체발급인력 인건비 (일용임금, 4대 보험료 등)	728	1,311	-	· 34명, 23년 7개월, 24년 12개월분 임금 반영 / 25년 미반영
합 계	2,337	4,087	352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4년 교체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해당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총 발급실적은 계획매수 대비 42% 수준인 15만 1,747매이고, 전체 사업 기간인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계획 대비 약 33%(218,402매)의 발급률을 보이는 등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기간별 교체 발급 계획을 기준으로 보아도, 전 기간에서 계획 달성률은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실적 >

(단위: 매, %)

구분	2023년 (6월 발급 시작)	2024년	계
계획 매수	300,000	360,000	660,000
발급 매수*	66,655	151,747	218,402
발급률	22.22	42.15	33.09

* 신규 발급을 포함한 해당연도 전체 발급 매수를 의미함.

자료: 국가보훈부

< 교체발급 계획 대비 실적 및 계획 달성률 >

(단위: 명, %)

구분	발급시기	대상	계획(A)	실적(B)	달성률 (B/A)
시범발급	'23. 6.~7.	신규등록자 등	2,000	8,280	37.2
정식발급	'23. 8.~9.	1935년 이전 출생자	70,000	18,489	
	'23. 10.~12.	1936년~1945년생	110,000	39,886	36.3
	'24. 1.~3.	1946년~1949년생	127,000	46,621	36.7
	'24. 4.~6.	1950년~1955년생	124,000	35,280	28.5
	'24. 7.~9.	1956년~1965년생	114,000	27,750	24.3
	'24. 10.~12.	1966년 이후 출생자	118,000	-*	-

* 국가보훈부는 2024년 10월 이후에는 연령별 교체 발급을 해제하였다는 입장임.

자료: 국가보훈부

□ 이처럼 계획 대비 발급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당초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집행 단계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과도한 목표를 기준으로 한 사업계획은 결국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업 간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매수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발급보조인력 34명에 대한 총 19개월분의 임금을 지출하였고, 실제 발급 매수보다 약 20만매를 추가 구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집행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예정된 계획에 맞추어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단계에서는 계획된 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음.

4. 고엽제환자검진⁴⁷⁾: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검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고엽제환자검진’은 고엽제피해 질병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2세 환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진을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그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26억 6,700만원으로 이 중 19억 7,800만원(74.2%)이 집행되고, 6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고엽제환자검진	2,667	2,667	-	-	2,667	1,978	-	689	2,667

자료: 국가보훈부

47) 세부사업: 고엽제환자검진(1143-368)

2) 검토의견

- ‘고엽제환자검진’의 2024년 집행률은 74.2%로,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보훈병원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부진하였던 2021년, 2022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연도별 결산 내역('21~'24)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C/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	2,993	-	-	2,993	2,389	79.8	-	604
2022	2,993	-	-	2,993	2,297	76.7	-	696
2023	2,667	-	200	2,867	2,867	100	-	-
2024	2,667	-	-	2,667	1,978	74.2	-	689

자료: 국가보훈부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고엽제 환자 검진인원은 예년에 비하여 증가한데 반하여 검진비와 검진단가는 감소하였는 바, 이는 일부 검진과목의 정밀검사 및 입원 검진 등 고가의 검사 시행이 부진하였기 때문임.

< 검진인원 및 검진비 변동 현황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검진인원 (실인원, 명)	11,548	13,910	13,318	9,628	10,065	9,977	11,623	13,844
검진인원 (연인원, 명)	30,522	30,792	32,973	22,865	24,101	22,413	28,004	29,437
검진비 (백만원)	3,872	3,130	3,044	2,251	2,386	2,294	2,864	1,975
검진단가 (원)	126,859	101,650	92,318	98,447	99,000	102,351	102,271	67,092

자료: 국가보훈부

< 주요 검진 항목별 '23년 및 '24년 검진 시행 건수 >

(단위: 건, %)

주요 질병	주요 검진 항목	2023년 (A)	2024년 (B)	감소율 (A-B/A)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초음파-심장-(단순)경흉부심초음파	99	39	60.6
파킨슨병	MRI Brain 촬영료[테슬라3.0이상+품질관리적합]	185	171	7.6
	MRI Brain 판독료	195	192	1.5
	PACS영상저장및전송비용/MRI	209	197	5.7
	뇌 PET CT	654	370	43.4
	PACS영상저장및전송비용/PET	598	359	40.0
	해동에프디지주사액(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18F)	98	59	39.8
	듀캠바이오에프디지-20(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18F)	68	23	66.2
	피디뷰주사(FP-CIT 18F)	139	61	56.1
뇌경색증	진단초음파-혈관-뇌혈류	546	283	48.2
	DIGITAL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310	128	58.7
중추 신경장애	진단초음파-혈관-(경동맥)두개외 혈관 도플러	152	91	40.1
	CDR치매척도검사	306	175	42.8
	MMSE간이정신진단검사	338	210	37.9
당뇨병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1,982	1,739	12.3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반정량]	411	349	15.1
말초 신경병	신경전도검사/감각·운동(상·하지,편측)	2,726	1,437	47.3
	신경전도검사/감각·운동(상·하지,양측)	612	220	64.1
	F파신경전도검사(상·하지 편측)	746	573	23.2
	F파신경전도검사(상·하지 양측)	283	44	84.5
	(RM)신경전도검사(하지)감각신경	546	186	65.9
간질환	ALT (SGPT) [화학반응-장비측정]	189	151	20.1
	AST (SGOT) [화학반응-장비측정]	189	151	20.1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	121	102	15.7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	121	100	17.4
지루성 피부염	칩포시험(1종목당)	536	229	57.3
다발성 신경마비	신경전도검사/감각·운동(상·하지,편측)	704	342	51.4
	신경전도검사/감각·운동(상·하지,양측)	218	28	87.2
	F파신경전도검사(상·하지 편측)	271	121	55.4
	F파신경전도검사(상·하지 양측)	104	12	88.5
	(RM)신경전도검사(하지)감각신경	40	16	60.0
	(RM)근전도검사(상·하지)	56	23	58.9
	MRI 경추 촬영료 [테슬라3.0이상+품질관리적합]	16	16	0.0
	MRI 경추 판독료 [테슬라3.0이상+품질관리적합]	16	16	0.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처럼, 고엽제피해 질병 등록신청자에 대한 검진이 저조하게 된 것은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하여 보훈병원의 전공의 인원이 부족하게 되었

고, 이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검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임.

< 보훈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

(단위: 명)

구분	정원	24년		
		인원(6월)	인원(9월)	인원(12월)
서울중앙보훈병원	110	9	9	9
부산보훈병원	26	6	5	5
대전보훈병원	12	-	-	-
대구보훈병원	12	1	1	1
광주보훈병원	23	3	2	2

*자연인 기준, 치과병원 소속 제외

자료: 국가보훈부

< 일부 질병 검진 신청 현황 및 검진 실적 >

(단위: 명)

구분	질병명	신청	검진
고엽제 후유증	말초신경병	539	193
	폐암	861	661
	전립선암	1,344	857
	당뇨병	1,671	1,121
	허혈성심장질환	1,493	1,092
	갑상샘기능저하증	139	88
	다발성경화증	11	3
	방광암	3,068	2,750
	비전형과킨슨증 (진행성 핵상마비, 다계통 위축증)	206	147
고엽제 후유증의증	지루성피부염	298	109
	중추신경장애	612	178
	뇌경색증	918	288
	다발성신경마비	55	9
	악성종양	1,367	979
	간질환	102	67
	고혈압	1,619	1,064

* 여러 질병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등 신체검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타 검사과목과 검사일자를 맞추기 위해 대기 중인 경우 발생

자료: 국가보훈부

- 이로 인하여, 2024년 단일 질환⁴⁸⁾ 기준 고엽제검진 소요기간은 평균 48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단일 질환 기준 고엽제검진 소요기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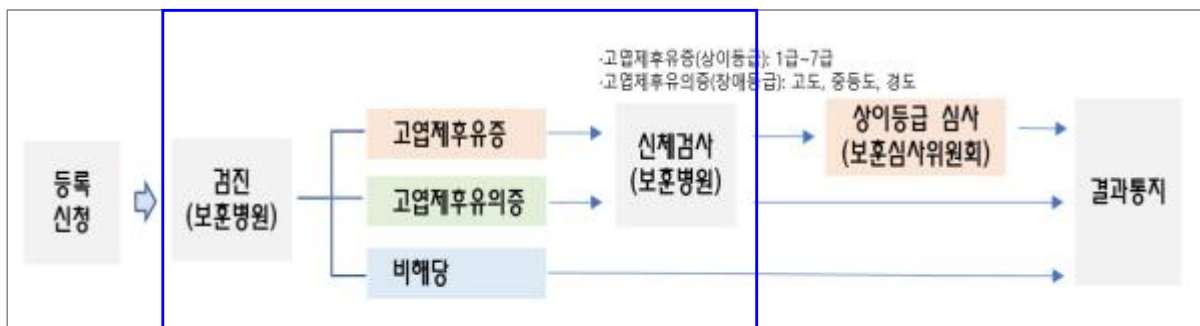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검진 소요기간*	39.8일	39.3일	39.0일	39.8일	54.2일	42.3일	43.6일	43.1일	48일
					(코로나로 인한 검진 축소)				

*검진 소요기간: 검진신청일부터 검진일까지의 기간

자료: 국가보훈부

- 고엽제 환자 검진은 고엽제피해 질병 등록신청자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이므로, 해당 절차가 지연될 경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 및 이에 따른 보상 및 지원 절차도 함께 지연된다는 측면에서, 검진 실적이 부진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절차 >



* 음영: 고엽제 질병 등록 절차 중 '고엽제 환자검진' 사업으로 수행되는 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48) 단일질환 기준이란 하나의 질병을 기준으로 신청일부터 검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또한,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는, 2024년에 검진을 신청한 후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의 검진을 2025년으로 순연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025년 검진 신청인원에게까지 연쇄적인 검진 지연을 유발하게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검진 지연의 원인이 된 보훈병원 전공의 부족은 여전히(2025년 6월 기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병원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고엽제 등록 신청자의 검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5년 6월말 기준 보훈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비고
서울중앙보훈병원	110	17	△93
부산보훈병원	26	5	△21
대전보훈병원	12	0	△12
대구보훈병원	12	0	△12
광주보훈병원	23	4	△19

*치과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국가보훈부

5.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⁴⁹⁾: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액된 보조사업의 증액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은 보훈단체의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59억 3,100만원으로 이 중 59억 1,400만원(99.8%)이 집행되고,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훈단체운영및 선양활동등	35,120	35,120	-	-	35,120	35,071	-	49	34,281
보훈단체 선양활동등	5,931	5,931	-	-	5,931	5,914	-	17	5,031

자료: 국가보훈부

49) 세부사업: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

2) 검토의견

□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은 각 보훈단체의 선양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 확정 당시에는 ‘6·18자유상이자회’를 포함한 총 15개의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

□ 동 사업의 실제 집행 단계에서 ‘6·18자유상이자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취소하고, 대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라고 함)의 “참전용사 위로 및 격려” 선양사업에 3,600만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2024년도 보훈단체 선양사업비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단체	편성	단체	편성
광복회	648	6·18자유상이자회	36(취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214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377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78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197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22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414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1,352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7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95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6
4·19혁명희생자유족회	8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6
4·19혁명공로자회	3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36(추가편성)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참전용사 위로 및 격려” 사업은 2010년부터 보훈기금에서 지원하여 온 보조사업으로, 2024년 “참전용사 위로 및 격려” 사업을 포함한 6·25참전유공자회의 선양행사비가 감액되었으나, 고령의 참전유공자 위로·격려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변경하여 지원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⁵⁰⁾

< 6·25참전유공자회 ‘참전기념사업 지원’ 개요 >

- 개요 : 세부사업 ‘참전유공자지원’(4163-439) 내 내역사업인 ‘공법단체 주관 참전기념사업’의 내내역사업
- 보조금 규모 : 1억 1,000만원(전년대비 4,800만원 감액)
- 세부 내용 : 안보결의대회 및 정기총회(44백만원), 참전유공자위로격려행사(44백만원), 안보현장 방문행사(6백만원), 철의삼각지전투 기념행사(16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6·25참전유공자회 보훈기금 지원 선양행사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선양행사비	177	166	166	158	110
- 위로·격려행사	90	58	44	40	36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공법단체 주관 참전기념사업’은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24년 내역사업을 일정수준 감축’ 할 것을 판정받아, 2024년

50)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6·18자유상이사회’는 2024년부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위해 해당 단체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보조사업자를 변경하였다는 입장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감액한 것으로, 동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참전유공자 위로·격려 행사” 사업이 포함된 “6·25참전유공자회 참전기념사업 지원”도 같은 사유로 감액된 것임.

□ 그럼에도, 국가보훈부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 ‘보훈단체선양활동등’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3,600만원을 6·25참전유공자회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일정수준 감축 판정을 받은 보조사업을 편성 시 감액한 이후 다시 증액하였음.

□ 이는, 보조사업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⁵¹⁾의 규정 취지와 당초 감축 판정을 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향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감축된 보조사업을 예산 확정 이후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교통시설이용지원⁵²⁾: 시내버스 이용지원 미지급금 누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교통시설이용지원’은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시설의 운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3억 2,900만원 중 107억 3,000만원(94.7%)이 집행되고 5억 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교통시설이용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교통시설이용지원	11,329	11,329	-	-	11,329	10,730	533	66	10,729
버스무임 및 이용지원	9,084	9,084	-	△ 20	9,064	8,465	533	66	8,484
철도무임 및 이용지원	2,163	2,163	-	-	2,163	2,163	-	-	2,163
여객선무임 및 이용지원	82	82	-	20	102	102	-	-	82

자료: 국가보훈부

52) 세부사업: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2) 검토의견

(1) 시내버스 이용지원 미지급금 누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⁵³⁾ 등의 법률 및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에 근거하여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것임.

< 교통시설 이용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국가보훈부 훈령 별표) >

수송시설의 종류	이용지원 대상	지원내용
철 도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연간 6회 무임 7회 이후 50% 할인 * 애국지사 및 1~2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 하 철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무임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 1인 포함
고속버스	애국지사, 상이1~5급, 1~7급 5·18부상자	50%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상이6~7급, 8~14급 5·18부상자	30%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5·18부상자	무임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시외버스	애국지사, 상이1~5급, 1~7급 5·18부상자	70%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 1인 포함

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송시설의 종류	이용지원 대상	지원내용
	상이 6~7급, 8~14급 5·18부상자	30%
내 여 객 선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부상자 (장해1~7등급)	무임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상이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부상자 (장해 8~14등급)	50%
국 내 선 항 공 기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50%
	기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0%

자료: 국가보훈부

□ 이 중 ‘버스무임 및 이용지원’ 내역사업은 교통시설이용지원 대상자의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이용 운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은 ‘시내버스 이용 지원’에 71억 8,000만원, ‘시외·고속버스 이용 지원’에 12억 8,400만원,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에 100만원(5억 3,300만원 이월)이 집행되었음.

< 2024년 ‘버스무임 및 이용지원’ 내역사업 세부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시내버스 이용 지원	7,200	7,180	‘여객선무임 및 이용지원’ 내역사업으로 2,000만원 내역변경
시외·고속버스 이용 지원	1,284	1,284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	600	1	5억 3,300만원 이월, 6,600만원 불용
합 계	9,084	8,465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 시내버스 이용 지원’의 상세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보전 금액이 계속 누적되면서 다음연도 예산 집행 및 사업 수행에 지장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2022년에 64억 2,800만원이 투입된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3년부터는 교통복지카드 이용금액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시내버스 이용실적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준 ‘교통복지카드 사업 수행자⁵⁴⁾’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대납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지급 대상액 171억 500만원 중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금액은 71억 8,000만원에 불과하고 99억 2,500만원은 다음 연도 이후로 지급이 미루어짐.

○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지급이 미루어진 미지급 이월액 99억 2,500만원은 전년도에 이월금액 40억 1,7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며, 2025년 시내버스 이용 지원 예산 72억원보다도 큰 금액으로, 2025년에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원액을 전혀 보전할 수 없는 상황임.

54) 2024년 기준 사업 수행자는 신한카드(주)임.

< 2024년 시내버스 이용 지원 지급대상액 및 지급액 >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지급대상액	17,105	· 2023년 미지급 이월액 4,017 · 2024년 발생 지급대상액 13,088
지급액	7,180	· 2023년 미지급 이월액 집행 4,017 · 2024년 발생 지급대상액 집행 3,163
미지급액	9,925	· 2025년 3월 일부 집행 5,537

주) 2023.1.1.부터 전국호환교통복지카드 사업 시행으로 시내버스 이용요금 실제 대납액 산출 가능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전년도 사용분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⁵⁵⁾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으로,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및 명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추후 대규모 재정이 한꺼번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또한,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과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교통권 보장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임에도, ‘교통복지카드 사업수행자’의 대납액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여 미지급액이 누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고 있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55)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사업수행자 측에서 미지급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청하였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미지급금 누적으로 인한 협약 해약 가능성과 이로 인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교통시설이용지원’ 이용지원 세부사업의 시내버스 이용지원금 미지급액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는 한편, 사업수행자에게 경영상 부담을 지우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연말 계약체결로 인한 일반연구비 이월 집행 지양 필요

- 내역사업 ‘버스무임 및 이용지원’의 내내역사업인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하여 시외·고속버스 할인 발권 시스템과 광역철도의 복지카드 무임 인식 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 일반연구비 예산현액 6억 중 100만원(0.2%)이 집행되고, 5억 3,3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6,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	600	-	600	1	533	66

자료: 국가보훈부

- 동 내내역사업은 총 4건의 용역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모든 계약이 연말 또는 다음 해에 이루어진 결과, 예산현액의 88.8%가 이월되었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월한 사유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또는 운송업체와의 협의 지연 및 계약 체결 지연 등 관련 행정절차의 지연이 주된 사유로 확인됨.

<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 사업 이월 사유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계약 기간
동해선 교통복지카드 무임인식 전산 개선	150	67	복지부와 공동으로 개발 협의를하여 12월 계약체결	24.12.2. ~ 25.2.28.
무인발매기 및 현장발권 전산 연계사업(시외버스)	150	150	운송업체 협의, 무응찰로 인한 재공고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12월 계약 체결 *입찰공고: '24.10.11.	24.12.26. ~ 25.3.21.
무인발매기 및 현장발권 전산 연계사업(시외·고속버스)	300	300	운송업체 협의, 무응찰로 인한 재공고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25.1월 계약 체결 *입찰공고: '24.10.25.	25.1.3. ~ 25.4.2.
교통복지카드 발급절차 개선 ⁵⁶⁾ 전산 개발	-	17	동해선 무임인식 전산 개발 예산 잔액 활용으로 12월 계약 체결	24.12.27. ~ 25.3.27.
합 계	600	533		

자료: 국가보훈부

□ 운송업체와의 협의⁵⁷⁾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상할 수 있었던 절차이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무응찰로 인한 재공고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하지만 입찰공고 자체가 늦어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상이유공자의 교통 이용 편의가 적시에 개선되지 못하였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음.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사업 추진 일정 수립 시 주요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연말에 발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6) 2023년부터 시행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가 후불교통카드로 발급되어 신용불량 상이유공자 이용이 불가한 점 등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

57) 국가보훈부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계약금 지급 방식에서 사후 정산방식으로 변경되어 운송사 간 정산금 분배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었다는 답변임.

7. 보철구 지급⁵⁸⁾: 보철용 차량개조지원 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철구 지급’은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를 지급하거나,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보조장치 장착 등 보철용 차량을 개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0억 2,600만원 중 59억 1,900만원(98.2%)이 집행되고, 1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보철구 지급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보철구 지급	6,026	6,026	-	-	6,026	5,919	-	107	6,026
보철구 지급 및 수리	5,845	5,845	-	-	5,845	5,845	-	-	5,845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175	175	-	-	175	68	-	107	175
보철구담당자 교육	6	6	-	-	6	6	-	-	6

자료: 국가보훈부

58) 세부사업: 보철구 지급(2150-371)

2) 검토의견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은 신체 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보조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량을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편성·집행중임.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개요 >

구분	내용
사업목적	·신체 장애가 있어 활동 제약이 따르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보조공학기기 장착, 적재공간 확대 등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 ·독립적으로 차량 운전(탑승)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상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1~5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상대적으로 활동제약이 큰 <u>상이(장애)등급 1~5급</u>으로 대상 한정
내용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신체 조건에 맞게 개조 시 <u>1,500만원 한도 내에서</u> 실비 지원
지원장비	·핸들봉, 세컨더리 컨트롤, 조작력 저감장치, 크레인, 이동(회전)시트, 리프트, 경사로 등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이 시작된 2023년에 집행률이 24.8%에 그친데 이어 2024년에도 예산액 1억 7,500만원 중 6,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8.9%에 불과하였음.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3	250	62	24.8
2024	175	68	38.9
2025(6월 말)	175	15	8.6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이와 같은 집행실적 부진에 대해 2023년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인지도 부족, 사업 수요의 비정기성 등의 이유로 신청이 저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집행실적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편성기준과 상세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원을 실시한 대상자 수는 편성기준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행부진의 원인이 낮은 사업 인지도보다는 단가예측 미흡에 있는 것으로 보임.

○ 2023년에는 1인당 1,500만원씩 17명을 기준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1명에게 지원을 했음에도 집행액이 6,200만원(1인당 평균 295만원)에 불과하였음.

○ 2024년에는 1인당 1,500만원씩 12명을 기준으로 1억 7,500만원을 편

성하였고 지원 대상자는 27명에 이르렀으나 집행액은 6,800만원(1인당 평균 250만원)에 그쳤으며, 2025년에는 6월말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편성 기준인 12명을 넘어선 15명이나 1인당 평균 지원액은 98만원에 불과함.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편성기준 및 집행내역 >

연도	예산 편성기준	실제 집행내역
2023	17명×1,500만원	21명(1인당 평균 295만원)
2024	12명×1,500만원	27명(1인당 평균 250만원)
2025(6월말)	12명×1,500만원	15명(1인당 평균 98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1인당 지원 한도액인 1,50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원 금액은 해당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단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부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⁵⁹⁾에 따라 인당 지원 한도 금액인 1,5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단가를 책정하였다는 설명임.

59)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0조(개조비용 지급) ① (생략)

② 개조비용은 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지원대상자 63명 중 61.9%인 39명은 핸드 컨트롤러, 14.3%인 9명은 좌측 엑셀 페달을 장착하였고, 그 평균 단가는 각각 121만원, 69만원에 불과하므로 편성 단가를 과다 계상한 측면이 있음.

< 보철용 차량 개조 주요 장비 >

구 분	내 용
핸드 컨트롤러	·지체장애 중 하지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손으로 차량의 엑셀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보조장치
휠체어 슬로프	·휠체어를 탑승한 상태로 별도의 보조장비 없이 저장화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보조공학기기
좌측 엑셀 페달	·지체장애 중 우하지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왼발로 엑셀페달을 작동할 수 있도록하는 개조용품
오토박스	·접이식 수동/전동 휠체어를 차량 루프에 설치된 박스에 수납하도록 하는 휠체어 적재용 보조공학기기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개조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편성단가의 적정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제대군인 의료지원⁶⁰⁾: 연례적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전·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상이처에 대해 진료비 지원 및 보철구 지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23억 6,500만원이 전액 집행됨.

< 2024년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제대군인 의료지원	2,365	2,365	-	-	2,365	2,365	-	-	2,365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보훈병원은 1992년부터, 위탁병원은 1998년부터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제대군인에게 상이처 진료에 한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등급기준 미달 제대군인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상이처 보완과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보철구를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

60) 제대군인 의료지원(2150-450)

세부사업은 이러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편성·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23억 6,5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이·전용을 통한 충당이 이루어졌음.

<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20	2,365	2,365	910	3,275	3,275	138.5	100.0
2021	2,365	2,365	1,284	3,649	3,649	154.3	100.0
2022	2,365	2,365	1,408	3,773	3,773	159.5	100.0
2023	2,365	2,365	2,284	4,649	4,649	196.6	100.0
2024	2,365	2,365	-	2,365	2,365	100.0	100.0

자료: 국가보훈부

- 2023년의 경우 집행액은 46억 4,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96.6%에 이르는데, 이는 제대군인들의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지원 예산의 집행 대상 및 평균 단가가 당초 편성 기준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임.

< 2023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상세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결산	
	금액	내용	금액	내용
보훈병원 진료	1,115	7,368명×151,263원	1,199	7,307명×164,142원
위탁병원 진료	1,186	25,545명×46,445원	3,386	32,965명×102,715원
보철구 지급	64	-	64	-
합계	2,365		4,649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4년에는 이·전용 등을 통한 재원 충당 없이 당초 예산액인 23억 6,500만원만 집행하였는데, 이는 진료비 등 지원금액 발생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 지원금액은 예산액의 2배가 넘는 51억 5,200만원이었으나 국가보훈부가 별도 예산 조치 없이 예산금액만큼만 집행하였기 때문임.

< 2024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상세 결산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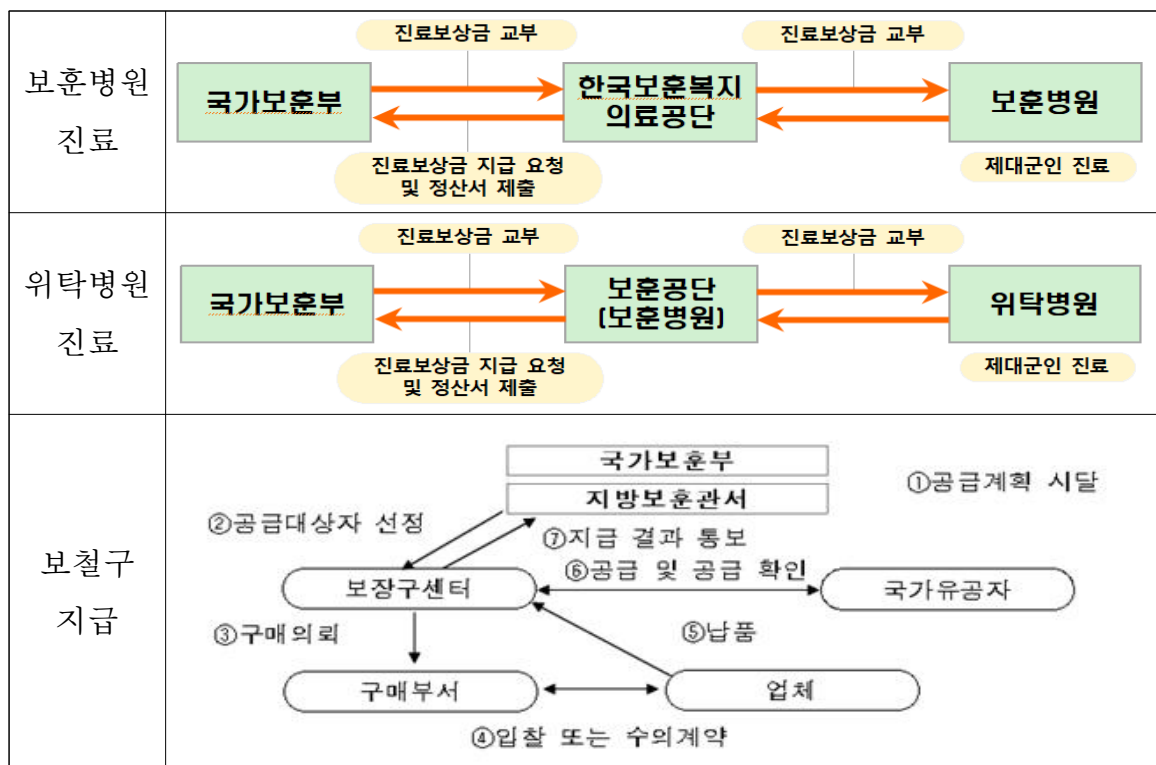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결산		실제 지원	
	금액	내용	금액	내용	금액	내용
보훈병원 진료	1,001	6,703명 × 149,310원	1,001	5,441명 × 183,974원	1,215	7,001명 × 173,564원
위탁병원 진료	1,300	17,520명 × 74,208원	1,300	13,526명 × 96,111원	3,873	38,297명 × 101,124원
보철구 지급	64	-	64	-	64	-
합계	2,365		2,365		5,152	

자료: 국가보훈부

- 이 사업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제대군인에 대한 진료를 하면 해당 진료비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급하고, 동 공단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진료보상금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국가보훈부는 2024년 실제 진료비 발생액 51억 5,200만원 중 23억 6,500만원(45.9%)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한 상황임.

<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수행체계 >



- 국가보훈부는 이와 같이 실제 발생 진료비의 일부만 지급한 것에 대해 재원 부족으로 이·전용을 실시하지 않고 예산액 내에서 집행하였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미지급액 27억 8,700만원은 다음다음연도인 2026년 예산으로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연내 발생한 집행 수요를 다음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⁶¹⁾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지출 소요의 정산 여부 및 시점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둘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영업손실 누적이 우려되는 상황⁶²⁾에서 공단에 재정적 부담이 전가될 경우, 상이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및 복지시설 운영 등 공단이 수행하는 다른 사업들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셋째, 법정 의무지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전·공상 제대군인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지원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6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6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4년 기준 472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859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수지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영 업 손 익	의 료 사 업	△ 13,188	15,078	△ 85,343	△ 50,906	△ 62,242
	복 지 사 업	△ 6,319	△ 6,676	△ 9,793	△ 4,230	△ 3,953
	교 육 사 업	△ 2,299	△ 2,270	△ 2,311	△ 582	△ 412
	본 사	△ 20,160	△ 19,848	△ 20,227	△ 20,666	△ 19,261
소 계		△ 41,966	△ 13,716	△ 117,674	△ 76,384	△ 85,868
영업외손익 등		13,649	2,726	75,701	25,506	38,696
당기순이익		△ 28,317	△ 10,990	△ 41,973	△ 50,878	△ 47,172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2018년 이래 매년 과소계상으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전용 등의 예산조정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국회 결산심사에서 지적받아 왔는데, 2024년에는 이와 같은 예산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의 의료지원 책임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음.

□ 국가보훈부는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운용의 명확성 및 투명성을 저해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9.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⁶³⁾: 보조금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국비 부담분 우선 집행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은 건물 노후화, 진료공간 협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대구보훈병원 서관동을 철거한 후 재건축(증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억 3,000만원 중 11억 2,700만원 (99.7%)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1,130	1,130	-	-	1,130	1,127	-	3	4,490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79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대구보훈병원 서관동을 철거한 후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1,003㎡, 110개 병상 규모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며 국비와 자기부담금 비율은 70:30임.

63) 세부사업: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2156-393)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개원 후 30년 경과로 건물 노후화,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 공간 협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現 서관동 철거 후 증축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1,003㎡, 110개 병상 *면적 8,823㎡ ↑ (2,180㎡→11,003㎡), 병상 22개 ↑ (88개→110개)
사업기간	·2023년~2027년
총사업비	·479억 2,600만원(국비 70% 지원)

자료: 국가보훈부

□ 사업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2023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23년 8월까지 공공건축 기획심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11월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설계용역을 진행 중임⁶⁴⁾.

□ 이에 동 사업의 2024년 국비 예산 11억 3,000만원은 설계비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며, 해당 연도에 자기부담금 예산은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지급을 위해 17억 600만원이 책정되었음.

< 2024년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합 계	2,836	-	850	1,620	366	-
국 비	1,130	-	-	1,130	-	-
자기부담금	1,706	-	850	490	366	-

자료: 국가보훈부

64) 답변 제출일자: 2025년 8월 4일

□ 해당 예산의 상세 집행내역에 따르면, 설계 중 적정한 공사규모 재검토 등으로 설계용역이 일시 정지되는 등 사유에 기인하여 공단의 자기부담금인 보상비와 감리비 등은 2025년으로 이월되었고, 설계비에 대해서만 연도 중 집행이 이루어졌음.

□ 그런데, 2024년 설계비 국비 예산 11억 3,000만원과 설계비 자기부담금 예산 4억 9,000만원 중 국비 부분은 모두 집행된 반면, 자기부담금 부분은 5,840만원(11.9%)만 집행(잔액 반납분 포함)되고 4억 3,1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설계비 1차 집행에 있어서 계획설계 잔금 2억 5,819만원을 모두 국비로 집행하였고, 설계비 2차 집행 시 중간·실시설계 선금 8억 8,020만원 중 8억 6,880만원을 국비(예산 잔여 전액)로 충당하고 자기부담금 예산은 1,140만원(선금 총액의 1.3%)만 집행한 후 남은 금액은 이월하였음.

< 2024년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설계비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국 비	자 부 담	
예 산	1,130,000	490,000	
집 행	1,127,000	집 행	이 월
		57,096	431,604
잔액(반납)	3,000	1,300	-

구 분			국 비	자 부 담	
설 계 비	1차수 (계획설계)	선금	(68,724, '23년 집행)	(6,276, '23년 집행)	
		잔금	258,194 ('24.5월)	-	
	2차수 (중간설계, 실시설계)	선금	868,806 ('24.8월)	11,396 ('24.8월)	-
		잔금	-	-	425,674
	기타	교통영향 평가 등	-	45,700 (24.9월)	-
		자문수당 등	-	-	5,93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국비 보조 예산을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자기부담금 예산은 미집행 후 이월하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 방식임.

<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의무에 대한 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이하 생략)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등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이하 생략)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사업 일정 및 계획에 따라 국비 설계비는 선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설계용역 중단 사정으로 공단 자부담 설계비·보상비·감리비는 미집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 계획시 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보다 국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10.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⁶⁵⁾: 연례적 이월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는 독립기념관 전시·연구, 교육·문화사업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281억 7,6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독립기념관운영 및 활성화	28,176	28,176	-	-	28,176	28,176 [25,739]	-	-	27,479
인건비	9,481	9,481	-	-	9,481	9,481 [9,481]	-	-	9,437
경상비	1,900	1,900	-	-	1,900	1,900 [1,896]	-	-	2,064
기본사업비	12,591	12,591	-	-	12,591	12,591 [12,582]	-	-	11,926
활성화사업비	3,934	3,934	-	-	3,934	3,934 [1,599]	-	-	3,781
예비비	270	270			270	270 [181]	-	-	271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구성된 사업으로, 독립기념관이 교부받은 금액은 281억 7,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65) 세부사업: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3144-333)

5,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91억 2,900만원이고, 이 중 266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6%)되고, 23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목	세목	부처		사업시행주체(독립기념관)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320	01	21,355	21,355	21,355	21,355	69	21,424	21,318	21,355	21,249	4	102	99.5
320	07	6,821	6,821	6,821	6,821	884	7,705	5,374	6,821	4,490	2,331	-	65.8
계		28,176	28,176	28,176	28,176	953	29,129	26,692	28,176	25,739	2,335	102	91.4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연례적 이월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 독립기념관은 전시환경 변화·관람객 니즈 등을 반영하여 개관 이후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쳐 주기적으로 전시교체 사업을 진행 중이며,⁶⁶⁾ 교체는 관람객을 고려하여 각 전시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제3차 전시교체사업은 7개 상설전시관의 ‘전시주제 및 기능 재조정 마스터플랜(2015)’에 따라 연차별 1개관씩 전시교체를 추진 중이며, 제7관은 2022년부터 교체를 진행 중에 있음.

66) (1차) 1994년~2004년 / (2차) 2005년~2010년 / (3차) 2015년~현재

< 제3차 전시교체사업 개요 >

<교체 전> (체계: 주제관·체험관)			<교체 후> (체계: 종합관·감성관·복합관·주제관)				
구분	대주제	조성	구분	대주제	면적 (㎡)	예산 (백만원)	추진년도
1관 (주제관)	민족전통	2010.5.	1관 (종합관)	한국역사와 독립운동	3,485	-	2028-29(예정) 18년경과
2관 (주제관)	일제침략	2008.8.	2관 (주제관)	일제 침략	2,619	5,165	2019 '20 재개관
3관 (주제관)	의병 애국계몽운동	2008.8.	3관 (주제관)	3.1운동과 대중투쟁	1,478	2,956	2018-19 '19 재개관
4관 (주제관)	3.1운동	2007.8.	4관 (감성관)	독립운동의 의미와 가치	1,494	2,984	2016-17 '17 재개관
5관 (주제관)	독립전쟁	2009.10	5관 (주제관)	독립전쟁	2,539	-	2026-27(예정) 17년경과
6관 (주제관)	사회문화 임시정부	2009.4.	6관 (주제관)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2,539	5,289	2021-22 '22 재개관
7관 (체험 기획관)	체험전시 특별기획전	2010.10	7관 (복합관)	주제전시(연합국과 함께한 독립운동), 체험존, 기획전시	3,561	7,819	2022-26 교체 진행중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제3차 전시교체사업이 진행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0년을 제외한 8년 중 1개 연도를 제외한 7개 연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2024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8억 8,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2억 3,800만원 중 9억 300만원만을 집행(집행률 27.9%)하고 나머지 23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연도별 제3차 전시교체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6	1,400	-	-	-	1,400	571	829	-
2017	1,584	829	-	-	2,413	2,413	-	-
2018	2,956	-	-	-	2,956	1,716	1,240	-
2019	5,165	1,240	-	-	6,405	6,246	159	-
2020	-	159	-	-	159	159	-	-
2021	2,645	-	-	-	2,645	1,255	1,390	-
2022	2,874	1,390	-	-	4,264	4,038	226	-
2023	2,350	226	-	-	2,576	1,688	888	-
2024	2,350	888	-	-	3,238	903	2,335	-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전시코체사업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단계에서 제안공모, 설계, 공사 등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집행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동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시코체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시코체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성과지표 추가·변경 필요

□ 동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2022년부터 ‘독립기념관 콘텐츠 수혜인원’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정량적 사항인 관람인원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성과의 질적 평가가 누락되어 온전한 평가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2021년까지는 관람인원과 고객만족도 2가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2022년부터 온라인 이용객도 포함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 콘텐츠 수혜인원’으로 지표를 변경하면서 고객만족도는 지표에서 삭제함.

< 2024년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성과지표 >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관람인원 (천명)	목표	1,579	-	-	-	-	성과지표 변경 (‘22년)	독립기념관 관람인원 합산	독립기념관 통계 * 무인체크기 활용
	실적	1,139	-	-	-	-			
	달성도	72.1	-	-	-	-			
고객만족도 (단위:점)	목표	90.2	-	-	-	-	성과지표 변경 (‘22년)	PCSI(평정부여 방식) 지수 (고객설문조사)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보고 서
	실적	91.7	-	-	-	-			
	달성도	101.7	-	-	-	-			
독립기념관 콘텐츠 수혜인원	목표	1,080	1,849	2,069	2,147	2,262	관람객 방문자 수 및 오프라인 콘텐츠 수혜인	연간기념관 관람인원, 온·오프라인	독립기념관 통계 * 무인체크기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천명)	실적	1,443	1,727	2,096	2,178	-	원은 전년도 대비 5% 증가, 온라인 콘텐츠는 전년도 대비 13% 증가를 목표로 도전적 설정	전시·교육 수혜인원합산	등 활용
	달성도	133.6	93.4	101.3	101.4	-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기념관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자체수입이 존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교체사업에 연평균 20억원 이상의 금액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독립기념관 콘텐츠 수혜인원’만 설정할 것이 아니라, ‘자체수입 증대’ 및 ‘전시교체사업 공정진행률’ 등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의 위상에 맞는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 보훈교육연구원⁶⁷⁾: 보훈교육연구원과 국가보훈부의 일부 사업 유사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교육연구원’ 내역사업은 독립·호국·민주 등 보훈영역 주제별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온·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1억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함.

< 2024년도 보훈교육연구원 내역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0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훈문화조성	15,407	15,407	-	-	15,407	14,693	-	714	14,104
보훈교육연구원	5,110	5,110	-	-	5,110	5,110	-	-	5,110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보훈교육연구원’ 내역사업은 ‘보훈정신계승 연수교육’ 내내역사업과 ‘연수교육 운영·인건비(’23년부터 반영)’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훈교육연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기관(현원 31명)으로, 2001년 보훈연수원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당초 보훈교육연구원 설립 시에는 국가보훈처 소속이었으나,⁶⁸⁾

67) 세부사업: 보훈문화조성(3145-401)

1999년 정부 슬림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위탁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사업으로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호국정신을 기르고 복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고,⁶⁹⁾ 이를 근거로 의료공단 소속 ‘보훈교육연구원’이 존재함.

- 주요 기능은 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교육, ② 초·중·고·대학생 대상 독립, 호국, 민주교육, ③ 교사,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공직가치

68) 연혁

- '63. 1월 **종합원호원**으로 개원(직업보도, 양로·양육보호)
- '93. 2월 **보훈연수원**으로 명칭변경
- '99. 1월 **보훈연수원** 업무를 보훈처→보훈공단으로 위탁
 ⇒ 정부슬림화 정책의 일환
- '01. 2월 **보훈교육연구원**으로 명칭변경
- '06. 2월 **보훈교육연구원** 신축 이전

보훈교육연구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기관이며, 연수교육 운영하는 직원도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함.

6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복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함양 교육, ④ 보훈정책 및 공단경영과제 등 국가보훈분야 연구·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7명임.

< 인원 현황 (25.8월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연수부		운영부			연구부		계
	별정직	행정직	행정직	시설직	경비·청소	연구직	행정직	
정 원	1	9	9	5	8	5	-	37
현 원	1	8	6	4	7	4	1	31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교육연구원 결산 및 예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예산)
수입	세출예산1)	502	715	3,721	5,096	5,096
	연구용역2)	200	141	18	43	350
	기타(공무원교육 등)	375	209	661	752	444
	소계(A)	1,077	1,065	4,400	5,891	5,890
지출	인건비	2,030	1,868	2,018	2,045	2,285
	경비 등	1,317	1,536	2,966	4,260	4,111
	소계(B)	3,347	3,404	4,984	6,305	6,396
보훈공단 부담금(B-A)		2,270	2,339	584	414	506

1) '23년부터 보훈정신계승발전 위탁사업 예산 대폭 확대 반영

2) 연구용역은 대부분 보훈공단 내부적인 위탁 과제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교육연구원 최근 5년간 사업 내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예산)
보훈정신계승연수	502	715	3,721	5,096	5,096
공무원 교육	55	85	238	289	130
기타 교육	11	25	254	260	14
정책연구	200	141	18	43	350
소계	768	966	4,231	5,688	5,590

자료: 국가보훈부

☐ 본 사업의 2024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훈교육연구원은 청소년 대상 발간물 제작, 보훈학습 콘텐츠 제작, 교육 플랫폼 운영 등을 수행

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국가보훈부와 유사한 내용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와 보훈교육연구원은 청소년 대상 발간물 제작, 보훈학습 콘텐츠 제작, 교육 플랫폼 운영 등을 각각 수행하고 있음.

< 2024년 국가보훈부와 보훈교육연구원의 교육사업 중 유사성이 높은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국가보훈부		보훈교육연구원	
	사업명	집행액	사업명	집행액
청소년 대상 발간물 제작	청소년 학습책자 개발·보급	200	청소년 대상 보훈잡지 발간	200
보훈학습 콘텐츠 제작	보훈학습 방송 콘텐츠 제작	1,477	보훈학습 콘텐츠 개발	442
	디지털 보훈학습 콘텐츠 개발	216		
교육 플랫폼 운영	나라사랑 배움터 웹사이트 운영	30	온라인 보훈교육 플랫폼 개발·운영	32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보훈학습 콘텐츠 제작’의 경우 국가보훈부는 디지털 보훈 교과서 개발·보급을, 보훈교육연구원은 연구원 내에 조성된 ‘디지털 실감형 보훈학습 콘텐츠관’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 플랫폼의 경우 두 기관간 플랫폼이 다르다는 입장이나, 두 기관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각각의 기관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행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이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직무 중 수행 주체가 분명한 연수교육과 달리, 기타 교육사업은 기관 간 역할분담 관계가 분명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연수교육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5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산하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명확함. 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정신 함양 등의 교육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2항에서 국가가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⁷⁰⁾
- 보훈교육연구원의 일반 국민 대상 보훈교육사업은 국가보훈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아님에도, 2023년부터 보훈교육연구원이 호국정신 계승발전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업무를 수행⁷¹⁾함에 따라 직무 수행 범위가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함.
- 보훈교육연구원이 공단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근거가 미약하고, 조직 운

7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5(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71) 보훈교육연구원의 세출예산은 2021년 5억 200만원에서 2023년 37억 2,100만원, 2024년 50억 9,600만원으로 증가함.

영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두 기관 간 업무의 명확한 구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됨.

-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취지, 업무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보훈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2.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⁷²⁾: 사업관리 철저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장소에 지역을 대표하는 보훈 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3억 9,400만원 중 7억 6,000만원(54.5%)을 집행(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실집행액은 없음)하고, 6억 3,400만원을 불용함.

< 2024년도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0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훈문화조성	15,407	15,407	-	-	15,407	14,693	-	714	14,104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1,394	1,394	-	-	1,394	760 [-]	-	634	2,290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된 신규 내역사업으로, 2024년에는 창원시, 포항시, 평택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문화관 건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72) 세부사업: 보훈문화조성(3145-401)

○ 동 사업에서는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를 지원하며, 2024년 창원시는 2억 2,800만원, 포항시는 5억 3,200만원, 평택시는 6억 3,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창원시와 포항시의 경우 건축 설계공모,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비 추경 편성 등의 일정이 지연되어 예산액 전액이 이월되었고, 평택시의 경우 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 창원 보훈문화관은 2025년 5월에야 용지 보상이 완료되었음. 포항시의 경우 건축 설계 공모 후 설계 용역 착수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할 때, 창원의 경우 2025년에도 예산액 5억 8,700만원의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창원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추진 현황 >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건립 부지 확정	2024. 3.	2024. 7.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비 편성 필요에 따른 절차 이행
지방재정투자심사	2024. 6.	2024. 9.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 7.	2024. 10.	
지방비 추경 편성	2024. 7.	2024. 12.	
건축 설계 공모	2024. 9.	-	
용지 보상 완료	2025. 2.	2025. 5	

주)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포항 보훈문화관은 2024년 12월 설계공모를 한 후, 2025년 5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음. 포항 역시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공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였을 때 2025년내에 공사 착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포항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추진 현황 >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건립 부지 확정	2024. 2.	2024. 2.	지방비 추경 편성 등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
지방재정투자심사	2024. 6.	2024. 6.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 7.	2024. 10.	
지방비 추경 편성	2024. 7.	2024. 10.	
건축 설계 공모	2024. 9.	2024. 12	
건축 설계 착수		2025. 5	

주)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부족, 지역주민 의견수렴 필요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사업이 착수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교부한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음. 이와 같이 사업 1년차부터 지방비 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액이 미집행된 것은, 국가보훈부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지 않은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

현 가능성,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고,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도 전년도 실집행실적, 연내 집행 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⁷³⁾ 교부된 금액전액이 이월되었음.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73)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8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현충시설건립⁷⁴⁾: 사업관리 철저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현충시설 건립’은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을 건립하여 국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3,800만원을 합한 83억 2,100만원으로, 이 중 38억 600만원(45.7%)이 집행되고 1억원이 이월되었으며 44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릴 위패봉안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1억 9,5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집행률 1.1%)하고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 5,000만원을 불용함.

< 2024년도 현충시설건립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현충시설 건립	7,083	7,083	1,238	-	8,321	3,806	100	4,415	4,756
독립의 전당 건립	4,146	4,146	49	-	4,195	45 [45]	100	4,050	4,032

자료: 국가보훈부

74) 세부사업: 현충시설건립(3146-405)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2008년 기존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의 ‘순국선열 위패봉안관’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6년 예산에 사업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었음.

그러나 당초 선정한 부지가 문화유산보호구역·공원 내에 위치하여 문화유산현상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건립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편성된 예산 10억원과 20억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2018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2025년에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었음.

< 독립의 전당 사업 개요 >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위치 : 서대문독립공원 내(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 사업기간: 2022~2025년(4년)
-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552㎡
- 주요시설 : 위패봉안실, 체험 교육장, 사무실, 편의시설 등
- 총사업비 : 11,900백만원(전액 국비)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의 전당 연도별 편성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2		2023		2024		2025	
구 분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금 액	226	152	494	421	4,146	45	4,032	—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도 예산안 41억 4,600만원은 공사비(1년차) 34억 400만원, 감리비 6억 3,8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400만원으로 구성됨.

2) 검토의견

- 독립의 전당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41억 9,500만원 중 실시설계비 4,500만원만 집행(집행률 1.07%)되었음.
- 실시설계비 예산현액 1억 3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과 세목조정으로 충당한 5,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 중 설계용역 대금 3,500만원과 설계의 경제성(VE) 용역 대금 1,000만원은 2024년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세목조정으로 충당한 5,800만원은 설계용역에 추가된 대금으로 완료되지 않은 설계용역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2025년으로 이월하였음.
- 2024년도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1억 8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 400만원과 2024년 본예산 배정액 1억 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전년도 이월액 400만원 중 전문가 자문 수당 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6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 1억 400만원 중 독립의 전당 건립 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 계약 대금 2,200만원을 이월하고, 잔액 8,2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4년도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독립의 전당 건립(2024)	4,146	49	—	4,195	45	100	4,050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20	20	—	20	—
－ 실시설계비(420-02)	—	45	58	103	45	58	—
－ 공사비(420-03)	3,404	—	△78	3,326	—	—	3,326
－ 감리비(420-04)	638	—	—	638	—	—	638
－ 시설부대비(420-05)	104	4	—	108	—	22	85

자료: 국가보훈부

□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심의에 기간이 소요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2~2024년도 독립의 전당 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2	226	—	—	226	152	69	5	67.3
2023	494	69	—	562	421	49	93	74.9
2024	4,146	49	—	4,195	45	100	4,050	1.07

자료: 국가보훈부

□ 당초 국가보훈부는 2023년 실시설계 완료를 전제로 2024년 상반기 이후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2개년에 걸쳐 편성하였음.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합계
공사비	3,404	6,056	9,460
감리비	638	958	1,596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 11월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당시 국가보훈부는 2024년 9월 문화유산위원회 허가사항에 대해 변경허가가 결정되었고,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관련 주요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상황임으로 2024년 11월까지 인·허가 관련 최종 조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 관련 계약을 2024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예산액 41억 4,600만원 중 14억 6,800만원을 2024년 내에 집행하고, 21억 7,300만원은 이월하며 5억 500만원을 불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연내 착공 및 선금 지급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2025년의 경우 연차계약 2년 차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함.

□ 그러나, 사업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유재산심의가 2025년 3월에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5년 3월에 이르러서야 서울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음. 또한, 현재까지도 실

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음.

-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계약하고 착공해야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⁷⁵⁾에 의하면 입찰공고만 최소 5~40일이 소요됨. 입찰 공고 기간 외에 조달청에 입찰을 협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낙찰자 선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고 가정해도 연내에 공사 관련 계약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

구분	현황 및 향후계획	순연사유
공공건축 사전검토	2022.6.	-
공공건축 심의	2022.8.	-
설계용역 계약	2022.12.	-
계획설계 완료	2023.4.	-
국가유산청 협의 (문화유산 현상변경)	2023.3. ~ 2023.6.	-
도시공원위원회 협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2023.10. ~ 2024.8.	공원조성계획 심의의견(공원과의 조화, 경관 보존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 대비 일정 지연
국가유산청 협의 (문화유산 현상변경)	2024.8. ~ 2024.9.	설계 변경에 따라 문화유산 현상변경 재허가 필요
실시설계 완료	2025.9. 목표	선행절차 지연 및 사업부지 교환 관련 협의 진행*에 따라 순연 * 2024.9. 서울시 협의 2024.12. 공유재산심의회 가결(서울시) 2025.2. 서울시 행정자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서울시, 2025.3) 실시계획 인가 신청(2025.3.)
공사 계약 및 착공	2025.10. 목표	
준공	2026.12. 목표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사유는 국가보훈부의 사전 사업계획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또한,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지연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임.

14. 보훈기념행사⁷⁶⁾: 연례적인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내역변경 지양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기념행사’ 사업은 정부기념행사, 국경일행사 지원, 정부기념일 계기행사 지원 및 순직경찰·소방공무원 추모행사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41억 5,000만원으로, 이 중 41억 3,900만원(99.7%)이 집행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정부기념일행사’ 사업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11개 정부기념식 추진을 통해 국가기념일에 담긴 정신을 국민에 알리고 계승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1억 6,300만원 중 31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보훈기념행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훈기념행사	3,954	3,954	-	196	4,150	4,139	-	11	3,954
정부기념일행사	2,967	2,967	-	196	3,163	3,158	-	5	2,967

자료: 국가보훈부

76) 세부사업: 보훈기념행사(3147-411)

2) 검토의견

(1) 연례적인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내역변경 지양 필요

□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에 2·28민주운동기념행사 등 11개의 정부기념행사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당초 본예산 29억 6,700만원 대비 6.6% 수준인 1억 9,600만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전용 또는 내역변경을 통하여 증액하여 집행하였음.

< 2024회계연도 정부기념행사 사업으로의 전용 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감액사업		금액	증액사업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12.23.)	독립운동관련 사업등지원 (3147-413)	220-02	28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3147-411)	210-01 (일반수용비)
전용 (‘24.12.23.)	보훈기념행사 (3147-411)	220-01	15		
전용 (‘24.12.26.)	보훈기념행사 (3147-411)	220-01	3		
전용 (‘24.12.26.)	보훈문화콘텐츠제 작및지원 (3147-404)	210-14	100		
내역변경 (‘24.12.26.)	독립운동관련 사업등지원 (3147-413)	210-01	69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예산을 전용·조정한 사유에 대하여 인건비·물가 등 기본적 인상요인 뿐만 아니라 행사·문화 콘텐츠가 고도화·전문화됨에 따라 정부기념행사의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조정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최근 5년간 정부기념행사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행사가 취소된 2020년도를 제외하고 국가보훈부는 연례적으로 약 2억원 규모를 초과하는 과도한 예산을 전용하거나 조정하여 정부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왔음.

< 최근 5년간 정부기념행사 사업 전용 등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0	4,040	3,760	-	△150	-	3,610	3,479	-	131
2021	2,119	2,119	-	268	-	2,387	2,251	-	136
2022	2,119	2,119	-	252	-	2,371	2,371	-	-
2023	2,476	2,476	-	248	-	2,724	2,712	-	12
2024	2,967	2,967	-	196	-	3,163	3,158	5	

자료: 국가보훈부

□ 본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전용은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임. 정부기념행사는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반복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재정운영으로 보임.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훈기념행사를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및 ‘기념행사별로 일정한 사업추진 체계와 소요재원을 설정하고,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며, 대통령 참석 등 특이 소요예산도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등 과도한 예산의 전용이나 조정을 지양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2024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6)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부적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필요	○ [지적사항] 국가보훈부는 정부기념행사 추가 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해 보훈기념행사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현충시설공사비 낙찰차액 2억 1,5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그런데 현충시설공사(국가보훈광장조성사업) 예산을 성격이 전혀 다른 보훈기념행사에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회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한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훈기념행사를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향후 보훈기념행사 예산편성 시 정부기념행사별 소요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예산 반영과 효율적인 보훈기념행사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 '23년 정부기념행사 예산 증액 편성하여 이·전용 없이 편성된 예산 내 집행하여 내실있는 기념식 거행 * 정부기념식 : '22년 2,119 → '23년 2,424백만원으로 증액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17) 보여주기 식	○ [지적사항] 국가보훈부의 최근 5년간 정부기념행사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행사가 취소된 2020년도를 제외하고 연례적으로 이·전	○ 코로나-19 이후 참석 규모가 다시 대 규모로 확대되고, 물가 상승 등 비용인상 요인에 비해 정부기념행사 예산은 그동안 10여년 가까이 제자리였던 상황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정부기념 행사 사업의 연례적 전용·조 정 지양	용 등을 통해 증액하여 추진하였음 - 특히, 국가보훈사업 자체의 내실을 다지 기보다는 윤석열대통령 취임 이후 참여 한 4·19혁명 기념식, 5·18민주화운동, 현충일 추념식 등에서 보여주기식 외부 행사에 치중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기념행사별 로 일정한 사업추진 체계와 소요재원을 설정하고,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가 없도 록 하며, 대통령 참석 등 특이 소요예산 도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등 과 다한 예산의 전용이나 조정을 지양할 것	으로 본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정부기 념행사를 거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 나,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하여 '23년 정부기념식 예산 증액 편성 * 정부기념식 : '22년 2,119 → '23년 2,424백만원으로 증액 - 그 결과 '23년 정부기념식을 이·전용 없이 편성된 예산 내 집행하여 내실 있는 기념식 거행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국가가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II-1” 426페이지의 ‘최근 3년
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최근 지적사항 반
드시 업데이트)’ 항목에 국가보훈부는 ‘해당없음’이라고 잘못된 정
보를 기재함.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사전에 정부기념행사의 추진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과다한 예
산의 전용이나 조정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고, 제출 자료에 외부 지적사
항 및 평가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기념식별 구체적인 계획 또는 매뉴얼 수립 필요

-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은 매년 행사비 부족을 이유로 이·전용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일반수용비’ 비목만을 따로 떼어내어 살펴보면 2024년에는 본예산액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일반수용비의 이·전용 등(내역변경 포함)이 발생함.

<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 이·전용 규모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액(A)	이·전용 등 규모(B)	예산현액 (=A+B)	이·전용 등 사유
2021	392	161	553	행사비 부족
2022	392	191	583	행사비 부족
2023	380	170	550	행사비 부족
2024	380	488	868	행사비 부족

자료: 국가보훈부

- ☐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매년 코로나19 등 환경변화 대응, 인건비, 물가 등의 인상 및 행사 콘텐츠의 전문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를 매년 이·전용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상당히 빈약함.

- 첫째, 국가보훈부의 설명대로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3억 9,200만원(2021년, 2022년), 3억 8,000만원(2023년, 2024년) 수준으로 편성되기는 하였으나,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사업비가 2022년 21억 1,900만원에서 2024년 29억 6,700만원으로 상

당부분 증액되었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짐.

- 일반수용비의 증액이 필요했다면, 증액분 8억 4,800만원 중 다른 비목이 아닌 일반수용비의 증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둘째, 국가보훈부는 2022년 이·전용 등 18회, 2023년 이·전용 등 21회, 2024년 이·전용 등 15회 등 연례적으로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에서 잦은 이·전용 등을 하고 있음. 또한,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을 했음에도 다시 일반용역비에서 일반수용비 등으로 세목조정을 하는 등 비계획적인 세목조정을 반복하고 있음.

- 2024년의 경우 1월 31일, 3월 18일, 4월 1일에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각각 1억 6,000만원, 3억원, 5,0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으나, 5월 3일, 6월 13일, 8월 19일에 다시 일반용역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되돌리는 세목조정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우며 비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음.

< 2024년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세목조정 내역 >

(단위 : 천 원)

일자	구분	이전용 등 감액(A)			이전용 등 증액(B)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목 (000-00)	금액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목 (000-00)	금액	
1.3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60,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160,000	예산의 효율적 집행
3.18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300,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300,000	
4.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55,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55,000	
5.3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27,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7,000	
5.3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100	
5.3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100	
6.5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3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300	
6.13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63,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63,000	
8.6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1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00	
8.19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150,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50,000	
8.29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116,108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16,108	
12.23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16,971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6,971	
12.23	전용	독립운동관련사업등 지원	국외여부 (220-02)	△27,374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7,374	
12.26	전용	보훈문화콘텐츠제작및 지원	일반용역비 (210-14)	△99,7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99,700	
12.26	내역변경	독립운동관련사업등 지원	일반수용비 (210-01)	△69,239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69,239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 본예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수용비 금액을 이·전용 등으로 충당한 것은 그 규모가 당초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보다 과다한 측면이 있음. 또한, 정부기념행사별 일반수용비 집행금액을 살펴보면 동일한 행사 내에서도 연도별 집행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념식별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매뉴얼이 부재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21~2024년 정부기념행사별 일반수용비 집행액 현황 >

(단위: 천원)

행사명	2021	2022	2023	2024
2·28민주운동 기념식	51,660	28,372	23,655	39,923
3·8민주의거 기념식	15,880	32,025	14,450	30,726
3·15의거 기념식	14,956	56,134	40,164	48,666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87,625	68,022	45,690	62,378
4·19혁명 기념식	31,286	29,434	41,250	30,230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	-	-	171,472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46,148	125,925	123,700	102,210
현충일 추념식	25,816	89,995	80,508	104,150
6·10만세운동 기념식	23,479	27,200	43,784	43,522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29,750	4,032	5,398	31,300
순국선열의날 기념식	65,747	3,847	15,258	43,123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사전에 정부기념행사의 추진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과다한 비목간 세목조정 및 이·전용 등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15. 국립신암선열공원⁷⁷⁾: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 필요절차를 예산 편성 전 면밀히 검토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내역사업인 ‘시설보수공사’는 국립묘지 내·외부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해 국립묘지의 기능 수행과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2억 5,200만원으로 이 중 1억 2,200만원(48.4%)이 집행되고, 1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립신암선열공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립신암선열공원	704	704	-	△52	652	487	-	165	708
시설보수공사	307	307	-	△55	252	122	-	130	307

자료: 국가보훈부

77) 세부사업: 국립신암선열공원(3250-362)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시설보수공사’의 내내역사업인 ‘경비실 신축공사’는 국립신암선열공원의 경비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예산액은 1억 8,500만원, 단년도 사업으로 2024년 신규 편성되었으나,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 ‘경비실 신축공사’ 사업 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경비실신축공사	185	△55	130	-	130
기본조사설계비	24	-	24	-	24
실시설계비	7	-	7	-	7
공사비	149	△55	94	-	94
감리비	4	-	4	-	4
시설부대비	1	-	1	-	1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이 이행되지 못하였던 것은, 경비실 신축공사를 위해서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의 인·허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공원조성계획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임.
- 국립묘지의 경우, 인·허가 등이 필요한 시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

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이를 열람공고하는 절차 등을 거쳐 확정 후 고시하게 되면 해당 인·허가 등이 의제되게 됨.⁷⁸⁾

7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6.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국립묘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3. (생략)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 7. (생략)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 국립묘지 시설사업 인·허가 절차 >

구 분	추진절차	비 고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국립묘지법 제11조의2,령 제13조의2	○작성 및 승인권자 : 국가보훈부장관 - 권한위임 :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장
	관련부서(기관) 협의 국립묘지법 제11조의2, 제11조의4	○ 30일 내 의견 제출
	주민열람공고 국립묘지법 제11조의2	○ 해당 지역 일간신문,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등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국립묘지법 제11조의3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지형도면 고시 ○ 의제 협의사항 고시
의제협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국립묘지법 제11조의4	○ 관련 서류 작성 및 행정기관 장과 협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국립묘지법 제11조의4	○ 관련 서류 작성 및 행정기관 장과 협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국립묘지법 제11조의4	○ 관련 서류 작성 및 행정기관 장과 협의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 국립묘지법 제11조의4	○ 관련 서류 작성 및 행정기관 장과 협의

자료: 국가보훈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9. ~ 11. (생 략)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4. ~ 22. (생 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국가보훈부의 설명에 따르면, 당초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동 공사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등 필요한 인·허가 등을 의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그런데,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 중 국립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되던 2018년에 실시계획 및 공원조성사업 계획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동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3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음.⁷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은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으로,⁸⁰⁾ 동 국립묘지가 대구시로부터 이관되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원조성사업 계획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이 누락되어 있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으며, 위와 같은 문제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동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사전에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⁸¹⁾

79) 국가보훈부는 25-29 중기사업계획 요구 등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80) 작성 권한은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81)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동 사업은 2024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된 단년도 사업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 전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인·허가 및 이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예산 편성 이전에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할 것임.⁸²⁾

○ 그럼에도,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고려 없이 동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재정 운용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임.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신규 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필요한 선행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를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82) 국가보훈부는 2023년에도 경비실 신축공사가 시급하다고 건의(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p.671)하였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수요는 장기간 존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임.

16. 국립묘지조성⁸³⁾: 안장 여력의 적기 확보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묘지조성’은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 여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27억 6,400만원으로 이 중 87억 8,200만원(68.8%)이 집행되고, 24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립묘지조성’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립묘지조성	12,452	12,452	312	-	12,764	8,782	1,579	2,403	30,049
국립연천현 충원 조성	3,797	3,797	256	-	4,053	3,898	141	14	30,037
국립횡성호 국원 조성	6,457	6,457	56	-	6,513	4,884	1,428	201	12
국립장흥호 국원 조성	2,198	2,198	-	-	2,198	-	10	2,188	-

자료: 국가보훈부

83) 세부사업: 국립묘지조성(3250-364)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증가하는 안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을 20만기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3곳의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5곳의 호국원 봉안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이에 따라 ‘국립묘지조성’ 사업에는 대상자의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천, 장흥, 횡성 지역에 국립묘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 국립연천현충원의 경우 2024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 국립장흥호국원과 국립횡성호국원의 경우 2024년도에 설계 및 보상업무를 진행하여 2025년도에 설계 및 보상업무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국립묘지조성’ 사업 계획 >

(단위: 기)

구분		사업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상 추진 일정
		사업기간	조성규모	
조성	연천현충원	2019~2026	50,000	• (24년) 조성공사 계약·착공 - (3분기) 공사 착공 • (26년) 조성공사 완료
	횡성호국원	2023~2028	20,000	• (24년) 설계 및 보상업무 진행 • (25년) 설계 및 보상업무 완료
	장흥호국원	2024~2029	13,000	• (24년) 설계 및 보상업무 진행 • (25년) 설계 및 보상업무 완료

자료: 「2024년 국가보훈발전 과제별 실천계획」, 국가보훈부

□ 그런데, ‘국립묘지조성’의 각 내역사업은 2024년도에 계획하였던 일정
이 정해진 시기에 이행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절차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대규모 이월 및 불용 등 집행 부진이 발생하게 되었고, 사업기
간(준공) 연장도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되었던 공사계약 및 착
공이 계약 체결 지연과 동절기 영향으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공사
비 예산현액 37억 2,900만원이 전액 집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24년 12월 18일 체결된 동 공사계약의 선금금으로 지급된 것임.

○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주민 반대 해소를 위하여 추
가 절차(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등)를 진행하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
되었고, 이에 따라 예정되었던 설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서 설계비 약 14억원을 이월하였음.

○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사업의 경우 2024년부터 설계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전타당성 평가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절차 등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이 순연되어, 편성된 설계비 예산은 전액 불용
하게 되었음.

< 각 국립묘지 조성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연천현충원 조성	공사비(420-03)	3,729	3,729	-	-
횡성호국원 조성	기본조사설계비(420-01)	1,899	381	1,373	145
	실시설계비(420-02)	1,700	1,599	45	56
장흥호국원 조성	기본조사설계비(420-01)	1,288	-	-	1,288
	실시설계비(420-02)	900	-	-	900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묘지조성’ 사업 계획 대비 이행 현황 >

사업	계획 대비 이행 현황			비고
	구분	계획	이행	
연천 현충원 조성	공사 계약	'24. 8.	'24. 12.	계약 유찰에 따른 지연
	공사 착공		'25. 4.	동절기 공사 중지
	준공	'26.	('27. 9. 연기)	
횡성 호국원 조성	기본설계	'23. 4. ~ '24. 2.	'23. 4. ~ '24. 12.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25.8. 종료 예정)
	실시설계	'24. 2. ~ '25. 10.	(2025년 내 추진 예정)	
	준공	'28. 12.		
장흥 호국원 조성	기본설계	'23. 11. ~ '24. 9.	- (사업타당성 평가 이행) ('23. 7. ~ '24. 7.)	총사업비 조정 협의 ('25.8. 종료 예정)
	실시설계	'24. 10. ~ '25. 12.		
	준공	'29. 12.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묘지 조성’ 사업의 지연은 정책적으로 안장 수요에 대응하는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 확보에 차질을 유발함으로써 안장대상자가 적기에 안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 재정운용적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의 미집행과 불용된 예산의 재편성 등을 반복하게 하여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계획된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후속 절차가 순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업 전반에 걸쳐 국립묘지가 계획된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6월 기준, 생존 중인 국립묘지⁸⁴⁾ 안장대상자 수는 약 33만 3,700여명으로,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13만여기)은 이에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예정된 시기에 국립묘지 공사가 완료되어 개원되어야 할 것임.

< 생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현황 >

(2025. 6. 기준, 단위: 명)

구분	생존 안장대상자*	연령별 현황		
		80세 미만	80~89세	90세 이상
국립현충원	176,598	139,881	29,076	7,641
국립호국원	157,170	97,816	36,633	22,721

* 장기재직 경찰·소방관의 경우 호국원의 안장대상자이나, 수치에는 미포함되어 있어 실제 생존 호국원 안장대상자는 이보다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

자료: 국가보훈부

84) 이하에서는 국립묘지 중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에 한정하여 논의함.

< 국립묘지별 안장 여력 >

(2025. 6. 기준, 단위: 기)

구분	안장능력	안장기수	안장 여력
국립서울현충원	108,230	89,840	18,390
국립대전현충원	149,340	106,962	42,378
국립현충원 합계	257,570	196,802	60,768
국립영천호국원	78,825	55,190	23,635
국립임실호국원	56,912	36,260	20,652
국립이천호국원	100,002	50,002	50,000
국립산청호국원	20,639	11,354	9,285
국립괴산호국원	47,634	23,727	23,907
국립호국원* 합계	304,012	176,533	127,479

* 지역별 접근성 고려,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장 여력(6,736기) 제외

자료: 국가보훈부

- 특히, 국립묘지가 만장될 시에는 해당 국립묘지의 안·이장이 중지되고, 신규 안장 여력 확보로 안·이장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안장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안장 여력이 적기에 확보될 필요가 있음.

< 만장된 국립묘지의 안·이장 대기 현황 >

(2025. 7. 18. 기준, 단위: 명, 기)

구분	만장일	준공일	안이장 시작일	구분	신청자 (A)	승인자 (B)	안이장 완료수 (D)	대기 인원 (B-D)
영천 호국원	24.8.8	25.4.13	25.4.14(이장)	안장	1,418	1,320	1,219	101
			25.5.1(안장)	이장	892	711	194	517
이천 호국원	17.4.5	25.1.22	25.7.7(안장)	안장	97	79	59	20
			25.7.14(이장)	이장	11,953	8,577	130	8,447
산청 호국원	24.5.4	-	25.3.24	안장	808	757	710	47
				이장	719	649	311	338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국립묘지 조성공사와 같이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절차 지연은, 계획된 후속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을 발생케 하여 당해연도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은 다음연도 이후에 재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됨.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조성’ 사업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계약 절차 및 공사 진행 등 각 공종에 있어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7. 국립제주호국원⁸⁵⁾: 안·이장 예측치를 정확히 하여 과다한 재 료비 편성을 지양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제주호국원’은 국립제주호국원의 운영·관리 및 안장 업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31억 700만원으로 이 중 30억 3,000만원(97.5%)이 집행되고, 7,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립제주호국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립제주호국원	3,810	3,810	-	△703	3,107	3,030	-	77	3,523
묘역 관리	1,347	1,347	-	△466	881	861	-	20	1,024

자료: 국가보훈부

- 동 호국원은 제주권 안장대상자에게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총 안장기수 10,000기 규모로 제주시에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 12월에 개원한 국립묘지임.

< 국립제주호국원 개요 >

- 위치(면적) : 제주시 노형동 3830(부지면적 273,294.5m², 연면적 7476.11m²)
- 규모 : 안장시설 10,000기 및 부대시설
- 인원 : 총 47명(공무원 7명, 공무원직 40명)
- 조성사업 기간 : 2012년~2021년(10년) / 2021년 12월 개원
- 조성사업 예산 : 517억 4,100만원 (민간대행수수료 14억 2,200만원 별도)

자료: 국가보훈부

85) 세부사업: 국립제주호국원(3250-367)

2) 검토의견

- 국립제주호국원은 2021년 개원 첫 해 집행실적이 저조하였고, 2022년
· 2023년 약 90%의 집행률을 보여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였으나, 2024년도에는 다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 ‘국립제주호국원’ 연도별 집행내역('21~'24)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21년	1,855	-	△188	1,442	225	77.7
2022년	3,756	-	△120	3,395	241	90.4
2023년	3,332	-	△211	3,042	79	91.3
2024년	3,810	-	△703	3,030	77	79.5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제주호국원’의 20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내역사업인 ‘묘역관리’의 집행이 부진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이장 신청 및 실제 안·이장 기수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묘역관리’ 사업은 안장 업무를 위한 비석, 유골함, 봉안명패 등을 구매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국립묘지의 안·이장이 감소할 경우 집행이 부진하게 되는 성격을 갖음.

< ‘묘역관리’ 연도별 집행내역('21~'24)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등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21년	472	△158	204	109	43.2
2022년	1,272	84	1,356	-	106.6
2023년	1,026	41	1,067	-	104
2024년	1,347	△466	861	20	63.9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제주호국원 연도별 안·이장 현황('21~'24) >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신청	완료
합계	759	9	1,579	1,480	776	822	682	662
안장	16	6	185	168	183	176	169	161
이장	730	3	1,363	1,312	581	646	500	501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제주호국원은 매년 예산 편성을 위하여 안·이장 수요를 예측하여 이를 기준으로 ‘묘역관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측치는 실제 안·이장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안·이장 예측치 및 실제 안·이장 현황 >

(단위: 기)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측치	1,000	2,000	955	1,198
안·이장	9	1,480	822	662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2024년 ‘묘역관리’ 예산 편성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까지의 안·이장 신청 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2024년 이장 신청량이 하락함에 따라 집행 부진이 발생

하였고, 2025년 예산부터는 3년 평균 안·이장 신청 현황 통계를 반영하여 ‘묘역관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3년 평균 안·이장 신청 현황 통계는 안·이장 신청량이 급증했던 2022년 건수를 반영하게 되어 과다 측정될 요인이 있고, 현재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이장 신청 현황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경우 여전히 과다 편성의 위험이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이장 건수를 예측함에 있어, 3년 평균 안·이장 신청 현황 통계뿐만 아니라 실제 안·이장 추세 등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8.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⁸⁶⁾: 제대군인 대학교 수업료 지원비율상 향 또는 지원대상 확대 방안 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86억 7,500만원으로 이 중 182억 7,300만원(97.8%)이 집행되고 8,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제대군인수업료지원’ 내역사업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1억 2,100만원 중 5,000만원을 이·전용 감한 예산현액 7,100만원 중 6,300만원(88.7%)이 집행되고, 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제대군인사회 복지지원	18,743	18,743	350	△418	18,675	18,273 [18,273]	88	315	17,310
제대군인 수업료지원	121	121	-	△50	71	63 [63]	-	8	121

자료: 국가보훈부

86) 세부사업: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4160-390)

2) 검토의견

- ‘제대군인수업료지원’ 내역사업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 역량강화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대학입학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일정 생활 수준 이하 가구의 고교취학 자녀 수업료를 지원하려는 것임.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교육지원의 경우 대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금액 대비 125% 이하⁸⁷⁾인 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취학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의 대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대상인원과 집행액이 큰 편차가 없으나,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대상인원과 집행액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자녀 수업료 지원은 대상인원이 2020년 58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집행액은 2020년 8,500만원(인당 평균 147만원)에서 2024년 1,500만원(인당 평균 375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1년도부터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것임.

87) 소득인정액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	2,990,016	4,915,823	6,281,691	7,622,216	8,885,240	10,081,006	11,235,535

< 2024년도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고등학교 수업료			대학교 수업료		
	대상 인원	집행액	평균 지원금액	대상 인원	집행액	평균 지원금액	대상 인원	집행액	평균 지원금액
2020	85	119	1.40	58	85	1.47	27	34	1.26
2021	49	96	1.96	14	53	3.79	35	43	1.23
2022	42	81	1.93	11	45	4.09	31	36	1.16
2023	28	59	2.11	7	32	4.57	21	27	1.29
2024	40	63	1.58	4	15	3.75	36	48	1.33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 모두 지원금액 한도 없음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동 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바, 고등학교 수업료의 집행액은 앞으로도 계속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동 내역사업 중 대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상향하거나 지원대상을 현행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⁸⁾

○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28세로,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바,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⁸⁸⁾ 대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1999년 사업 시작 시기에는 지원 대상이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었고, 2006년부터 현행과 같이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된 바 있음.

19. 제대군인전직지원금⁸⁹⁾: 추계 오류 및 형식적인 예산편성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19억 5,100만원으로 이 중 119억 2,300만원(99.8%)이 집행되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제대군인전직지원금	7,005	7,005		4,946	11,951	11,923	-	29	7,382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 예산의 편성 근거를 보면,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은 1인당 월 지급액이 55만원,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의 경우 1인당 월 지급액은 77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⁹⁰⁾

89) 세부사업: 제대군인전직지원금(4160-391)

90)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함.

< 2024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예산 세부내역 >

구 분	2024년 예산
합 계	70억 500만원
중기복무자	55만원 X 6개월 X 1,705명 X91.5%= 51억 4,800만원
장기복무자	77만원 X 6개월 X 454명 X88.5% = 18억 5,6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이 인상된 2022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는 ‘보상금’에서 각각 9억 1,500만원과 30억원을 이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함. 2024년에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 및 2023년보다 훨씬 큰 금액인 49억 4,600만원을 이·전용 증액함.

< 2022년~2024년 전직지원금 예산액 및 부족분 발생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부족분(B-A)	이·전용 등
2018	2,407	3,529		1,125
2019	3,314	3,313	-	
2020	3,314	3,314	-	
2021	3,314	3,314	-	-
2022	6,172	7,087	915	915
2023	6,172	9,135	2,963	3,000
2024	7,005	11,923	4,918	4,946

자료: 국가보훈부

(단위: 명, %, 백만원)

연도	중기 및 장기 전역자(신청대상)		신청자	신청률	예산액
2019	중기	3,563	1,764	49.5	3,314
	장기	1,039	360	34.6	
2020	중기	3,121	1,631	52.3	3,314
	장기	1,147	403	35.1	
2021	중기	2,821	1,569	55.6	3,314
	장기	834	399	47.8	
2022	중기	2,999	1,916	63.9	6,172
	장기	1,103	559	50.7	
2023	중기	4,061	2,536	62.4	6,172
	장기	1,266	712	56.2	
2024	중기	3,969	2,789	70.3	7,005
	장기	1,677	937	55.9	

자료: 국가보훈부

□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중기 및 장기복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청인원을 2022년 신청자 수보다도 적은 숫자로 계상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전용 등 금액이 필요하게 되었음.

□ 국가보훈부는 2024년 2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통하여 “국가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목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198만원)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상응하게 조정(중기복무자 : 6개월 →7개

월 / 장기복무자 : 6개월→8개월)하겠다고 밝힘. 또한 2024년 3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및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음.

□ 전직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국가보훈부는 지원액 상향에 앞서 현재 기준으로도 매년 과소계상되어 예산부족분이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노력부터 경주해야 할 것임.

□ 또한,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로,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 타 사업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된 타 사업의 목적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그에 맞는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사업⁹¹⁾: 비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 지양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내역사업은 6·25참전유공자의 희생을 일상생활 속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명비를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과 청소년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억 5,300만원 중 3억 4,400만원(52.7%)이 집행되고, 2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 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다음 연도 이월 액	불용 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참전기념행사	2,677	2,677	-	△11	2,666	2,300	298	68	2,177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653	653	-	-	653	344	298	11	353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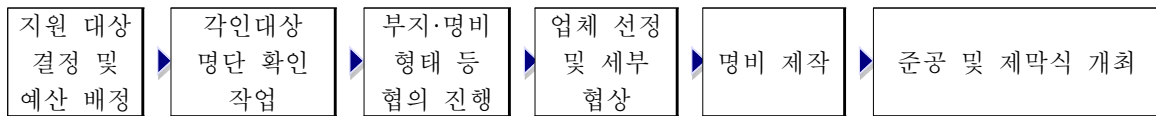
2) 검토의견

□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내역사업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지자체, 학

91) 세부사업: 참전기념행사(4161-420)

교 등과 연계하여 명비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및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⁹²⁾

< 호국영웅 명비 건립 사업 지원 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2016년부터 초·중·고교와 지역 중심으로 지원하여 오다가 2024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교까지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2024년에는 지역별 명비 건립에 2억 6,000만원, 초중고 명비 건립에 9,300만원, 대학교 명비 건립에 3억원 등 총 6억 5,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 그러나, 동 사업의 2024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역별 명비는 당초 계획대로 2개 지역에 2억 3,400만원을, 초중고 명비는 2개교에 계획보다 많은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대학교 명비(3개교 대상 각 1억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음.

92)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2024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		집행	
	편성기준	예산액	집행기준	집행액
지역별 명비 건립	130백만원×2개 지역	260	117백만원×2개 지역	234
초중고 명비 건립	46.5백만원×2개교	93	55백만원×2개교	110
대학교 명비 건립	100백만원×3개교	300	-	-
합 계		653		344

자료: 국가보훈부

□ 대학교 명비 건립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 출신 대학교 37개소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3개 대학교 모두 각인 대상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학 학적부 명단과 보훈부 참전유공자 명단을 대조하는 등의 작업, 학내 의견 수렴, 학사 일정과의 조율 등에도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해명함.

□ 그러나, 위의 사유가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국가보훈부가 수립한 계획과 현재 시점 계획 간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대학교 명비는 기존 학교 명비에 비하여 확인 대상이 많고, 범인 이사회, 건립심의위원회 등을 비롯한 교내 구성원 간 의견 수렴 과

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요구되는 각인대상 명단 확인 작업에 2개월만을 배정하였음.

- 국가보훈부는 2025년 내에 3개 대학교의 명비를 모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2025. 8월 현재 기준 부산대학교는 부지 및 명비의 형태 조차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대학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 >

구분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조선대학교	
	당초 계획	실제 추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각인대상 명단 확인	2024. 7. ~ 9.	2024. 7. ~ 25. 4.	2024. 9. ~ 11.	2024. 9. ~ 25. 3.	2024. 9. ~ 11.	2024. 9. ~ 25. 2.
부자명비 형태 등 협의	2024. 9. ~ 10.	2024. 9. ~ 11.	2024. 12. ~ 25. 1.	2024. 12. ~ 25. 7.	2024. 11. ~ 12.	2024. 11. ~ 12.
건립 업체 선정 및 세부내역 협상 등	2024. 11. ~ 12.	2024. 12. ~ 25. 4.	2024. 12. ~ 25. 2.	2024. 12. ~ 25. 8.	2024. 12. ~ 25. 2.	2024. 12. ~ 25. 4.
건립	2024. 12. ~	2025. 5. ~ 7.	2025. 3. ~ 6.	2025. 9. ~ 11.	2025. 3. ~ 6.	2025. 4. ~ 8.
준공	2024. 12.	2025. 7.	2025. 6.	2025. 11.	2025. 6.	2025. 8.

자료: 국가보훈부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다 정밀히 수립하고,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21.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사업⁹³⁾: 연례적 집행 부진

1) 사업 및 결산 개요

-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내역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으나 유해발굴을 통해 뒤늦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참전유공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억원 중 7,100만원(71.0%)이 집행되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참전기념행사	2,677	2,677	-	△11	2,666	2,300	298	68	2,177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100	100	-	-	100	71	-	29	100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집행 실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음.
- ☐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호국영웅 귀환행사는 참석 대상 유가족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등의 문제로 인해 대규모 귀환행

93) 세부사업: 참전기념행사(4161-420)

사 개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주관 하에 유가족 자택 방문 및 신원확인 통지서 전달 등만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임.

< 호국영웅 귀환행사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주관 행사 추진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3	2024	2025
호국영웅 귀환행사	0	0	0
유해발굴감식단 주관 행사	23	21	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현재의 호국영웅 귀환행사의 사업 수행 방식이 호국영웅 유가족 등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 사업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계기)⁹⁴: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사업 계획 철저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계기)’ 사업은 2024년 월남전파병 60주년을 기념하여 국익을 위해 헌신한 월남전 파병용사에게 제복을 증정하여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존경을 환기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03억 4,500만원 중 179억 1,900만원(88.1%)이 집행되고, 24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계기)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다음 연도 이월 액	불용 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60주년계기)	21,889	21,889	-	△1,544	20,345	17,919	-	2,427	-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단년도 의복 증정 사업이며, 제복(예산액 기준 단가 12만원) 및 모자(예산액 기준 단가 5천원) 등을 증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94) 세부사업: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 계기)(4161-423)

○ 당초 월남참전유공자 17만 5,114명(2024.1. 기준 예측수치)에게 제복을 증정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산출인원은 2023년 1월말 현재 생존 월남참전유공자 18만 63명에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사망률 2.7%를 반영하였음.

□ 본 사업은 예산액 218억 8,900만원 중 179억 1,900만원(81.9%)만이 집행되었는데, 집행 부진 사유는 아래와 같음.

○ 불용액 24억 2,700만원은 사망·불희망 등 제복 미신청(13억 2,700만원), 모자 미제작(9억원), 낙찰차액(2억원) 등으로 구성됨.

□ 첫째, 불희망자 및 미신청자가 다수 발생함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하였음. 국가보훈부가 2023년 예산 편성 시 추계한 2024년 대상자 175,114명과 2024. 1. 1. 기준 실제 대상자 174,513명은 거의 유사하였으나, 실제 대상자 174,513명 중 사망, 본인 불희망, 미신청 등의 사유로 제복을 지급받지 않은 인원이 25,432명(14.6%)이나 발생하였음.

<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사업 관련 현황 >

(단위: 명)

예산상 추계인원	실제인원 (A)	지급인원 (B)	지급률 (=B/A)	미지급인원			
				소계 (=A-B)	사망	불희망	미신청
175,114	174,513	149,081	85.4%	25,432	6,316	7,248	11,868

자료: 국가보훈부

- 신청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월남참전유공자 대상자의 특성상 고령(평균연령 78세)에 따른 사망 및 입원,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미신청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고령으로 인한 사망이 주요원인일 수도 있으나 고령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시에 이미 최근 3년간 사망률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부재로 인한 연락두절, 요양원입소, 병원 장기 입원, 제복의 색상·질 등의 불만족 등으로 인해 미신청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사업추진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신청기간	신청인원	수령인원	집행액
1차	'24.5.20.~6.19.	102,066	102,066	12,120
2차	'24.6.20.~7.31.	27,733	27,733	3,293
3차	'24.8.1.~9.30.	11,576	11,576	1,375
4차	'24.10.1.~12.13.	7,706	7,706	915
기타 (해외배송료 등)	-	-	-	216
합 계		149,081	149,081	17,919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적 감사를 표명하고 보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개선을 도모하

기 위해 6·25참전용사에게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전체 제복지급 대상인원 4만 3,794명 중 신청인원은 82.6%인 3만 6,176명에 불과하였음.

- 2023년 ‘제복의 영웅들’ 사업의 집행 저조를 반면교사로 삼아 2024년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사업의 사업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 국회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유사 사업인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제복 증정 사업(내역사업: ‘제복의 영웅들’)과 관련하여, 대상인원 43,794명 중 신청인원이 36,176명(82.6%)에 불과하였으므로 국가보훈부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미인지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었음에도 2024년 본 사업에서 미신청자가 다수 발생하였음.

< 제복 증정 사업 비교 >

구 분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2024)	제복의 영웅들 사업(2023)
목 적	월남전참전 60주년 기념 유공자에 대한 예우 표시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 유공자에 대한 예우 표시
사업내용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제복 증정	6·25참전유공자에게 제복 증정
예산안	218억 8,900만원	52억 5,500만원
1인당 단가 (품목)	12만 5천원 (상하의 및 넥타이, 모자)	12만원 (상하의 및 넥타이)
대상인원	175,114	43,794명
수행방식	직접수행 (용역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후 차수별로 제작·배송 수행)	(좌동)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제복의 영웅사업 사업추진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신청기간	신청인원	수령인원	집행액
1차	'23.4.10~4.29.	22,290	22,290	2,626
2차	'23.5.1~7.5.	6,192	6,192	768
3차	'23.7.6~10.31.	5,314	5,314	741
4차	'23.11.1.~12.20.	1,540	1,540	184
기타 (해외거주 등)	'23.8.10~12.31.	840	840	153
합 계		36,176	36,176	4,472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모자 예산액의 경우 단체에서 희망하지 않아 발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음. 참전용사의 상당수는 대한민국무공수

훈사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 단체는 각자의 특성을 반영한 모자 유지를 희망하여 각 단체 모두를 아우르는 통일된 모자 제작에 반대하여 중국에서는 모자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함

<단체별 모자 비교 현황>

		
대한민국무공수훈사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인원을 보다 정확히 추계하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3. 보훈정책개발⁹⁵⁾: 연례적인 이월이 반복 중인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정책개발’ 사업은 중장기적 정책개발을 위해 보훈정책 연구개발, 연구용역 및 보훈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보훈정책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1억 9,500만원 중 17억 1,600만원(78.2%)이 집행되고, 4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가보훈부는 2015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등을 조사하고 보훈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바,⁹⁶⁾ 실태조사는 예산액 8억원 중 4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200만원을 이월함.

< 2024년도 보훈정책개발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훈정책개발	2,078	2,078	117	-	2,195	1,716	416	62	1,278
실태조사	800	800	-	-	800	478	322	-	-

자료: 국가보훈부

95) 세부사업: 보훈정책개발(7167-425)

96)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와 별개로 2022년부터 국민의 인식 및 태도,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훈문화 창달의 주요정책 수립을 위해 ‘보훈문화의식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

2) 검토의견

(1) 연례적인 이월이 반복 중인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 보훈정책개발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부진하며 연구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2024년에는 4억 1,600만원이 이월되어, 최근 4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2021~2024년 보훈정책개발 사업의 연구용역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용역 내용	기간 연장 사유	이월액
2021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등 3건	사업 수행기관 선정 지연, 대면조사 지연에 따른 일정 순연 등	151
2022	호국보훈공원 기본구상 연구	유찰에 따른 재공고 실시, 용역내용 보완 필요 등	19
2023	위탁병원 제도개편 방안 연구 등 5건	유찰에 따른 재공고 실시, 데이터 구축 및 반출 승인에 따른 지연, 기초자료 수집으로 인한 추가 소요시간 필요 등	117
2024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등 4건	유찰에 따른 재공고 실시, 면접조사 협조율 저조로 현장조사 지연 등	416

자료: 국가보훈부

□ 이는 연구용역의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기가 늦어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24년의 경우 전체 연구과제 24건 중 11건이 하반기에 발주되었으며, 그 중 2건은 12월에 발주되었음.

○ 범위를 최근 3년으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2022년 ‘호국보훈공원 기

본구상 연구’, 2023년 ‘특수작전 참여자 참전유공자 포함 방안 연구’ 등의 경우 10월에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음.

<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계약 시기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상반기	1월						
	2월	1					1
	3월	2	2	4		2	13
	4월	1	1	1		3	12
	5월		2	2	4	4	16
	6월	2	3	2	5	4	16
	소계	6	8	9	9	13	54
하반기	7월		1	4		3	8
	8월	1			1	4	6
	9월	1		1	6	1	9
	10월			1	6	1	8
	11월			1	6		7
	12월					2	2
	소계	2	1	7	19	11	40
계		8	9	16	28	24	9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국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도 이월 및 불용 발생에 대하여 ‘연구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 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받은 바 있으나, 2024년에는 연말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12월 16일과 12월 24일에 각각 2,600만원과 4,900만원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 12월 16일에 계약체결한 ‘제대군인센터 조직체계 및 운영 개선 연구’는 계약기간이 2025년 7월 25일까지며, 12월 24일에 계약체결한 ‘보훈의료 진료비 예산 추계 개선 연구’는 계약기간이 2025년 5월 23일까지임.

< 제대군인센터 조직 체계 및 운영 개선 연구용역 추진 현황 >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2024. 10. ~ 11.	2024. 10. ~ 12.	제안서 평가 등 계약처리절차에 따른 지연
계약기간		2024.12.16. ~ 2025.07.25.	
연구용역 착수	2024. 11.	2024. 12.	계약지연에 따른 순연
중간보고	2025. 2.	2025. 3.	계약지연에 따른 순연
최종보고	2025. 4.	2025. 6.	과업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기간 연장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추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현황 >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2024. 11. ~ 12.	2024. 11. ~ 12.	
계약기간		2024.12.24. ~ 2025.05.23	
연구용역 착수	2024. 12.	2024. 12.	
중간보고	2025. 2.	2025. 3. ~ 2025. 4.	보훈병원별 진료비 기초 자료 취합 및 DB 구축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구기간 지연
최종보고	2025. 5.	2025. 6.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최종보고 순연

자료: 국가보훈부

- ☐ 국가보훈부는 향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초에 연구용역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과제를 확정하고, 연구용역 발주는 가급적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용역 중간점검 매뉴얼을 확립하는 등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한편,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이로 인한 응답률 저조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여 연구기간이 길어진 결과 이월이 발생한 측면이 있음.

○ 당초 추진일정은 계약을 2024년 5월에 체결하고, 조사 결과보고서는 2024년 12월에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응답률 저조로 실태조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변경계약을 2024년 12월에 체결하고 결과보고서는 2025년 3월에 제출받음.

< 생활실태조사 당초 추진 일정과 실제 추진 경과 >

당초 추진 일정	실제 추진 경과
(계약일) 2024.5.3.	(변경계약일) 2024.12.2.
(납품기한) 2024.12.31.	(납품기한) 2025.3.31.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로 한 생활실태조사 표본가구 수는 1만 가구였는데, ① 고령자의 경우 건강 등의 문제로 많은 수의 문항에 응답할 여력이 없었던 점, ② 제대군인의 경우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관계로 주간 대면조사에 응답하기 곤란한 점, ③ 그 외에 재산 등의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경향 등으로 인해 실태조사 응답률이 저조(60%)하였고, 그 결과 4천 가구 가량의 표본이 부족하

여 조사가 지연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생활실태조사 결과 연구보고서에서도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0세가 넘어 조사표의 문항 수와 난이도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조사 거부와 항목 무응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2027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서는 필수적인 조사문항은 살리되 응답자에게 너무 민감하거나 정책적 함의가 크지 않은 항목들은 삭제하거나 간소화고, 행정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들은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한편 모바일조사 등 비대면 조사의 비중을 늘리는 등 응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III. 보훈기금

1.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⁹⁷⁾: 후순위 투찰업체와의 계약 체결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는 호국보훈의 달, 명절, 연말 등의 시기에 국가유공자 등을 위문하고,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대상을 시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3억 2,000만원 중 12억 9,300만원(98.0%)이 집행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1,320	1,320	-	-	1,320	1,293	-	27	1,320
국가유공자 등 위문	966	966	-	-	966	963	-	3	966
재해위로금	270	270	-	-	270	247	-	23	270
보훈대상 시상금	84	84	-	-	84	83	-	1	84

자료: 국가보훈부

97) 세부사업: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2160-430)

2) 검토의견

□ ‘국가유공자 등 위문’ 내역사업은 호국보훈의 달, 추석, 연말 등의 시기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통령, 장관 위문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9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국가보훈부는 2024년에 8건의 위문품 구매 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 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여성기업 대상⁹⁸⁾)임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소액수의견적⁹⁹⁾¹⁰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수의로 계약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시점 이후에 추진한 계약 중 “추석 계기 장관 위문품 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소액수의견적을 실시하였음.

9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00)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사실상 가격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음.

< 2024년 ‘국가유공자 등 위문’ 내역사업 계약체결 내역 >

건 명	위문품 또는 사용내역	계약 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원)	수의계약 사유
호국보훈의 달 대 통령 위문품 구매 (태극·을지 무공수 훈자)	홍상점 듀얼세트	수의	(주)상훈유통	9,0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호국보훈의 달 중 앙보훈병원 장관 위문품 구매	홍삼원세트	수의	(주)상훈유통	116	
호국보훈의 달 대 통령 위문품 구매 (보훈병원)	특산물 선물세트	수의	세종B&P	96,840	여성기업과 체결
호국보훈의 달 대 통령 위문품 구매 (위탁병원)	특산물 선물세트	수의	세종B&P	171,936	여성기업과 체결 *소속기관별 계약 진행
호국보훈의 달 장 관 위문품 구매 (보훈복지시설)	홍삼원세트	수의	(주)상훈유통	46,632	*소속기관별 계약 진행
호국보훈의 달 장 관 위문품 구매 (생계곤란 및 1급 중상이자 등)	황태 선물세트	수의	혜인건강	423,024	*소속기관별 계약 진행
추석 계기 장관 위문품 구매	한과 선물세트	수의	세종B&P	97,948	여성기업과 체결 *전자조달 (소액수의견적)
연말 계기 장관 위문품 구매	홍삼절편세트	수의	혜인건강	44,070	여성기업과 체결

자료: 국가보훈부

□ 이 계약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24년 추석 계기 장관 명의 위문품
구매 소액수의견적 공고’를 2024년 8월 23일에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
재하였고, 8월 29일에 개찰하였으며, 9월 3일에 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런데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165개였고, 이중 63개¹⁰¹⁾ 업체가 적격 업체로서 낙찰하한선¹⁰²⁾ 이상의 가격을 제출하였는데, 국가보훈부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아닌 적격업체 중 53번째 순위(가격순위)로 응찰한 업체임.

○ 해당 업체는 2023년에도 동일한 계약을 소액수의견적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던 업체이며, 2024년 상반기에 체결하였던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 위문품 구매계약의 상대 업체이기도 함.

□ 이와 같이 후순위 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적격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1순위 업체가 포기서를 제출(2024.8.30.)함에 따라, 과업수행의 시급함¹⁰³⁾을 고려하여 포기서를 제출한 1순위 업체를 제외한 62개 적격업체에 9월 2일까지 과업수행¹⁰⁴⁾ 가능 여부 회신을 요청하였고, 해당 기한 내에 회신한 3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힘.

○ 국가보훈부는 그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¹⁰⁵⁾에 따라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최저

101) 자격미달 58개, 예가초과 1개, 낙찰하한선 미달 43개 업체 제외(자료: 국가보훈부)

10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르면 물품·용역의 소액수의계약 낙찰하한선은 예정가격의 88%임.

103) 국가보훈부는 대상자에게 추석 계기 위문품 전달을 위해 2024.9.3까지 업체 선정이 필요했다는 입장임.

104) ① 위문품 구매, ② 장관 감사카드 제작·동봉, ③ 위문품 별도 포장 및 배송

1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생략)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는 입장임.

< 과업수행 능력 회신업체 내역 >

순위	업체명	투찰금액	투찰률	과업수행여부	비고
105 (53)	세종B&P	97,948,400	90.057	과업 가능(기한내 회신)	낙찰자
111 (58)	00컴퍼니	106,550,000	97.966	과업 가능(기한내 회신)	
119 (62)	(주)000 0 000	108,350,000	99.621	과업 가능(기한내 회신)	

※ () 적격업체 중 투찰금액 순위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견적서를 제출하여 소액수의견적에 응한 업체들에게 단 2일의 기한을 부여하며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것은 법령이 정한 경쟁절차 외에 별도의 응모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이에 응한 업체들 중에서만 제시 가격을 비교하여 계약상대방을 선정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국가보훈부가 제시한 과업 이행능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기한을 충분히 부여하여 선순위 업체로 하여금 과업 수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필요 시점에 임박하여 공고 및 선정 절차를 실시¹⁰⁶⁾한 발주기관

의 사정이며, 촉박한 시간 내에 회신을 요구하면서 이를 계약 상대방 선정의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은 발주처의 사정을 이유로 참여업체 간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집행 방식임.

□ 결과적으로, 이처럼 회신 업체들 간 비교를 통해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액수의견적을 실시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선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¹⁰⁷⁾에 위배되는 집행으로 볼 수 있음.¹⁰⁸⁾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정당한 절차의 이행 없이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질서의 공정성 및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106) 이행 시기로부터 지나치게 가까운 시점에 공고를 시행하는 것도 새로운 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존재함.

107)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108) 국가보훈부는 1순위 업체가 아닌 53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9,572만 3,800원보다 222만 4,600원 높은 9,794만 8,400원에 계약하였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 참전명예 수당 지급단가 인상 필요	○ [지적사항]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인 참전유공자는 고연령으로, 그 지급 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의료수요는 높아 의료비는 연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의료비 부족분(보훈병원진료 부족분, 위탁병원진료 부족분, 제대군인의료지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이·전용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할 것	○ 참전유공자 분들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속 인상하고 있으며 '25년에도 3만원 인상하였음 - 참전명예수당 '22년 35만원, '23년 39만원, '24년 42만원, '25년 45만원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 의료비 증가율 추계 반영 필요	○ [지적사항]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인 참전유공자는 고연령으로, 그 지급 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의료수요는 높아 의료비는 연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의료비 부족분(보훈병원진료 부족분, 위탁병원진료 부족분, 제대군인의료지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이·전용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예산편성 시 의료비 증가율을 추계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 의료비 증가율을 반영하는 등 진료 인원 및 단가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적정 규모의 진료비 예산을 산출하고,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소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25년도 2차 추경시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추가 편성으로 최근 의료비 증가 추세를 '25년 예산에 반영함 * '23~'24년 평균 결산액 대비 부족분(844억원) 증액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3) 명확한 보상정지 처리기준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보훈대상자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범죄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등 제재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와 같이 명백히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에도, 보상정지를 위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요청이 누락된 경우가 발생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 정지 제도의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상 정지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할 것	○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정지 업무 처리 기준 마련(등록관리예규 개정 완료) - 품위손상행위로 인한 보상정지 심의 시, 실행기간 동안 보훈급여금이 정지되었음을 고려하도록 하여 제재의 형평성 확보 - 공무집행방해죄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정지를 위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요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조치완료일 : 2024년 7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4) 사업 관련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지적사항]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은 회계연도 개시 전 직제 증원('22.12.13.)에 따라 ‘전문경력관 다군’이 10명 증원되어, 심사지원 전문인력 지원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4억 5,6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직제개정과 관련된 부처 간 협의가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시작('22년 9월)되었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었다면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 사업 관련 절차 진행을 국회에 적시 설명·보고함으로써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23년 2월 전문경력관 10명을 증원함에 따라 심사지원 전문인력 충원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 '2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해당 사업을 삭제하여 예산불용을 사전에 방지하였음 ○ 향후 사업계획 시 예산심의 전에 부처간 협의를 실시하여 사업의 중복여부 파악 및 다른 방식으로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필요시 사업 관련 절차 진행을 국회에 설명·보고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5) 중장기 인력 운용 계획 수립 필요	○ [지적사항]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의 심사지원 전문인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이 부재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 관련 시설 전반의 인력 운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것	○ 국가유공자 등 적기 보상 및 예우를 위한 심사기간 단축 대책으로 보훈심사 전문인력(공무원) 증원*한 바 있음 * 전문경력관(다군) 10명('23년 2월) ○ 보훈심사 전문인력 양성 및 운용을 위해 ‘전문경력관 전문교육 계획*’을 수립('23년 2월)하고 심사안전 작성교육, 의학·법률특강을 실시하는 등 심사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함 * 전문경력관(다군) 신규자 전문교육 계획 시행(보훈심사위원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6)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 개선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 [지적사항] “등록관리”의 내역사업인 “증서관리” 중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내내역사업의 계획 대비 발급률이 36.6%로 저조하고 2024년 1분기와 2분기의 발급률 역시 저조함. 이로 인해 사업 종료 예정일인 2024년 말보다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예정된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연령별 분산발급 계획을 수정하였고, 보훈관서별 미교체자 대상 개별안내 등을 통해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선 조치 후 전월 대비 발급률 69% 증가 ○ 조치완료일 : 2024년 10월 2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7) 국가보훈 부의 보훈단체 에 대한 월권 행사 방지 대책 수립 필요	○ [지적사항] 2023년 5월 국가보훈부 간부가 3단체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고,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관리·감독권과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 등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강요한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월권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것 및 정부안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되살리도록 노력할 것	○ 국가보훈부는 임의로 보훈단체에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강요하지 않음 - 예산삭감 및 보훈단체 관리 감독권 행사를 하지 않으며, '25년도 예산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광복회 예산 증액에 동의하였고, 정무위원회 심의 시 증액 반영되었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1월 19일
(8) 도시철도, 광역철도 감면 이용액 보조 필요	○ [지적사항] 도시철도, 광역철도 감면 이용에 대해 보조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사업 중단이나 축소가 우려됨 ○ [시정요구사항] 도시철도, 광역철도 감면 이용액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재정당국과 관련 예산을 반영을 위해 협의해 나가겠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5월 31일
(9)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의료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대상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확대하였음 - 병상 확대예산을 2024년에 13억원, 2025년에 25억원 기 반영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0) 철저한 보조금 관리 필요	○ [지적사항]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조금을 교부하고 실적보고서 미제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지적사업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사업은 2023년 종료하여 정산을 마무리하였음 - 2023년 보조금 정산보고(2024.7.1.), 심사완료(2024.7.3.) - 또한, 보조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2022년 및 2023년 보조금 실적·정산보고서를 지연 제출함에 따라 2024년 보조금 교부 시 일부금액을 삭감하였음(2024.10월.) ○ 향후에 추진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산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0월 17일
(11) 학습보조비 연례적 부족 개선 필요	○ [지적사항] '23년 예산 편성 근거를 보면 8,390명에게 124~718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실제 지급 인원은 9,144명임. 그런데 과거 지급 인원을 보면 '20년 9,722명, '21년 9,065명, '22년 9,025명이었음. 실지급 인원이 9,000명 이하였던 적이 없었는데 8,390명으로 추계한 이유는? 연례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23년은 전년보다 부족액이 증가하였음에도 '24년 예산은 '23년보다 줄어든 상황임. 부족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감액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시정요구사항]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학습보조비 부족분을 반영한 '25~'29년 중기사업계획 제출 - 최근 3년간 지급인원 증가*에 따른 실제 소요액 증액 * ('22년) 9,025명, ('23년) 9,144명, ('24년) 9,448명 ○ 조치완료일 : 2025년 1월 31일
(12) 학습보조비 연례적 부족 개선 필요	○ [지적사항] 지급 단가 인상 필요 - 교육급여 비교 : '24.3월부터 적용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461천원, 중학생 654천원, 고등학생 727천원 (1인당 연1회) ○ [시정요구사항] 교육비 지급 단가를 인상하	○ 학습보조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25~'29년 중기사업계획제출 - 10년간 동결된 지급 단가를 100% 인상 * 중학교 248천원, 고등학교 372천원, 대학교 472천원, 특수 718천원 ○ 조치완료일 : 2025년 1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도록 노력할 것	
(13) 콘텐츠 구축사업 관련 반복적 수의계약 지양 필요	○ [지적사항]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중 “독립기념관 콘텐츠 구축” 내역사업은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 계약 모두 매년 입찰업체 부족(단일 응찰)으로 유찰된 후 재입찰 공고 없이 입찰 참여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제안 설명회 개최 등 경쟁입찰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24년도 콘텐츠 구축사업 공고 시(’24.7.5.) 다수 업체의 경쟁입찰 참여 유도를 위해 과업범위를 간소화·명확화하여 제안요청 조치하였음 → (결과) 5개업체 입찰, 기술평가 및 가격협상 후 계약체결(’24.8.1.) ○ 조치완료일 : 2024년 8월 1일
(14) 독립기념 관 연구 기능 강화 필요	○ [지적사항]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 및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 수집·보존·조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함에도, 독립운동가 발굴 및 연구사업보다 행사·홍보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자체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료를 보다 상세히 국회에 제출할 것	○ 2024년도 국회 결산 공통요구자료 제출시 독립기념관 수입 및 지출내역 상세 자료 제출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2월 28일
(15) 일회성 홍보 사업 지양 및 본연 업무 집중 필요	○ [지적사항]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면서 보훈 문화 확산 사업의 예산이 ’23년 전년 대비 5배 넘게 증액(31.7억→172.7억)되었는데, 예산 급증 과정에서 토크콘서트, 퀴즈 경연대회 등 일회성 위탁사업으로 10억원이 넘게 사용된 것은 6.25자녀수당 예산의 부족분 등을 고려했을 때 우선 순위 설정이 잘못된 예산 집행이었다고 볼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일회성 홍보 사업에 지나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유공자 예우 등 국가보훈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	○ 관련 예산을 효율적 편성하고 집행하였으며, 일회적인 홍보 사업이 아닌 내실 있는 사업으로 질적 향상 추진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16) 국외 탐방국 다양화	○ [지적사항] ‘국내외사적지탐방’은 청소년, 청년, 교사 등에게 국내외 사적지 탐방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중장기계획을 수립(’24.1월)하여 국외사적지 탐방의 탐방국가 다양화를 모색하고, ’24년 탐방국가를 미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대책 및 홍보 강화 필요	사업으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미국, 멕시코,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의 부재로 탐방국의 대부분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치우쳐 있고, 2023년도 선발인원 경쟁률은 1.74:1로 저조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국외 탐방국의 다양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사적지탐방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국 하와이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적지 탐방을 실시함(선발인원 경쟁률 14.6:1) ○ 국내외사적지 탐방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외사적지 탐방에 대한 다큐 프로그램 제작 및 국내·외 TV방영, SNS 게시물 업로드 등 홍보 강화 * (국내) KBS1, 다큐ON('24.9.15.) * (국외) 미주 TAN TV, History Travel HAWII('24.11.28.) *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게시물 업로드(누적조회 373백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17) 적극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예산편성 필요	○ [지적사항] 'LA홍사단 건물 매입'은 '현충시설건립사업'의 세사업 중 하나인데, 국가보훈부는 2023년 2월 LA 홍사단 단소를 295만불에 매입하였음. 국가보훈부는 2023년 11월 LA홍사단 단소 활용방안 수렴을 위해 미주 한인 대상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나 일부 한인 단체들과의 소통 부재를 비판하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LA홍사단 단소 착공 전까지 많은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것	○ '24년 1월 LA 현지에서 한인단체장, 현지교민 등 공청회 및 기자 간담회 개최 - LA한인단체장들을 초청하여 홍사단 단소 활용방안 관련 의견 수렴 및 각 단체별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기자 간담회에서 홍사단 단소 매입이후 후속조치 사항, 보훈부 정책방향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여 불필요한 억측 해소(미주 조선일보 등 언론사 기자 13명 참석) ○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25년 적정예산을 반영하였고, 향후에도 효과적인 활용방안 도출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18)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부적정 사용 재발 방지 필요	○ [지적사항] “현충시설관리” 중 “현충시설 AI 디지털휴먼”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보훈인물 AI 디지털 휴먼 HW구입”)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3억 1,400만원 및 타 내역사업 예산 8,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	○ 면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동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화 사업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등 부적정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9)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필요	○ [지적사항] “현충시설관리”는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방점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예산의 절반을 동 사업 중 안중근의사기념관 및 매현윤봉길의사기념관 등 대표 현충시설 기념관 인물들을 AI 디지털휴먼으로 제작하는 내역사업인 ‘현충시설 AI 디지털휴먼’에 소진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과목구조 개편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0)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주지중화사업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진출입로에 3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을 지중화하려는 사업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그린뉴딜지중화사업”을 통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원 규모로 전주지중화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지중화사업”에 대한 인지 부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함. 추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동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 2024회계연도 전액 불용 사업 없음 ○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및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적 노력 강화 - 전직원 대상 ‘예산 집행 관리 철저’ 문서 시행 등 교육 (‘24.9월, 12월)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1)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 제고 필요	○ [지적사항] 공무직 인건비 23억 7,200만원 중 9,300만원을 불용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 '24년 12월 말 기준 공무직 결원 충원 ○ 공무직 인력 운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공무직 채용을 서두르는 등 인건비 미집행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강화 - 공무직 근로자 관리자 대상, 인력 운영 상황 상시 점검 및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신속한 채용 추진 등 인건비 불용 최소화 노력 교육(‘24.9월, 12월) - 공무직 근로자 직종별 정원 일부 조정(‘24.9월)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2) 국내 독립기념 행사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의 내역사업인 “국내독립기념행사지원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국내 독립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5억 3,200만원 중 22억 7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2,500만원이 불용됨 - 2023년도 국내 독립기념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함 ○ [시정요구사항] 국내 독립기념행사의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연초 ‘보훈기념사업 보조사업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결정 후 사업수행 단계에서 민간단체의 내·외부 상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취소되었으나,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소속기관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안내와 집행·정산관리 실시, 보조사업자와의 유기적 연락체계를 유지 및 행사취소 시 후순위 보조사업자 사전 선정으로 집행실적 제고하여 '24년 보조금 불용률 0% 달성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3) 보조사업 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지적사항] 독립기념행사 관련하여 회계부적정 및 목적외 사용, 기부금 리베이트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2023년도에 실시한 국가보훈부 민간경상보조사업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회계부적정 및 목적외 사용이 47건 (45,224,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독립기념행사지원 단체의 기부금 리베이트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10건, 39,910,000원)과 관련해서는 수사 의뢰가 진행된 바 있음 ○ [시정요구사항]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집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구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관리·감독 강화) 외부 전문업체 용역계약을 통한 민간단체 보훈기념행사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여 전반적인 행사 추진사항을 점검 후 모니터링 평가로 사업 적정성을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 감액, 미지원 등의 조치로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23년) 1천만원 이상 지원사업 → (24년) 3백만원 이상 지원사업 ○ (시정조치방안 강구)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단체인 (사)향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의거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조치 예정 * '25.1.13. 선고 공판 예정 ○ 조치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24) 예산 편성 목적과 사업	○ [지적사항]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 중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후손찾기 강화” 내역사업은 후손확인위원회 증회 수당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예산 대	○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포스터 관련 비용이 부족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후손찾기 강화” 내역사업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 필요	비 9,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중 50%에 달하는 4,500만원을 예산안 편성 당시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홍보” 내역사업의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세목조정하여 사용하였고, 300만원은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조정하여 사용하였음 - 후손확인위원회 증회 등을 위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위원회의 심사 횟수 및 심사 인원의 경우 2022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향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집행을 위해 증액된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5년 예산에 달력·포스터 관련 비용을 1억원 증액하여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5) 공적심사 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 [지적사항]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 중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공적심사위원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광복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조건도 완화하였으며, 법적 근거 없는 특별 분과위를 신설하는 등 친일이력인사 재평가를 위하여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향후 일정) 개정훈령안 마련('25. 8월초) →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25. 8월말까지) → 훈령 시행('25.8월말) ○ 조치완료일 : 2025년 8월 31일
(26) 국립3·15 묘지 시설의 조속한 개선 필요	○ [지적사항] “국립3·15묘지” 중 “시설보수공사”의 예산 18억 8,000만원 중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예산은 18억 7,000만원이었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 지연에 따른 이월액 9억 6,4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포함하여 국립3·15묘지의 시설을 조속히 개선할 것	○ 사업 지연의 주요인이었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 완료 - 안전한 운영을 위한 시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 공공개방 예정('24년 1월)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7) 적정한 제대군인 전직지원	○ [지적사항] 당초 예산액은 신청자 2,086명을 전제로 6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금 지원자가 3,248명으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30억원을 보상금에서	○ 전역자 증감, 전직지원금 신청자 증감 등 분석으로 적정 예산을 반영한 25-29년 중기사업계획 제출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금 예산 편성 필요	이·전용하여 집행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전직 지원금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편 성에 노력할 것	○ 조치완료일 : 2025년 1월 31일																					
(28) 낙찰차액 부적정 사용 방지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6·25전쟁 정전70주년 기념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목) 낙찰차액 4억 6,3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을 당초 계획 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임의로 집행함 - 동 사업의 낙찰차액 4억 6,3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2023 서울국제 마라톤 걸 제93회 동아마라톤 연계 정전70 주년 사전 범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낙찰차액을 당 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에 임의로 집행하지 말 것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원칙에 어긋나지 않도 록 철저한 사업관리 * 유엔군 참전 및 정전70주년 기념사업은 '23회계 종료되어, '24회계연도 낙찰차액 사용내역 없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9) 적극적 사업 홍보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제복의 영웅들사업' 의 예산현액 52억 5,500만원 중 44억 7,200만 원이 집행되고 7억 8,300만원이 불용됨 - 제복지급 대상인원 4만 3,794명 중 신청인 원은 3만 6,176명으로, 신청률이 82.6%에 불 과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향후 유사 사 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미인지로 인해 보훈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24년 월남전참전 60주년계기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사업' 민원 편의성 제고, 홍보 다각화, 진행사 항 점검 및 신청 독려 등 철저한 사업 관리 추진 ※ (6·25) 지급대상 인원 43,794명의 82.6%인 36,176명 신청, (월남) 지급대상 인원 175,114명의 85.1%인 149,081명 신청 ① 신청방법 다양화 및 민원 편의성 증대 <table border="1"> <thead> <tr> <th>추진사항</th><th>24년</th><th>23년</th></tr> </thead> <tbody> <tr> <td>사전 신청 접수</td><td>1~3월 운영</td><td>미운영</td></tr> <tr> <td>콜센터 회선</td><td>120회선</td><td>20회선</td></tr> <tr> <td>인터넷·모바일(신청)</td><td>운영</td><td>미운영</td></tr> <tr> <td>신청 집중시기 분산</td><td>5부제 운영</td><td>"</td></tr> <tr> <td>콜백서비스</td><td>운영</td><td>"</td></tr> <tr> <td>접수결과 문자 안내</td><td>"</td><td>"</td></tr> </tbody> </table> ② 신청 홍보 다각화 - 안내문 및 FAQ 표준안 전국 배포(5월, 유 관단체·소속 기관) - 홈페이지 및 SNS 홍보(연중) ※ 홈페이지 1일 평균 15,299명 방문, SNS 134,692명 구독('24.12.13. 기준 인스타 41,000건, 페이스북 93,692건)	추진사항	24년	23년	사전 신청 접수	1~3월 운영	미운영	콜센터 회선	120회선	20회선	인터넷·모바일(신청)	운영	미운영	신청 집중시기 분산	5부제 운영	"	콜백서비스	운영	"	접수결과 문자 안내	"	"
추진사항	24년	23년																					
사전 신청 접수	1~3월 운영	미운영																					
콜센터 회선	120회선	20회선																					
인터넷·모바일(신청)	운영	미운영																					
신청 집중시기 분산	5부제 운영	"																					
콜백서비스	운영	"																					
접수결과 문자 안내	"	"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영웅 제복’이 준 선물 노병의 특별한 하루” 등 언론보도(연중) ※ 총 46회 주요 언론사(KBS, 동아일보 등) 게재 - 민간전광판(공공부문 매체협업) 홍보(’24.7월) ※ 총 3,348회(1일 평균 108회), 서울 등 전국 41개소 옥외 전광판
		- 나라사랑 신문 홍보(’24.1월~11월, 7회 게재) ※ 총 3,414,792회 표출(월 평균 495,364명 구독) - 5개 보훈 병원 內 전광판 홍보(’24.6월~7월) ※ 총 51,944회 표출(일 평균 1,180건) ③ 진행사항 점검 및 신청 독려 - 미신청자 대상 신청 독려 · 유선안내(6월~11월) : 총 404,478건(일 평균 3,111건) · 우편 안내(8월~10월) : 총 30,931건 안내 (1차 13,270명, 2차 9,946명, 3차 7,715명) - 재외공관 협조 해외 거주 대상 신청 안내(홈페이지 등) ※ 미국(4,232명), 캐나다(394명), 호주(193명), 독일(184명) 대상 ○ 조치완료일 : 2024년 11월 29일
(30) 처분부운 영 사업의 적정한 집행 필요	○ [지적사항] 배정된 예산(약 33억 원)의 2배 수준(약 6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이·전용으로 본부운영비를 과다 사용하였으며, 5억 5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 시킴 - ①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을 위해 예비비 28억 4,500만원 증액, ② 공공요금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사업에서 1억원 자체이용 증액, ③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사업에서 2억 7,000만원 자체전용 증액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처분부운영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과도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을 지양할 것	○ 본부운영 사업예산의 추가소요액을 최소한으로 산정하여 이·전용을 실시함으로써 불용액 최소화 * ’24회계 별도의 예비비 배정(집행) 없었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31) 보상금 등 예산을	○ [지적사항] 배정된 예산(약 33억 원)의 2배 수준(약 6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이·전용으로 본부운영비를 과다	○ ’24회계 보상금 등의 예산을 본부 기본경비 등 예산으로의 이·전용 내역 없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본부운영 비 등으로 이·전용 지양	사용하였으며, 5억 5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 시킴 - ①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을 위해 예비비 28억 4,500만원 증액, ② 공공요금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사업에서 1억원 자체이용 증액, ③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사업에서 2억 7,000만원 자체전용 증액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등 보훈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을 본부 운영이나 기본경비 등의 예산에서 이·전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32) 연구용역 관리 및 적정예산 편성 필요	○ [지적사항] 2023년도 예산현액 12억 9,700만원 중 1억 1,700만원이 이월, 6,500만원이 불용됨. 이월액은 연구용역 계약 지연(무응찰 등), 연구기간 연장(현안반영 등 연구 심화) 등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관리 부실로 추정됨. 불용액이 6,500만원 발생했음에도 2024년 예산은 20억 7,800만원이 편성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 부처 차원의 연구용역사업 종합적 관리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1.10.) - 계약지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월 초 과제선정 및 예산배정 완료하고 2.10.까지 전 과제 조달입찰 발주 안내 - 매월 과제 진행사항 점검 및 추진 독려로 관리강화 - 과제별 담당관(부서장) 지정하여 성과 및 활용도 관리 ○ 조치완료일 : 2025년 1월 10일
(33) 국가계약 법령 준수 및 경쟁입찰 을 위한 노력 필요	○ [지적사항]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품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나누어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 추석 장관 위문품 및 연말 장관 위문품 두 건의 계약건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소액수의견적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 발생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위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024년 추석 위문품 구매 계약(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시 소액수의견적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 차년도 호국보훈의달 위문품 계약은 경쟁입찰 및 나라장터 구매 등을 통해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분기 초에 구매 계약 추진 * '24년 연말 위문품 구매 계약(5천만원 이하)은 경쟁입찰 비대상 ○ 조치완료일 : 2024년 8월 21일
(34) 연간 반복적	○ [지적사항] 노인생활지원용품 구매 시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건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쟁이 가능한 한	○ '24년 노인생활지원용품 전품목 조달계약을 통해 진행 완료함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구매 물품에 대한 경쟁입찰 및 과도한 국외출장 경비 집행 사례 재발 방지 필요	건의 입찰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집행임 ○ 복지사업운영” 사업에 편성된 국외출장을 수행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되는 집행이며, 차량임차료를 임차료(210-07) 비목이 아닌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한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간 반복적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과도한 국외출장 경비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국외출장의 목적은 일본의 다양한 요양시설 및 재택개호(지원)서비스 기관등을 방문하여 고령 대상자 관리 체계, 특화 서비스 제공 실태 등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이었으며 출장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ICT 디지털케어(반려로봇) 서비스 실시, 보훈복지시설 재활로봇 및 간병로봇 도입 등 첨단화 추진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였음 - 차량임차료를 임차료(210-07) 비목이 아닌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한 것은 예산 회계 운영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3월 12일
(35) 노후복지 업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지적사항]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의 계획액 중 불용액이 73억 3,9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결원이 대거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결원 충원을 위해서는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근속수당 지급함('24.1월~) * (예시) 사회복지시설 근무 3년 + 보훈부 근무 2년 = 5년차 근속수당 지급 ○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노후복지업무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31일
(36) 보훈장학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지적사항] 2022년도에는 보훈장학(대학원) 신청자격 강화로 인해 2,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3년도에는 보훈장학(대학원) 신청자 감소로 4,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신청자격 강화, 신청자 감소를 이유로 연이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보훈장학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장학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장학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추진 -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24년) * '24년 장학생 모집 횟수 확대(2회→3회), 대표 홈페이지, 나라사랑신문 홍보, 리플릿 제작(10,000부) 일선 관서 배포 및 각 대학교 협조공문 발송 등 - '25년 국가유공자 대학원 장학금 단가 인상 *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37) 인건비 등의 상승률을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 [지적사항] 당초 계획액보다 7억 6,200만원이 늘어난 177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등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못하고 계획액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 88골프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38) 보훈성금 납부 축소 가능성을 감안한 사업 축소 대책 마련	○ [지적사항] 재향군인회 수익업체의 보훈성금 납부 규모 축소로 인해 24억 2,60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향후 보훈성금 납부 축소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 축소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재향군인회 보훈성금 납부 규모에 따라 정부예산이 변동되는 예산 불확정성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에 대한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24년 해당 사업 종료, '25년 정부안 미반영 * '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4년말까지 폐지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39) 순국선열· 애국 지사사업 기금 기금존치 평가 결과 이행 필요	○ [지적사항] 2022년 순애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에서 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권고함. - 그러나 현재 국가보훈부는 친일국가귀속재산 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친일 재산 발굴을 위한 후속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국회에 대면보고 할 것	○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 신규 환수와 관련된 절차는 법무부에서 전담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법무부 국가소송을 통해 환수·귀속된 친일재산의 매각 등을 통해 순애기금의 자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임 * 의원실(민병덕, 이정문)에 보고 완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2일
(40) 한국보훈 복지의료 공단 영업구조 개선 방안 수립	○ [지적사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코로나 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에도 재료비·인건비 상승 등 영업비용 증가 요인이 상존하고, 특히 인천보훈병원 등 보훈병원의 영업손실 규모가 상당하여 2023년 기준 509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	○ 보훈병원 특성화 등 경영 개선 - 특성진료 '재활의학' 선정, 집중 육성 ·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개소('24.10월), 전국적 재활인프라 완성 · 로봇재활, 호흡재활 등 타 진료과 협진 강화로 재활 진료영역 확장 및 서비스 고도화 - 고난도 수술기법 습득을 통한 진료역량 강화 - 우수 전문의 충원으로 국가유공자 진료서비스 강화 * 우수전문의 초청진료 및 초청수술 지원 상한액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훈병원 특성화 등에 따라 영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상향(24.7월) - 분기별 보훈병원장 회의 개최('25.2.5, 5.20.), 보훈병원 영업손실 개선방안 논의 및 진료대기 등 환자불편 해소 추진 - 보훈부, 보훈공단(보훈병원) 1분기 경영실적 및 연말전망 점검, 환류 * 전국 5개 보훈병원 운영실태 점검('25.5~7월) ○ 인천보훈병원 운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중간보고회('25.3.19.) 및 최종보고회('25.6.19.) 개최 - 단기 경영개선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구분하여 진료수익 증대 및 운영효율화 자구책 마련 예정 ○ 자산 운용 효율화 등 재무건전성 강화 - 효율적 인력운영 등으로 '25년 비용 25.7억 원 절감 예상,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수입·지출 모니터링 등 자금 관리 강화 - (구)건제사업단 등 유휴자산 매각 추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41) 적정한 공무직 인건비 편성 필요	○ [지적사항] 영천·이천·산청·괴산호국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출 증가로 '공무직 등 인건비'가 당초 예산 대비 초과집행(집행률 100% 초과)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인력상황을 점검하여 공무직 인건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 국립묘지별 공무직 근로자 인력상황을 점검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요구 하였고,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국립묘지에 지시 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42) 국립호국 원 봉안당 확충 공사 사업관리 강화 필요	○ [지적사항] 국립호국원 안장 잔여기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봉안당 확충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과다한 이월액(153억 6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호국원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착공 전 사전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사비를 투입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시키는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괴산(2.3만기) '24년 7월 준공, 산청(1만기) '24년 12월 준공, 이천(5만기) '25년 1월 준공, 임실(2만기) '25년 2월 준공, 영천(2.5만기) '25년 5월 준공 ○ 조치완료일 : 2025년 5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43) 보훈대상 자 위탁대부 사업 미상환 채권의 지급보증 을 위한 지출 방식 개선	○ [지적사항] 국가보훈부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사업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채권 양수 재원을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직접대부 재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지급보증 항목에는 국가보훈부의 위탁대부 잔액이 보증채무로 명시되어 있음 - 국가보훈부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채권 사고 발생 시 해당 채권을 유상으로 양수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가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지 않는 것임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채권양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원을 직접대부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	○ ‘직접대부 융자금’과 ‘위탁은행 채권양수’를 내역 분리하여 예산 편성 - ’25년 확정예산 II-1 사업설명자료, ’25년 보훈기금운용계획 수입·지출 각목명세서, ’25-’29 중기사업계획에 반영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44)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예산 변경 최소화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 2023년도 예산의 산정근거를 보면, 지원인원은 실제 인원보다 과다추계(243,732명) 되었으나, 실적단가는 실제 단가 대비 과소추계(△15,880원)되었음 - 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2019~2021) 추세가액인 93,244원을 반영하였는데 직전연도인 2021년의 실적단가인 98,349원을 반영하였다면, 보다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사업 예산편성 시 직전시점의 실적단가 반영등을 검토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이·전용 등에 의한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것	○ 진료 인원 및 단가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적정 규모의 진료비 예산을 산출하고,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소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25년도 2차 추경시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추가 편성으로 최근 의료비 증가 추세를 ’25년 예산에 반영함 * ’23~’24년 평균 결산액 대비 부족분(844억원) 증액 - ’26년 진료비 예산은 ’24년 결산실적을 바탕으로 편성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45)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문제 개선	○ [지적사항] 국가보훈대상자 병원 진료비 보전금 규모 산정이 부정확하여 매년 과다한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고, 2023년의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모든 세부사업에서 부족한 진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연도말 증액 소요가 발생함 - ‘보훈병원 진료’ 사업은 ‘보상금’ 세부사업과 ‘참전명예수당’ 세부사업으로부터 총 393억 8,500만원을 이용하였고, ‘위탁병원 진료’ 사	○ 진료 인원 및 단가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적정 규모의 진료비 예산을 산출하고,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소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25년도 2차 추경시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추가 편성으로 최근 의료비 증가 추세를 ’25년 예산에 반영함 * ’23~’24년 평균 결산액 대비 부족분(844억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업과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참전명예수당’ 세부사업으로부터 각각 79억 4,600만원, 22억 8,400만원을 이용함 - 특히 ‘제대군인 의료지원’사업의 경우 연례적 과소계상이라는 국회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매년 예산 추계를 형식적으로 하여 최근 6년간(2018~2023년) 예산에 23억 6,500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음 - 이는 국회가 2019~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동 사업 예산 추계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관행적으로 동일한 예산규모와 추계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임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향후 의료지원 단위사업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진료인원과 진료단가에 대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는 향후 의료지원 단위사업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예산의 형식적 추계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여 예산부족에 따른 연례적인 이·전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시정)	원) 증액 - ‘26년 진료비 예산은 ’24년 결산실적을 바탕으로 편성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46) 방문재활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방문재활서비스는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의료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고 있음 - 방문재활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물리치료가 직접 찾아가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맞춤형 서비스로,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의료지원 사업의 연례적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방문재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방문재활서비스 대기 수요가 있는 중앙보훈병원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고, 5개 권역 재활센터 입원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 ○ 방문재활을 포함한 보훈병원 방문진료사업 확대를 국정과제에 반영 ○ 조치완료일 : 2025년 7월 31일
(47) 대구보훈	○ [지적사항] 국가보훈부는 2023년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을 위해 보조금 34억 7,000	○ 지적사업인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은 2024년 완공하였음.(2024년 종료사업)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병원 재활센터 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	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6억 4,800만원을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은 18.7%에 불과함 - 동 사업은 설계용역 지연, 착공 지연 등 사전 절차 지연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됨으로써 과다한 규모의 보조금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공정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보조금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규모의 보조금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향후에 추진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공정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조금을 연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48)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지적사항] 숫자로만 강조되는 보훈·복지 강화 기조가 매년 각종 시설 사업의 공사 지연, 이월 등을 유발하고 있음 - 특히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의 경우 2023년도 예산편성 시 보조금 이월 등으로 추가 예산이 편성될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국가보훈부는 추가 예산 편성을 강행하였고, 2023년도에 30억원의 대규모 보조금이 재차 이월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 국가보훈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이 요구하고 있는 철저한 사업계획 및 조속한 집행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주의할 것	○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증축사업은 2024년 완공하였음. (2024년 종료사업) -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99.7% 완료하였음(1,130백만원 중 1,127백만원 집행 완료 / 3백만원은 교통영향평가용역 낙찰차액으로 불용 처리) ○ 향후에 추진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이월금 교부현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하겠으며, - 공정상황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편성된 교부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49) 보훈요양 원 건립 사업관리 강화 및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지적사항] 2023년말 기준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는 1,480명에 이르고, 특히 수도권 대기자가 1,102명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권의 경우 보훈요양원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조속한 개원이 필요한 상황임 -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공사가 계획대로 착수되지 못해 완공 시점이 지연되고 2023년에 교부된 공사비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였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국가보훈부는 집행 실적과 관계없이 편성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는	○ 향후 보훈복지시설 건립 계획액 편성 시 사업 진척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계획액 편성을 통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25년 계획액에는 사업 진척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원보훈요양원 증축의 경우 잔여사업비의 21% 수준만 반영하였으며,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5년 사업비를 미편성하였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데, 이는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하고,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위배되는 보조금 교부임 ○ [시정요구사항]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의 계획액 편성을 통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내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요양수요 적기 대응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공정 과정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이 요구하고 있는 철저한 사업계획 및 조속한 집행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주의할 것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50) 생계지원 금 지급대상 추계 정확성 향상을 통한집행 실적 개선 필요	○ [지적사항] 생계지원금 2023년 집행률은 예산액 81억 2,400만원 중 14억 3,000만원을 타 사업으로 내역변경(감)하였음에도 예산현액 대비 62.8%수준으로 저조하며, 2022년 집행률 역시 56%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지급대상가능인원 추계 시 자연적인 감소요인을 추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주의가 부족했기 때문임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자연적 감소요인 반영 등 추계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집행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 생계지원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집행을 제고 * ('23년) 중상이자 부양의무자 폐지, ('24년) 65세 이상 부양의무자 폐지 - '24년 예산(9,965백만원) 대비 83% 집행 (8,260백만원) ※ 생계지원금 지원 : ('23년) 3,505명 → ('24년) 8,260명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51) 행정착오 로 인한 보훈급여 과오급 연례적 발생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지적사항] 행정착오로 인한 보훈급여금 과오급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과오급금 환수액 수납부진에 따른 세수결손을 유발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금 과오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범죄경력 조회 빈도 확대 및 행정착오 발생에 대한 책임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유관기관 협력 협력 강화 -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추가 협업('24.3~12월) * 행안부·복지부(사망의심자), 법무부(교정정보), 경찰청(범죄경력), 건강보험공단(진료기록) 과는 기 협의, 시스템 연계 중 - 범죄경력 조회 빈도 확대, 가족관계변동사항 확인 등 유관기관(경찰청, 법원행정처 등)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오급 발생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 행정착오 과오급 발생시 행정책임 부여 방안 소속기관 성과평가 시 행정착오 발생 건 감점 비중 확대 반영 및 직원교육 실시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52) 지급계획 인원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 [지적사항] 보상금 집행잔액에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 이·전용 규모는 642억 4,7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임.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보상금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제 지급인원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임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지급인원 감소 추세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급대상자 현황 파악 등을 바탕으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출사업 전반에 걸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상금 잔액을 활용한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21~'24년 인원 추계 시에는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유족 등 '3개 그룹'으로만 나누어 2~5년 증감율을 일괄 적용하였으나, '26년 보상금 인원 추계 시 보상금 지급 대상을 '81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2~5년 증감율을 선별적용하여 추계정확성 제고 - '26년 보상금 추계인원 187,020명('25년 대비 △2,708명, △1.4%) ○ 조치완료일 : 2025년 4월 30일
(53) 사업대상 선정 시 사업 추진가능 성 점검 및 집행률 제고 필요	○ [지적사항] -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고, 특히 2021년부터는 이월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지자체 사업 포기(부산 서구, 충남 홍성군)로 3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고, 행정절차 이행,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실집행을 부진 및 예산 이월이 발생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의 실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교부 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월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보훈회관 건립 준비정도를 면밀히 살펴 잘 준비된 지자체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공정율을 점검, 지자체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집행을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음 ※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훈회관 건립지원 지침 개정 완료('24년 4월) ① 지방보훈회관 건립 심의위원회 신설 ② 사업 포기시 국비 신청 제한 규정 신설 ○ 조치완료일 : 2024년 4월 30일
(54) 계약 체결 시 관계법령 철저 준수 필요	○ [지적사항] - 보훈문화교육 교재 개발을 위해 체결한 계약 중 2건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 초과됨에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국가보훈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일부(9,200만원 중 5,500만원)를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행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계약 체결시 관계법령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낙찰차액	○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직원교육 및 철저한 사업관리 등 행정적 노력 강화 사업 담당 직원 대상 '예산 집행 철저' 교육 ○ 향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을 활용함으로써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행태를 지양할 것																															
(55) 88골프장 매각을 위한 노력 필요	○ [지적사항] 보훈기금 기금운용계획에 88골프장 매각을 통해 수입을 얻도록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구체적인 매각방향을 확정하고 이에 맞추어 수입계획을 편성할 것	○ '25년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매각방향을 확정하고 보훈기금 수입계획을 편성할 예정 -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비교분석 연구용역 추진('25.7월~11월)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56) 재향군인회 재무정상화 필요	○ [지적사항] 재향군인회는 2023회계연도말 자본총계가 약 △13억원으로 부채 초과 상태에 이르렀음 ※ 재향군인회 자산총계 및 감사의견 (단위: 백만원) <table><tr><th>회계연도</th><th>자산총계</th><th>부채총계</th><th>자본총계</th><th>감사의견</th></tr><tr><td>2019</td><td>691,701</td><td>656,182</td><td>35,519</td><td>의견거절</td></tr><tr><td>2020</td><td>562,747</td><td>532,968</td><td>29,779</td><td>한정의견</td></tr><tr><td>2021</td><td>530,649</td><td>510,274</td><td>20,375</td><td>한정의견</td></tr><tr><td>2022</td><td>528,399</td><td>512,011</td><td>16,389</td><td></td></tr><tr><td>2023</td><td>515,621</td><td>516,911</td><td>(1,290)</td><td></td></tr></table> 자료: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각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재향군인회의 감독관청으로서 재향군인회 재무상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회계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감사의견	2019	691,701	656,182	35,519	의견거절	2020	562,747	532,968	29,779	한정의견	2021	530,649	510,274	20,375	한정의견	2022	528,399	512,011	16,389		2023	515,621	516,911	(1,290)		○ (추진사항) 재무상태 정상화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 수립 - (자산평가 방법 개선) 재향군인회 산하 시도회가 보유중인 토지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원가 → 공정가액 반영)를 통해 자산 가치 현실화 추진('24년 재무제표 반영 예정) - (자체 재정개선방안 지도 점검) '23.4월말 재향군인회는 핵심자산 매각을 포함한 자체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철저한 이행을 위한 반기별 지도·점검 진행 * ('24.12말 기준 개선 실적) 본회 운영비 절감 및 수익사업 수익성 개선 ○ (향후계획) '24년말 결산을 반영한 종합 점검을 통해 재정개선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 마련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감사의견																												
2019	691,701	656,182	35,519	의견거절																												
2020	562,747	532,968	29,779	한정의견																												
2021	530,649	510,274	20,375	한정의견																												
2022	528,399	512,011	16,389																													
2023	515,621	516,911	(1,290)																													